

발 간 등 록 번 호

11-1740000-000242-11

2017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주민과

목 차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사무편람

I.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개요	3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5
2. 도입 배경 및 경위	5
가. 도입 배경	5
나. 도입 경위	6
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운영 개요	7
가. 총 괄	7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8
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9
라. 자료관리, 수수료 및 보험가입	11
4.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및 비교	12
가. 적용 범위	12
나. 인감증명제도와의 관계	12
다. 인감증명제도와의 비교	13
II. 업무처리 요령	15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일반	17
가. 목 적	17
나. 용어의 정의	17



CONTENTS

다. 적용범위	20
라. 사무의 관장	20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1
가. 발급신청	22
나. 발 급	28
1)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 신분 확인	28
2) 발 급	29
다. 기 타	40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유효기간	40
2) 본인서명사실확인용지의 관리	41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42
가. 발급 및 활용	43
1) 정보통신망 이용근거 및 재사용 금지	43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가능대상 공공기관	43
3) 서 식	44
4) 본인확인 절차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법	47
5) 발급증	48
나.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49
1) 신청대상별 승인권자	49
2) 승인신청	50
3) 발급시스템 등록 및 승인정보 이송	59
4)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등록기준지 변경시 승인권자에게 통보	59
5) 이용 승인 신청 제한대상	60
다. 유효기간 및 갱신	60



목 차

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의 철회 및 중지	60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60
2) 직권철회	60
3) 자료 이송	61
4) 이용 승인 중지	61
4. 발급 사실의 확인 및 기록·관리	62
가. 발급 사실 확인 요청 및 확인	62
나. 발급 사실 기록·관리	62
다.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	63
라. 발급 현황 관리	63
5. 열 람	63
가. 열람 금지	63
나. 열람 절차	64
다. 수사, 소송 및 공무집행을 위해 열람할 수 있는 자의 범위	64
6. 수수료	65
가. 수수료 금액	65
나. 수수료 면제	65
7. 권한의 위임·위탁	67
가. 지도·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등 위임	67
나. 대한민국 국적자	67
다.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67
8. 복수국적자에 대한 적용	67



CONTENTS

9. 발급 및 승인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	68
10.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8
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와 처리범위	68
11. 시행시기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특례	68
가. 시행시기	68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순차적 시행	69
1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보완사항	70
가. 용도란 등 작성 요령	70
나. 상속관련 확인서 발급 및 작성 요령	73
Ⅲ. 관계 법령	75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령(2단비교)	77
2. 인감증명관련 법령(2단비교)	96
3. 기타 참고법령(일부 발췌)	123
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123
나. 전자서명법	123
다. 재외공관공증법	124
라. 출입국관리법	124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28
바-1. 전자정부법(발급시스템 관련)	129

목 차

바-2. 전자정부법(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130
사-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재생략 법인관련)	131
사-2. 지방공기업법(기재생략 법인관련)	131
사-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기재생략 법인관련)	132
사-4. 새마을금고법(기재생략 법인관련)	132
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134
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136
차-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관련)	138
차-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관련)	138
카.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관련)	139
IV. 참고자료	14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143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현황	147
3. 인감증명제도 개요	151
4. 인감제도 개편에 따른 국민인식 조사결과	152
5. 외국의 인감제도 운영 사례	153
6. 해외의 서명사용 사례	154
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례	155



CONTENTS

인감증명 사무편람

I. 일반사항	179
1. 인감증명제도	181
2. 주요연혁	182
II. 신고, 변경, 말소, 부활	187
① 신고	189
1. 증명청 방문	189
2. 사무 관장기관(법 제2조, 영 제18조의2)	189
3. 신분확인	190
4. 인장	194
5. 신고의 종류	197
[참고] 행위 무능력자 제도의 변경	206
② 변경	210
1. 개요	210
2. 종류	210
③ 말소	213
1. 개요	213
2. 종류	213



목 차

④ 부 활	215
1. 개 요	215
2. 종 류	215
Ⅲ. 인감의 보호 및 해지신청	217
1. 인감의 보호	219
2. 인감보호의 해지신청	221
Ⅳ. 인감증명서의 발급	223
1. 개 요	225
2. 발급방법에 따른 구분	231
3. 용도에 따른 구분	236
4. 미성년자 및 성년후견대상자의 발급	241
5. 대상에 따른 구분	244
Ⅴ. 열 람	251
1. 개 요	253
2. 열람에 관한 규정	254



CONTENTS

3. 열람방법	256
4. 舊 인감자료에 대한 열람	257
VI. 인감대장의 관리	259
① 인감대장의 작성	261
1. 개 요	261
2. 인감대장의 종류	261
② 인감대장의 이송	270
1. 개 요	270
2. 내국인 인감대장	272
3. 재외국민 인감대장	272
4. 외국인의 인감대장	276
5.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의 인감대장	277
VII. 기 타	279
① 수수료의 면제	281
1. 수수료 종류 및 금액	281
2. 수수료 징수	281
3. 수수료의 면제	281
②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 및 공제 가입	282



목 차

VIII. 전산업무 처리요령	283
IX. 참고자료(현행법령)	359
1. 인감증명법	361
2. 인감증명법 시행령	366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사무편람



I.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개요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2. 도입 배경 및 경위
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운영 개요
4.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및 비교

I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개요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관계법령(조례·규칙 포함)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거래내용 등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을 말함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함

2. 도입 배경 및 경위

가. 도입 배경

- 국민 불편 및 사회적 비용 유발
 - 현 인감제도는 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하고 사전에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행정기관은 인감신고에 따른 관련 공부를 작성·관리하며, 주민들이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공부를 이송함에 따른 비용 발생
-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

-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일부국가에만 있는 인감증명에 비하여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증기추세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국민 편의와 거래의 안전성 도모

나. 도입 경위

- 인감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 지적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다양한 인감증명 대체방안 도입 논의 (2009. 1월 이후)
 - 인감 대체방안으로 「공증제 확대」, 「법무사 등 자격사의 본인확인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도입 등 검토
 - ※ 공증제도는 비용 및 사무소 부족 등으로 국민 불편이 우려되고, 자격사 본인확인제도는 자격사의 공신력 담보 및 보험가입 문제 등으로 검토 제외
- 「읍·면·동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도입 논의 ('09. 6.16, 국정기획수석 주재 관계 부처회의)
 - ※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본인의사 확인'이나 '법률행위 내용' 검토가 아닌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 인감 대체방안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발급 방안 도입 결정 ('09. 7.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명칭의 의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 인)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대면 방문하여 발급
 - (서 명) 도장 대신 자필 서명을 함
 - (사 실) 「서명의 형태」가 아닌, 「용도 등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
 - (확인서) 읍·면·동을 방문하여 서명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전 자)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발급
 - (본 인)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발급
 - (서 명)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공인전자서명 사용
 - (확인서) 용도 등 내용을 작성하고 그것을 전자서명으로 확인

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운영 개요

가. 총괄

1) 용어의 설명

- 서명 : 본인이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
 - ※ 기명 : 이름을 적는 것(전산 입력 등), / 사인 :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
- 공인전자서명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
- 정보통신망 :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정보통신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하고 발급한 종이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본인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

2) 사무의 관장

-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제외)·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과 특별자치시장·도지사가 사무를 관장

3) 발급신청(대상)

-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등록)외국인
 - ※ 대리발급 불가

4) 서명·신청에 사용하는 성명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내국인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가족관계등록부(미 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등록표(외국인), 국내거소신고표(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1) 확인서 발급신청 및 신분확인

○ 신청방법

-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하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 제출

○ 신분확인

- 신분확인에 사용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국적동포)
-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무인(拇印) 등*을 이용한 신분확인(주민등록전산자료 등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엄지손가락 외에 다른 손가락의 지문(十指紋)으로도 확인 가능('17.1.27 시행)

2) 확인서의 발급 및 교부절차

- ① 신청인이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에 서명 → ② 신청인으로부터 용도, 위임 받은 사람 등의 정보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공받아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 → ③ 신청인은 전산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 → ④ 발급대장에 발급내역 기재 및 신청인(법정대리인 등 포함) 확인(전산관리시 서명 불필요) → ⑤ 확인서 교부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식 작성

- 부동산 관련용도의 경우 “① 소유권이전, ② 제한물권 설정, ③ 그 밖의 용도” 중 선택하고, 자동차 매도용과 함께 거래상대방(매수자 등)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기재

-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매도용도 외의 용도는 해당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 위임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 기재
 - ※ 용도(거래상대방), 위임받은 사람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전산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입력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함(위임받은 사람의 주소는 자격증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만 기재)

4)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 주소 기재 방법

- 성명 이외 글자·문양이 포함되거나 성명의 일부만 기재, 본인의 성명과 다르게 기재, 지나치게 흘려 쓴 경우 등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하기 어려우면 서명으로 불인정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서명대신 공인전자서명으로 함
- 주민등록표에 있는 주소(내국인,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미 주민등록 재외국민), 국내거소지(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국내체류지(외국인) 기재

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1)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활용

- ① 발급시스템 사전 이용신청 및 승인(읍·면·동 등 방문) → ② 발급시스템 접속 → ③ 본인 확인(공인인증서, 복합인증 등) → ④ 확인서 작성 → ⑤ 공인전자서명 → ⑥ 확인서 발급(시스템내 저장) → ⑦ 발급증 출력·제출 → ⑧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 확인·민원처리(수요기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증 서식 (영 별지 제4호, 제5호서식)
 -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작성하므로 관인 미 날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유사하나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서명 이미지가 없음

○ 온라인상 신분확인

- 발급자는 공인인증서 암호, 사전 이용승인 신청 시 전화인증 등 추가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온라인상 신분확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활용 및 제출할 수 있는 공공기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전자문서로 발급, 발급시스템내 저장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출력할 경우 효력이 없음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제출로 인감증명서 제출에 같음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기관 단계적으로 확대운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013. 8. 2.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 2015. 1. 1.
 -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2016. 1. 1.
 - 국회, 법원(등기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 2017. 1. 1.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기관(323개, '16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410개, '16년) 등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 및 중지

- 신청 : 읍·면·동 방문,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
 -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와 신분증 함께 제출
- 신분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음
- 승인: 발급시스템 유효기간 부여(2년), 승인대장에 관련 내용 기록 및 발급시스템에 등록하고, 업무처리확인서에 전화인증 등 복합인증 수단 등을 표기하여 교부
 - ※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는 승인권자가 승인한 경우에 주소지 관할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승인관련 자료 이송
- 철회 : 본인이 신청한 경우, 직권 철회사유(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 말소 등) 발생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철회
- 중지 : 승인 유효기간(갱신가능) 만료 시 이용 중지

라. 자료 관리, 수수료 및 보험가입

1) 발급사실 기록·관리·확인 및 관련 자료 열람

- 전자민원창구(민원24)에서 문서확인번호 등을 통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 확인 가능(인감증명서와 동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관련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기록·관리하고 멸실·손상 등에 대비하여 다른 매체에 보관
- 발급관련 서류의 보존기간
 -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10년
 - ※ 수요처에서 확인하지 않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3개월간 저장
 - 그 외 발급관련 문서* : 10년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발급대장, 승인신청서, 철회신청서 등
- 발급사실 열람절차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관계법령·법원의 판결·법관이 발부한 영장, 수사·소송 및 공무집행 등에 필요하여 해당기관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건물 내에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2) 수수료 금액 및 면제사유

- 수수료 금액 및 면제사유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600원(인감증명서와 동일)
 - ※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한통에 300원으로 인하 함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무료
 - 공익사업에 제출하는 경우, 기초 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
- 보험·공제 등 가입
 - 발급관련 사고로 인한 담당직원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공제 등에 가입

4.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및 비교

가. 적용 범위 (법 제3조) ※ 인감증명서에만 적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에만 적용함
※ 상업등기법상의 법인 인감, 공증인법상의 인감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나.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법 제13조) ※ 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봄

다. 인감증명서와의 비교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 사전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등록 사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신고 절차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2) 신청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또는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3)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명청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급기관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사이트 접속
4) 본인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분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으로 확인관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분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으로 확인관란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상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인증서 등
5) 확인 방법 (날인 및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 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자필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인전자서명
6) 서 식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 : 부동산 및 자동차·매도 용도 / 기타 위임받은 사람 : 미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 : 부동산 관련용도 (소유권이전 제한물권 설정, 그 밖의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 그 외의 용도 위임받은 사람 : 성명, 주소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 : 부동산 관련용도 (소유권이전, 제한물권 설정, 그 밖의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 그 외의 용도 위임받은 사람 : 성명, 주소 기재
7) 관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명청(시·군·구청장, 읍·면·동장) 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급기관(시·군·구청장, 읍·면·동장) 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날인
8) 발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명청이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급기관이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이 직접 발급
9) 발급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형태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형태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문서로 발급 (시스템내 저장)
10) 제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증명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급증 제출
11)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영비교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상 확인
12)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14. 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 8. 2.

Ⅱ. 업무처리 요령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일반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4. 발급 사실의 확인 및 기록·관리
5. 열 람
6. 수수료
7. 권한의 위임·위탁
8. 복수국적자에 대한 적용
9. 발급 및 승인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
10.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시행시기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특례
1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보완사항

II

업무처리 요령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일반

가. 목 적 (법 제1조)

-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편의 증진 및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Q&A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면 인감제도는 폐지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서명사실확인제와 현행 인감제도를 병행·운영해 본 후, □ 향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률이 높아지면 서명을 못하거나 위임발급을 원하는 사람에게 한정하여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통·폐합하는 방안을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 	

나.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 서명 :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는 것
- 공인전자서명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참고 용어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외국국적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국내거소신고자 :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를 정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를 한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
- 외국인등록 :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Q&A	공인전자서명이란? 사전에 등록하는 이미지 서명인지?
-----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공인전자서명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의사 확인을 위해 자필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충족하는 「전자서명법」의 공인전자서명 사용
 - 전자서명은 서명 이미지가 문서에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암호화된 형태로 전자 문서와 결합되어 시스템 상에만 존재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전자이미지 서명」과의 차이점

< 전자서명 >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명시적으로 서명이미지가 드러나지 않음
 - *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등

< 전자이미지 서명 >

- 사전에 서명이미지를 등록해놓고 사용, 서명이미지가 명시적으로 전자문서에 나타남
 - * 공문서 결재 등
-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 “전자이미지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적용범위 (법 제3조)

-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에만 적용하며 법인 인감 등은 제외

	Q&A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법인인감」에도 적용되는지?
---	----------------	-----------------------------------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시·군·구 및 읍·면·동 등에서 발급하는 개인의 인감증명만을 대신함
 - 상업등기규칙에 의해 법원에서 사무를 관장하는 「법인 인감」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인감」이라는 용어가 「인감증명법」의 인감 외에도 다양하게 통용되므로 법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
 - ※ 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 「인감」 용어의 통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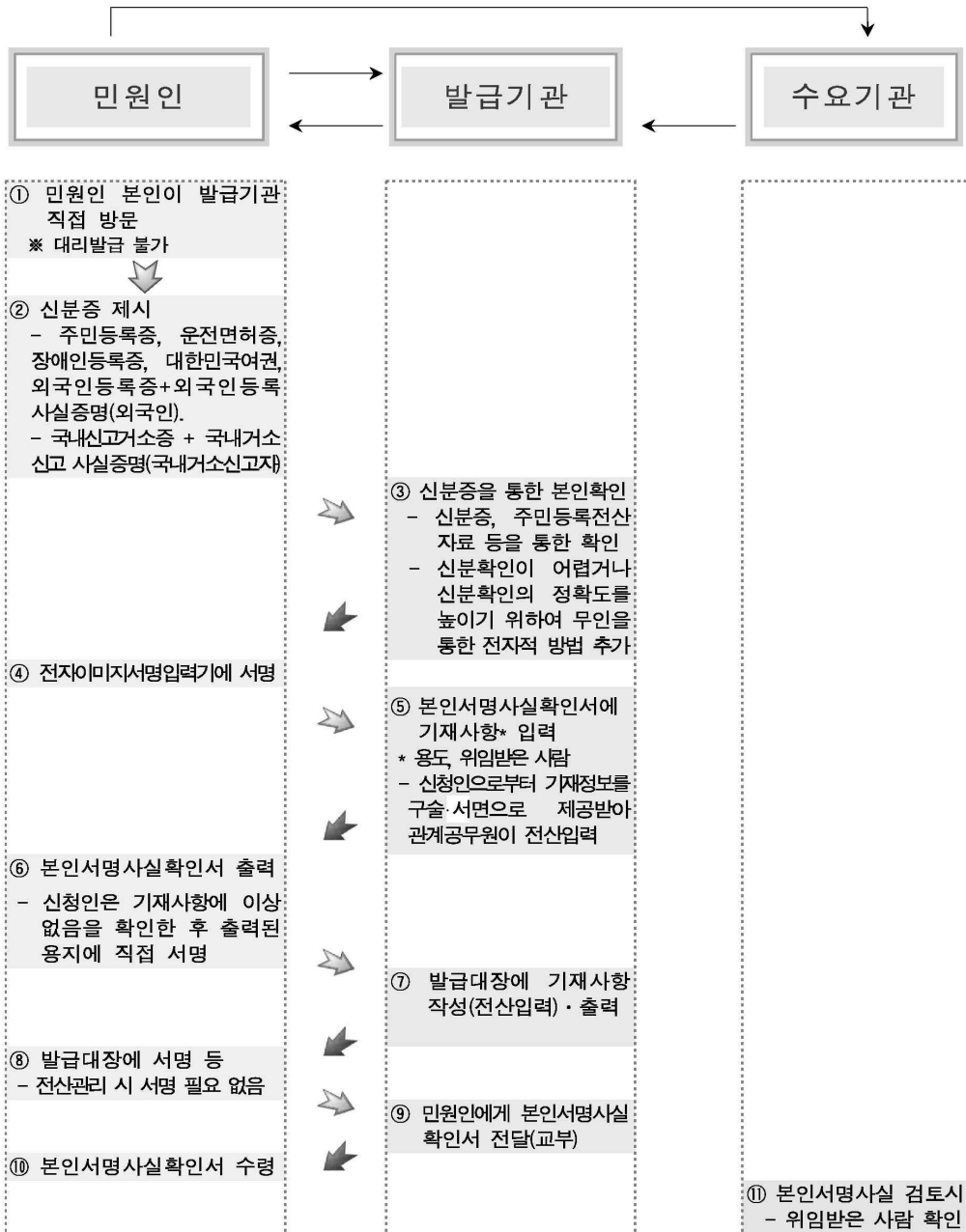
- (인감의 개념) 대조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부(眞否)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영(印影)
-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 외에도 「공증인이 검찰청에 신고하여 두는 인감(공증인법 제20조)」, 「영사관이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인감(재외공관공증법 제7조)」, 「예금통장에 찍는 인감」 등도 「인감」이라는 용어로 통용

라. 사무의 관장 (법 제4조)

-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외)·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사무를 관장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발급절차



가. 발급신청 (법 제5조, 영 제3조)

- 발급방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을 함

※ 대리발급 불가

- 신청대상별 발급기관

신 청 대 상	발 급 기 관
내국인, 재외국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포함)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외국인등록자,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 확대*(17. 6. 3. 시행)

* (기존) 시·구·읍·면 ⇨ (확대)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거래상대방 보호) 등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불가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과 함께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이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 동의서 제출(영 별지 제1호서식) 및 대리인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법원의 통보 확인으로 대체 가능

Q&A 서명이 불가능한 사람이나 대리인을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등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이 자필로 서명을 해야 하므로 대리발급을 할 수 없음
- 유학·해외거주, 교도소 수감, 군복무, 거동불능 등으로 본인이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 현 인감제도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음
- 노인, 장애인 등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현 인감제도를 그대로 활용함

참고1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서명확인법 개정 사항 ('16.7.28.시행)**

- ▲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 ▲ 피한정후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행위능력 인정)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발급대장에 한정후견인의 서명을 받아야 함
 - ※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는 피한정후견인을 지정하는 가정법원이 결정
- ▲ 피한정후견인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분증 및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1. 개요

- 민법상 성년후견제 도입(개인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2016.1.27. 개정, 7.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고·발급 등 절차 정비
 - ※ 민법 개정에 따라 '18. 7. 1. 이후에는 기존 한정치산자 신고 효력 말소

2. 주요 내용

-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 外에는 스스로 관련 업무를 처리
-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 기존 한정치산 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새로이 한정후견 판결을 받을 때까지 또는 '18.6.30까지는 종전 서식 사용(부칙제2조)

3. 업무처리 방법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제3조, 제5조)

- 피한정후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등기사항증명서 : 가정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된 후견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예시 참조) 등 기재

- 발급용도가 한정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 등기사항증명서(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피한정후견인 단독으로 발급
 - 등기사항증명서(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발급

..... < 동의 필요 판단 방법(예시) >

▶ 등기사항증명서에 ‘부동산 관리·처분’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재된 경우

발급용도	조치 방법
부동산 관리·처분	발급신청시 한정후견인의 동의 필요
상속의 승인·포기	한정후견인 동의 불필요 사항으로, 피한정후견인 단독으로 발급 가능

- 한정후견인 동의가 불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발급 (피한정후견인 신분증만 필요)
 - 한정후견인 동의 필요한 사항인 경우 다음의 서류 제출 필요

구분	현 행	개 정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법정대리인 신분증 ▷ 발급신청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한정후견인 신분증 ▷ 발급신청 동의서 ▷ 등기사항증명서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제7조)

-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기재된 승인신청서, 한정후견인의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

참고2 성년후견제도 개요

1.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라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됨
 - 개정 민법은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여 후견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도 자기 의사와 의지에 따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2. 경과조치

- 민법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제2조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기존 선고자에 대하여 그대로 인정됨
- 기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선고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여 확인

3. 법원의 직권 등기 촉탁주의 적용

-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을 선임받을 수 있으며, 이때 후견인을 둔 사람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 함
- 피성년후견인은 금치산자와 동일하게, 피한정후견인은 한정치산자와 동일하게 봄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의 등기촉탁에 따라 등기 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며, 판결 후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통보하는 제도는 폐지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시스템과 성년후견정보시스템이 연계되어 민원인이 담당자에게 후견등기사항을 말하지 않아도 성년후견제도 대상자임을 알 수 있게 됨. 단, 자세한 선고내용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참고3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예시)**

1. 재산관리

가.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 매각
- 구입
-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 전세권,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변경
- 부동산의 신축·증축·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해제

나. 예금 등의 관리

-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 증권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다. 보험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의 체결·변경·해제
- 보험금의 수령

라.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정기적 지출(임료, 요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마.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상속의 승인·포기

바. 증서 및 유체동산의 보관 및 관리

사.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 근로계약의 체결·변경·해제
- 임금의 수령

2. 신상보호

가.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비용의 지급
- 복지시설 입소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비용의 지급

나. 의료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비용의 지급

3. 기타

가. 소송행위 등

-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나.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

다. 기타 사항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발급 통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성명:)에 대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작성 방법

1. 발급 신청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습니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두 통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발급통수란에 필요 수량을 적어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통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 통을 발급합니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신청인(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나. 발급 (법 제6조, 영 제4조, 제5조 및 제14조)

1)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 신분 확인

- 확인방법 : 발급기관은 신분증을 이용하여 신청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신분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무인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법정대리인 포함)
 - 신분증의 종류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 국내거소신고증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
 -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신고 사실증명서로 신분 확인을 할 때에는 여권도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 신분증 제출시 본인확인 활용 전산자료 : 주민등록증 발급정보(행정자치부), 운전면허증 발급정보(경찰청), 여권 발급정보(외교부), 등록외국인정보(법무부)
 - 무인을 이용한 신분확인 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전산정보자료*) 등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
 - * 2015년 법무부와 지문확인 연계시스템 구축
 - ※ 신청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엄지손가락 외에 다른 손가락의 지문(十指紋)으로도 확인 가능('17.1.27 시행)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 display: inline-block; margin-right: 5px;"></div> Q&A	<p>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사진이 첨부되지 않아 신분확인이 어려워 발급공무원의 입장에서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발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 이에 근거하여 법무부의 외국인등록정보이용시스템(FINE)을 이용하여 사진자료 및 지문정보 등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 	

2) 발 급

○ 특수용지, 서식,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 특수용지의 사용 목적 : 위조·변조 및 복사 방지
- 서식 내용 : 신청인 인적사항과 서명, 용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영 별지 제2호 서식)
- 서명입력 방법 : 신청인이 직접 서명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기재 하고, 발급기관은 신청인이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통해 기재한 서명을 본인 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란에 인쇄
 - ※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특성을 고려해 발급 할 때 마다 매번 서명 하고, 기재한 서명의 재사용 금지

○ 문서확인번호

- 본인서명 및 인감증명 관련사고 예방을 위하여 검증된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확인번호와 동일한 16자리 번호 부여(자동부여)

○ 재외국민 등의 “주민등록번호”란 표기 * 인감증명서와 동일

- 미 주민등록 재외국민 : 여권번호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 : 외국인등록번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대출보증용, 선박 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6.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210mm×297mm[특수용지(80g/㎡)]

○ 서명

- 서명 및 신청시의 성명 : 재산권 행사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문서임을 고려하여 공적장부에 등재된 성명을 사용

구 분	공 적 장 부	서 명 방 법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주민등록 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의 성명	한글 또는 한자
미 주민등록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	”
외국인등록자	외국인 등록표의 성명	영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국내거소신고표의 성명	영문 또는 한글

-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성명만 기재)
 - 기재된 성명 이외의 글자 또는 문양을 포함한 경우
 -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서명이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
 - 기재된 서명이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쓴 경우 또는 겹쳐 쓴 경우
 - 공적장부(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의 기호와 다른 기호로 기재
 - 기타 제3자가 알아 볼 수 없도록 기재한 경우

참고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 성명 표기 예시

구분	앞면	뒷면
외국인등록증 (일반)		
외국인등록증 (영주권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Q&A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사전에 서명을 등록하는지? 사전에 서명을 등록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서명이 맞는지 여부를 어떻게 대조하는지?
-----	--

▣ 전 서명등록 여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달리 사전신고, 서명대장이 없으며 사전에 서명도 등록하지 않음
- 민원인이 필요할 때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음

▣ 본인의 서명이 맞는지 여부 확인 방법

- 서명의 필체는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기관이 「본인의 서명」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임
- 따라서 인감처럼 「서명의 동일성」만으로 의사 진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서명뿐만 아니라 발급자 및 부동산 매수자 인적 사항 등 종합적인 내용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며**
 - 서식에 「용도지정 세분화」 및 「위임받은 사람」을 표시하여 의사 진정성 확인을 강화하였음
- 따라서 서명을 비슷하게 위조하더라도 **확인서 상의 용도, 거래상대방(매수자) 인적 사항, 위임받은 사람과 불일치하면 위조여부 확인 가능함**

Q&A	서명은 할 때마다 다른데 그렇다면 이름만 동일하다면 글씨체가 전혀 달라도 동일한 서명으로 인정되는지?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기관이 「본인의 서명」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므로,
- 절차에 따라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였다면, 다른 서면 또는 그 이전에 발급 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과 글씨체가 전혀 다르더라도 본인이 서명한 것으로 인정됨

○ 주소 기재 방법

구 분	주 소 기 재 방 법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주민등록 한 재외국민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주소
미 주민등록 재외국민	•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경우 등록기준지)
외국인등록자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체류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지

* 미 주민등록 재외국민이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되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 부동산 관련 용도

-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하여 용도 및 위임받은 사람을 기재
- 기재사항을 신청인 본인이 직접 손으로 작성(手記) 함에 따라 오기(誤記)·발급 지연 등이 발생
⇒ 2016년부터는 신청인으로부터 용도 등 기재사항 정보를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받아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하고, 신청인은 그 입력사항이 맞는지 확인한 후 서명 하도록 함
* 기재사항의 사실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음
-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 관련용도중 소유권 이전, 제한물권 설정, 그 밖의 용도 등을 선택하고 거래상대방(매수자 등)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용도를 기재하였음을 확인할 뿐, 공증이 아니므로 계약서 등의 확인을 통하여 용도의 실제적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않음
- 부동산 거래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외국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은행(새마을금고 포함)·보험회사 등인 경우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됨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 (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 (가등기설정, 가등기말소 등)		
거래 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주소			
	농협은행	110111-1234567	농협은행	(미기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0		(미기재)			

※ 거래상대방 기재 생략 적용대상 법인(예시)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국제기구, 외국정부
3.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2016년 총 323개(매년 상반기 기재부 발표)
4. 지방공사·공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016년 총 410개(매년 상반기 행자부 발표)
5.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 내지 제8호*
 - * 1. 은행, 2.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3.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회사, 겸영여신업자, 7.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 거래상대방 등이 2인 이상일 경우 인적사항을 추가하여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거래상대방 등 추가사항 >

1	성명(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번호	
	주소			
2	성명(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번호	
	주소			
3	성명(법인명)		주민 (법인) 등록번호	
	주소			

○ 위임받은 사람

-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등기소) 및 행정기관 등 수요처에 제출하는 경우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
- “성명”란은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사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자격사 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을 함께 기재 (예시: 홍길동법무사)
- “주소”란은 자격사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할 경우만 작성

Q&A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기재사항(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을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 시 오류로 인한 책임소재는 누구에 있는 것인지?
-----	--

- 용도란(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하고, 그 신청인으로부터 그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 절차에 따라 신청인이 전산입력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였다면 오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없음*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하여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미 주민등록 재외국민 등록기준지 변경시 처리방법 :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기
관의 장은 그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및 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
게 통보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4조제2항과 동일하므로 인감증명법 시행령(별지 제1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사항 통보’ 서식)에 의한 통보시 처리
 - * 재외국민 : 최종주소지 (최종주소지 불분명시 : 등록기준지)
 - 이 경우 발급기관과 승인권자는 통보받은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등록

- 발급내역 기재 및 교부
 - 발급대장에 발급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을 받은 후 본인서명사실확인
서 교부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됨
 -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 성명”,
“용도(구분, 내용)”, “거래상대방”, “위임받은 사람”란을 기재하고, “신청인
(법정대리인) 확인”란에 서명을 받음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

결 제		발급번호	발 급 연월일	신청인 성 명	용도		거 래 상대방	위 임 받은 사람	신청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확인	비 고 (수수료 면제등)
답 당	담당자				구분	내용				
					부동산 관련	소유권 이전 [] 재한물권 설정 [] 그 밖의 용도 []				
						자동차 매도용				
						그 외의 용도				

Q&A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전산관리 하는 경우 멸실, 손상의 우려가 높아 소송 등 분쟁발생시 효율적 대응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발급사실의 기록·관리 및 안전 보관 등을 하도록 하고 있고
-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라 발급대장에 발급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전산으로 관리 시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신청인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급대장을 현행과 같이 수기 관리 하고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확인을 받지 않도록 운용의 폭을 넓힌 것임.

○ 발급 제한대상

-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단, 한정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방문, 발급신청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 직접 제출시 발급 가능)
-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본인 또는 한정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보기 어려울 경우(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참조), 또는 발급기관 공무원의 재 서명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자신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식 및 활용 비교 >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전신고 여부	• 인영은 사전에 신고함	• 서명은 사전에 등록하지 않음
• 증명·확인 내용	• 신고되어 있는 인영을 증명	• 서명 한 사실을 확인
• 의사확인 방법	• 관련서류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의 일치여부 비교	• 확인서에 기재된 “용도, 위임받은 사람”과 관련서류의 내용 비교 • 확인서와 관련서류에 기재된 서명의 형태 일치여부와 무관
• 용도 기재	•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의 경우에 거래상대방(매수자) 기재	• 모든 경우에 기재 •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도 기재
• 위임받은 사람 기재	• 위임받은 사람 미기재	• 위임받은 사람을 기재

다. 기 타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유효기간

- 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유효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부동산등기규칙 등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개별 법령에서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있음

부동산등기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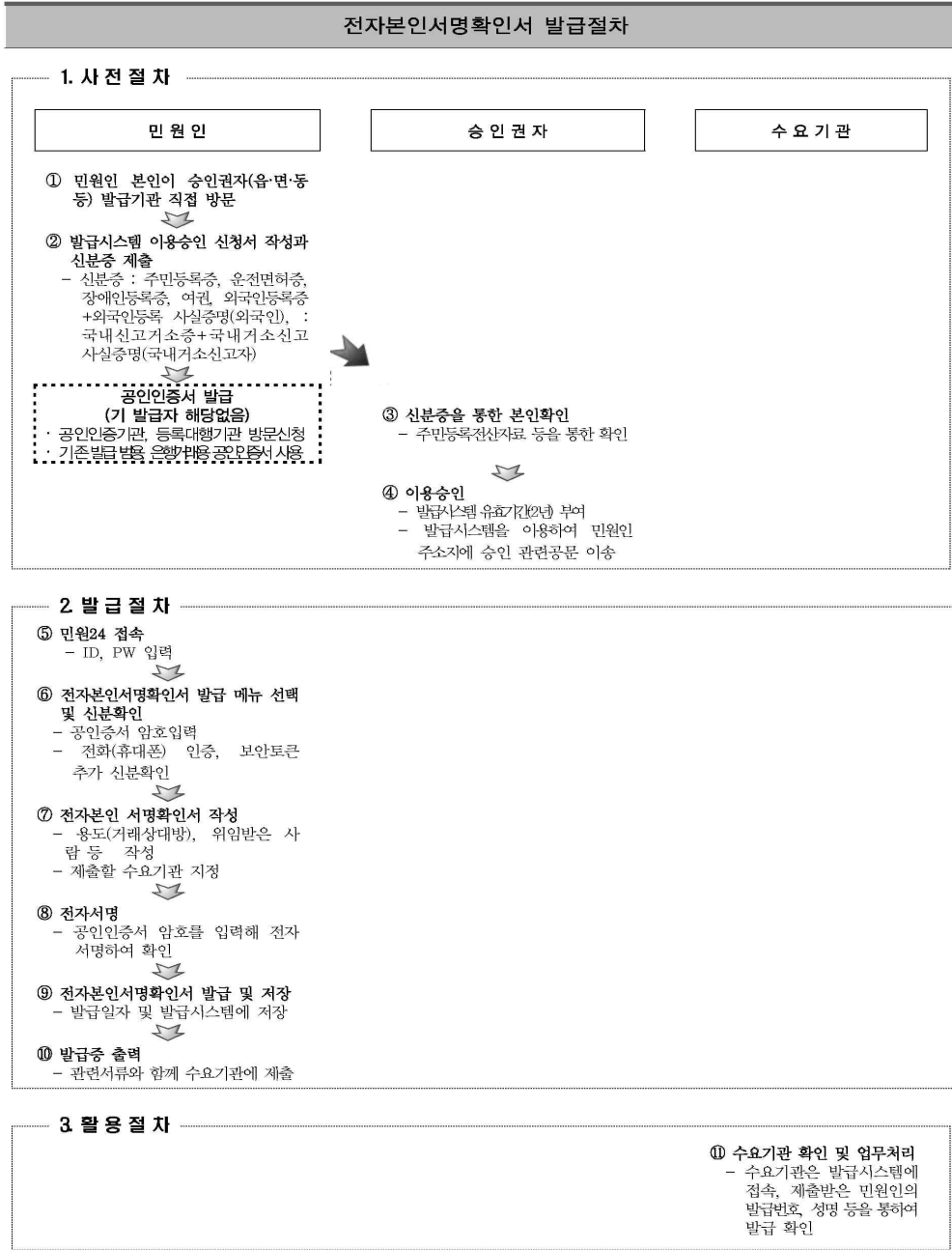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 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지의 관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지는 위조·변조 및 복사방지를 위해 인감증명용지와 같은 특수용지를 사용하며 위조·변조 및 복사방지를 위해 매년 구성도가 변하므로 용지를 조달 구입하는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지는 인감증명서 용지와 동일하게 관리책임자(시·군·구청 담당과장,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의 책임 하에 명확하게 관리하고
 - 이중캐비넷 등 시건 장치를 철저히 하여 분실 등을 예방하여 보관해야 하며 책임자 이외에는 접근을 차단하는 등 안전대책 강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지는 매일 일일결산 관리하여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으므로 발급기관별 현황에 맞게 운영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발급절차



가. 발급 및 활용 (법 제7조, 영 제6조)

1) 정보통신망 이용근거 및 재사용 금지 (영 제6조제1항 및 제8항)

- 민원인은 민원24를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기재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Q&A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출력물에 법적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직접 방문하여 대면확인 후 위조·변조 방지 기능이 구현된 특수용지에 발급되나,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대면확인 없이 온라인 상에서 발급되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위조·변조 방지 기능이 없는 일반용지에 출력되어
 - 위조·변조에 취약하고 육안으로는 진본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해 출력을 허용하지 않고, 출력물에는 법적효력을 부여하지 않으며
 -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 다만, 수요기관에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출력은 가능하지만 법적효력은 부여하지 않음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가능대상 공공기관 (영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 제출대상 행정기관 등을 지정하여 발급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2016년 323개 기관,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2016년 410개 기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발표)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016년 학교수 : 초·중·고·전문대학·4년제대학 총 12,232개교)

Q&A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공공기관 등에만 제출 가능하도록 하는 이유는?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어 안전성이 중요
- 해킹, 정보유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외부망과 단절된 내부 행정망에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 서류를 저장하고 확인
 -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달리 수요기관을 지정 사용
- 따라서 현재 정부통신망 운용체계에서는 개인 등 민간부문까지 수요기관으로 지정·활용하는 것은 보안기술 발전 수준 및 부동산 등기(법원, 등기소)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점차 사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 검토 가능

3) 서 식 (영 제6조제4항)

- 본인의 의사확인을 위하여 민원인 인적사항과 용도 및 위임받은 사람 기재 (별지 제4호서식)
- 용도 등을 기재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행정기관에서 확인하는 행위가 없으므로 관인을 날인하지 않음
 - * 민원인이 직접 발급하는 일종의 "전자위임장" 또는 "확인서"로서,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확인서를 발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발급 시스템)만 제공

<인감증명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서식 및 활용 비교>

구 분	인감증명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사전신고 여부	• 인영을 사전에 신고함	• 사전 이용승인(읍·면·동 방문)
• 증명·확인 내용	• 신고되어 있는 인영을 증명	• 전자서명을 통해 작성내용 확인
• 의사확인 방법	• 관련서류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증명서의 인영의 일치여부 비교	• 확인서에 기재된 “용도, 위임받은 사람”과 관련서류의 내용 비교
• 용도 등 기재	•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의 경우 부동산·자동차 매수자 인적사항만 기재	• 모든 경우에 사용용도 기재 •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매도용도는 거래상대방 인적사항도 기재
• 위임받은 사람 기재	• 위임받은 사람 기재 없음	• 위임받은 사람 기재
• 발급 주체	• 발급기관(시·군·구청장, 읍·면·동장)	• 본인이 직접 발급
• 관인 날인	• 발급기관 날인	• 미 날인

Q&A 전자서명 제도가 있는데 별도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를 마련한 이유와 두 제도의 차이점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라고 한다면, 「전자서명」은 서명이나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함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가시성이 있는 전자문서로서 주로 오프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거래 등)의 진정성 담보 수단으로 활용됨
- 반면, 「전자서명」은 가시성이 없는 전자적 정보로서 주로 온라인상의 법률행위 등에서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함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전자서명 비교>

구 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전자서명
• 존재형식	• 전자문서(가시성 有)	• 전자적 정보(가시성 無)
• 효 력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전자서명법에 의해 서명과 동일한 효력
• 상호관계	• 전자서명을 확인서 발급 절차의 일부로 활용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수단(인감도장과 같은 기능)
• 활 용	• 주로 오프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거래 등)의 진정성 담보 수단으로 활용 예) 본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기신청 서류 제출시 인감증명서 대용으로 활용	• 온라인상의 법률행위 등에서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 예)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표 작성·제출없이 인터넷뱅킹으로 출금행위 등에 대한 확인수단으로 활용
• 활용분야	• 부동산 등기신청 등 인감증명서가 요구되는 분야에 활용 가능	• 분야별 업무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화 선행 및 활용 근거 마련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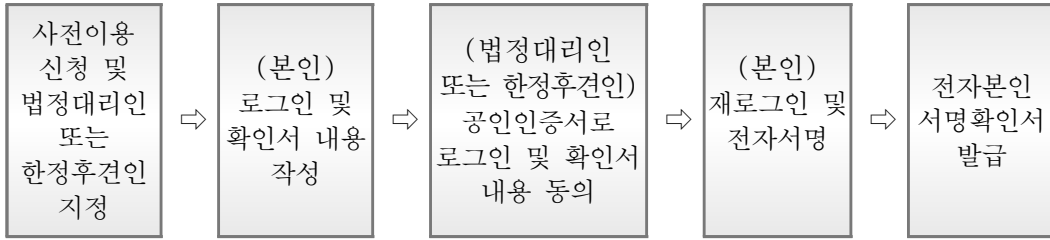
4) 본인확인 절차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법 (영 제6조제6항)

- 공인인증서 암호입력, 민원인이 추가로 신청한 본인 확인 절차(전화인증, 보안토큰, PC 등록 등)를 모두 거쳐야 함
 - ※ 승인권자로부터 부여받은 비밀번호 입력은 폐지됨(2015. 8. 3.)
- 발급시스템에 등록된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동의

Q&A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때 온라인상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	---

-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 대면접촉 없이 온라인상에서 발급됨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동의 절차보다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인 행위능력자로서 단독으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유보를 결정한 법률행위만 한정후견인의 동행·동의 필요
- 발급시스템 사전이용 신청 시에는 온라인상에서 동의를 할 법정대리인이나 한정후견인이 함께 읍·면·동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지정하도록 하며,
 -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다수인 경우 (예컨대 미성년자의 부와 모) 함께 방문해 사전 신청하고 지정한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만 동의할 수 있음
- 온라인상에서 발급 시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확인서 내용 작성을 완료한 뒤,
 -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통해 동의하면,
 -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다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최종적으로 전자서명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함
- 현재 「민원24」에는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와 유사하게 온라인 동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음

<온라인상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5) 발급증 (영 제6조제7항, 별지 제5호서식)

- 발급증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의미로서 법적 효력은 없음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사실을 수요기관에 통보하는 역할
- 수요기관이 발급사실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발급번호, 발급일시, 성명, 용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기관 및 위임받은 사람* 포함)
 - *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출기관과 용도 등을 제대로 기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2015. 8. 3.)
- 발급번호의 부여, 원본 이미지 정보 관리 및 저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발급번호	
발급일시	
성 명	
용 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기관	
위임받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작성)	
20 년 월 일	
유의사항	
1. 이 발급증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사실 확인용으로 발급증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2. 이 발급증을 접수한 기관에서는 전자본인서명확인시스템[e-하나로 민원(www.share.go.kr)]에 접속한 후 이 발급증을 이용하여 반드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원본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10mm×150mm[백상지 80g/m²]

Q&A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외에 「발급증」을 도입한 이유 및 발급증에 법적효력을 부여하지 않은 이유는?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달리 대면확인 없이 온라인상에서 발급되고, 일반용지에 출력되어 위조·변조에 취약하므로,
 - 오프라인 상에서 대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급증」을 도입함
- 민원인은 수요기관에 발급증을 제출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사실을 통보할 수 있고, 수요기관은 발급증을 통해 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 민원인이 대리인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더라도 수요기관은 발급증을 통해 발급여부를 인지하여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확인서 작성 시 수요기관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관만 열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수요기관도 민원인이 발급번호 등을 발급증을 통하여 통보한 경우에만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발급증은 수요기관이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 발급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포함하여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 개인이 출력한 발급증은 위조·변조에 취약하므로,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법적 효력은 부여하지 않으며,
 -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만 법적 효력을 부여함

나.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1) 신청대상별 승인권자 (법 제8조제1항, 영 제15조제2항·제3항)

신청 대상	승인 권 자
주민등록된 내국인 및 재외국민, 미 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불가

2) 승인신청 (영 제7조제1항 내지 제5항)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을 승인 받으려는 민원인은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와 신분증을 함께 승인권자에게 제출
 - 미 주민등록 재외국민은 별지 제7호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은 제9호서식 제출
- 보안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신원확인 절차(보안토큰 방식,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인증방식 중 1개를 선택) 추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는 추가 신청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 본인확인 인증절차 축소

-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 공인인증서, 전화인증, 비밀번호의 3단계 인증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2015년 8월 3일 부터는 공인인증서와 전화인증만 거치면 됨
 - 읍·면·동에서 부여하던 임시비밀번호 폐지(영 제8조 삭제)
-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의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 신청서의 동의란을 작성하고 날인하여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증명서류(등기사항증명서 등)를 함께 승인권자에게 제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내국인 및 재외국민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 이용 승인 신청서
[] 이용 철회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신청인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추가 보안수단	[] 보안토큰 방식 [] 전화 인증 방식		
	그 밖의 서비스 신청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	(성명:)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사유	[]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함),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함)]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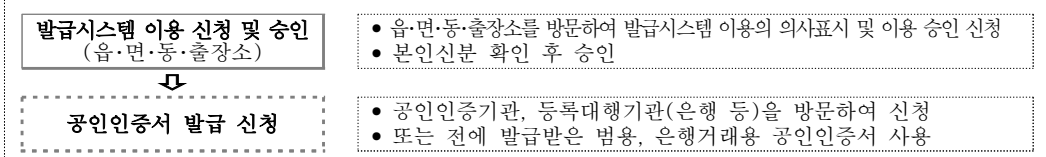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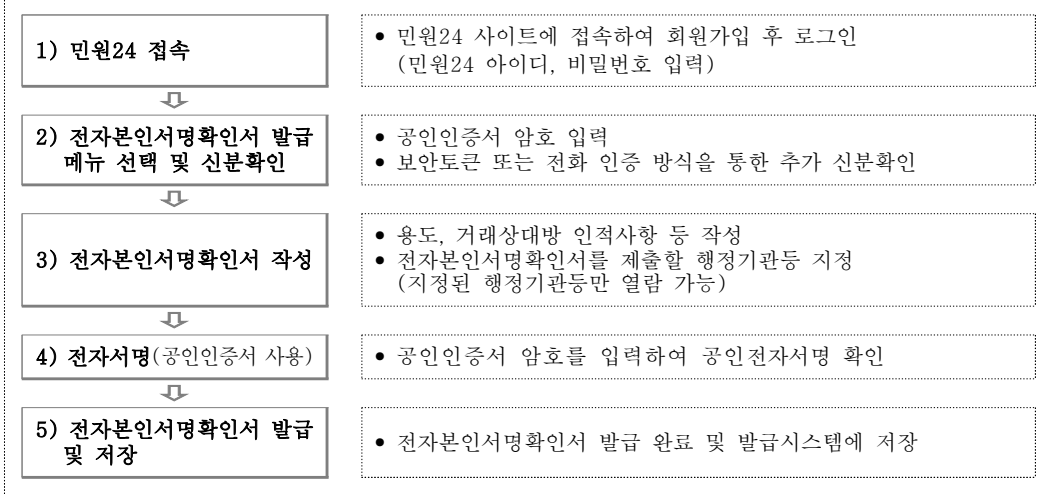
1. 추가 보안수단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 표를 하며,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안토큰 방식"이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보안토큰에 의한 인증방식을 말합니다.
 - 2) "전화 인증 방식"이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3)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 표를 합니다.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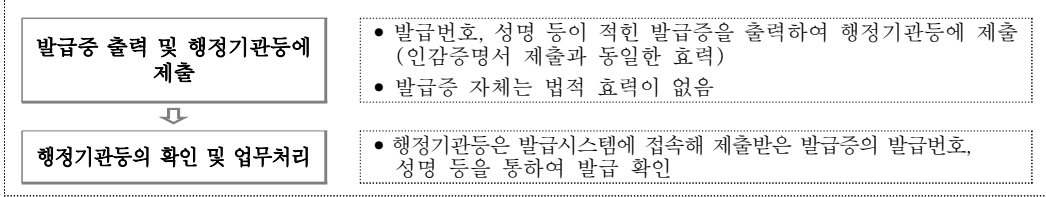
1. 이용승인



2. 발급절차



3. 활용절차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 이용 승인 신청서
[] 이용 철회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여권번호	성별 [] 남 [] 여
	국내 최종주소지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추가 보안수단	[] 보안토큰 방식 [] 전화 인증 방식	
	그 밖의 서비스신청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	(성명:)에 대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사유 []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함),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적용포만 해당함)]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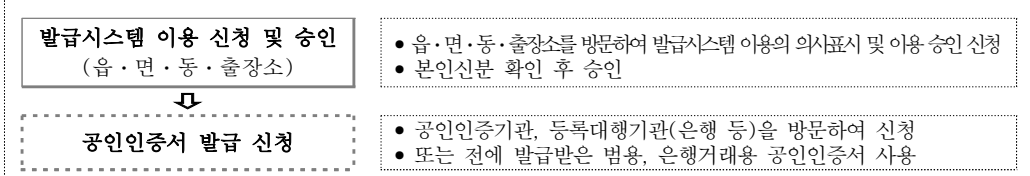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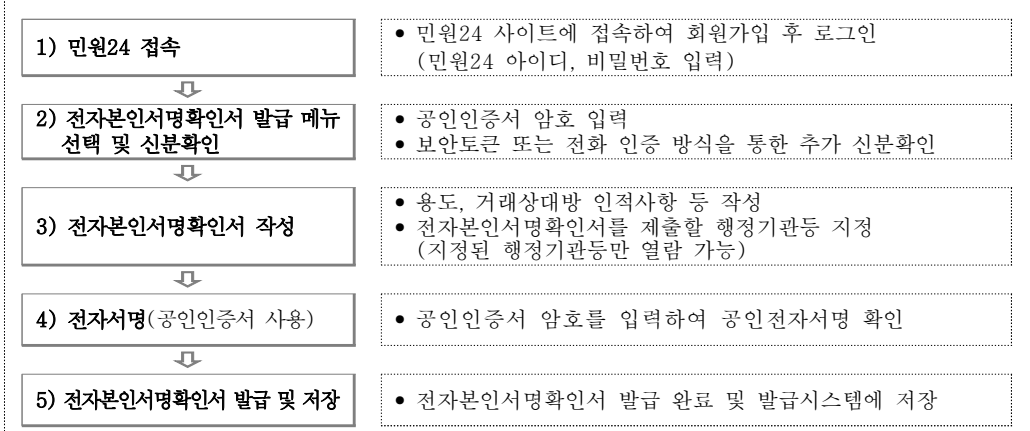
1. 등록기준지란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2. 추가 보안수단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표를 하며,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안토큰 방식"이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보안토큰에 의한 인증방식을 말합니다.
 - 2) "전화 인증 방식"이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3)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람 서비스"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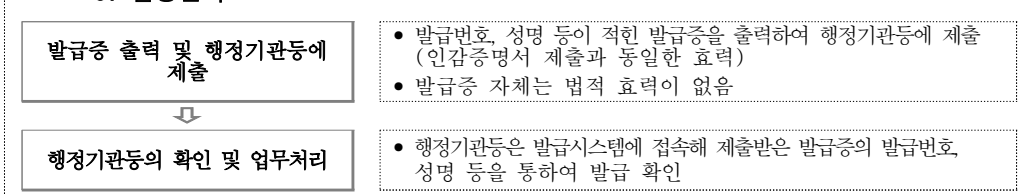
1. 이용승인



2. 발급절차



3. 활용절차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8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 이용 승인 신청서
[] 이용 철회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 남 [] 여	
여권번호	여권발급일	국적	여권 유효기간
국내거소신고일	체류자격·직업	체류기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신청인 국내거소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추가 보안수단	[] 보안토큰 방식 [] 전화 인증 방식		
그 밖의 서비스 신청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	(성명 :)에 대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사유	[]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함),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함)]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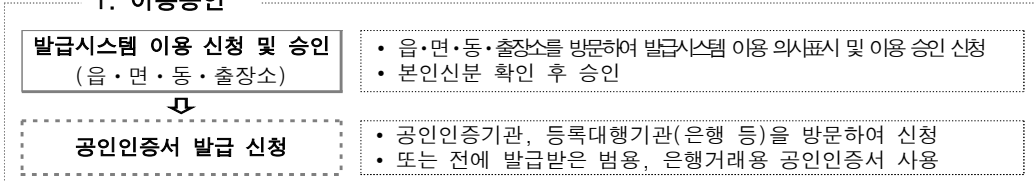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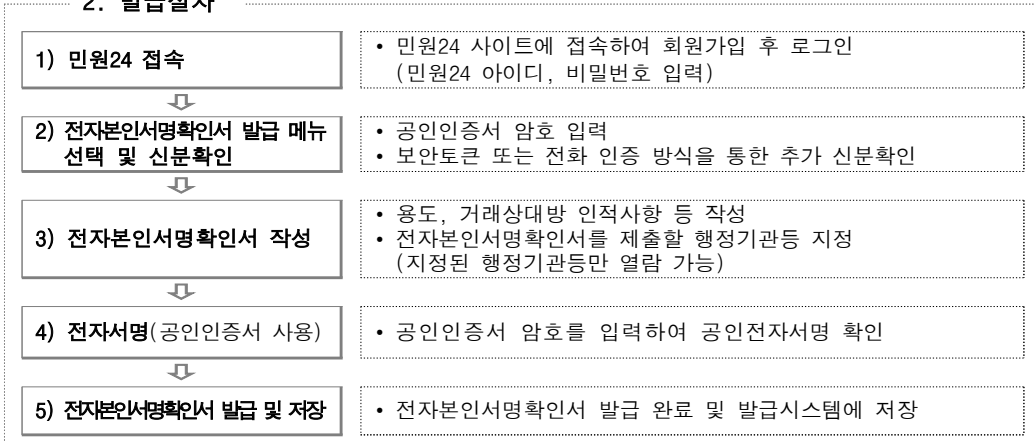
1. 추가 보안수단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 표를 하며,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안토큰 방식"이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보안토큰에 의한 인증방식을 말합니다.
 - 2) "전화 인증 방식"이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3)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 표를 합니다.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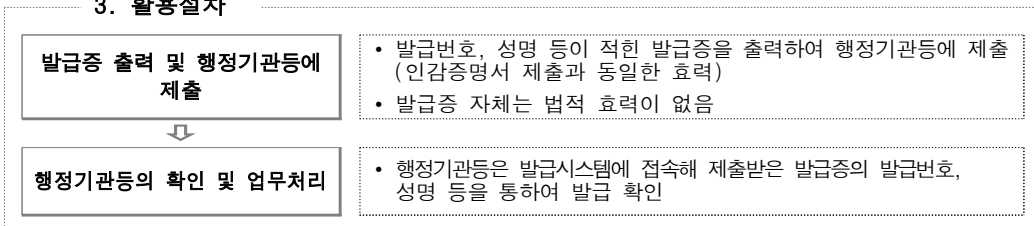
1. 이용승인



2. 발급절차



3. 활용절차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외국인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 이용 승인
[] 이용 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여권번호	여권발급일	국적 여권 유효기간	
	입국일자	체류자격·직업	체류기간 생년월일	
	국내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추가 보안수단	[] 보안토큰 방식 [] 전화 인증 방식		
	그 밖의 서비스신청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	(성명:)에 대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사유	[]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함),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함)]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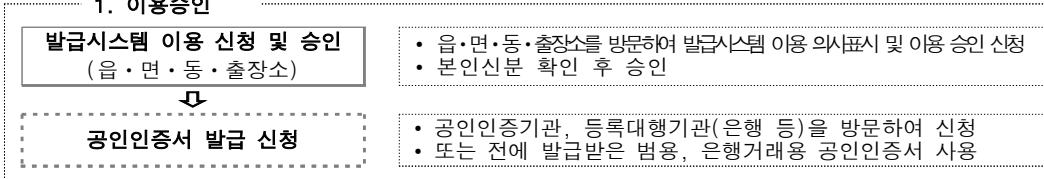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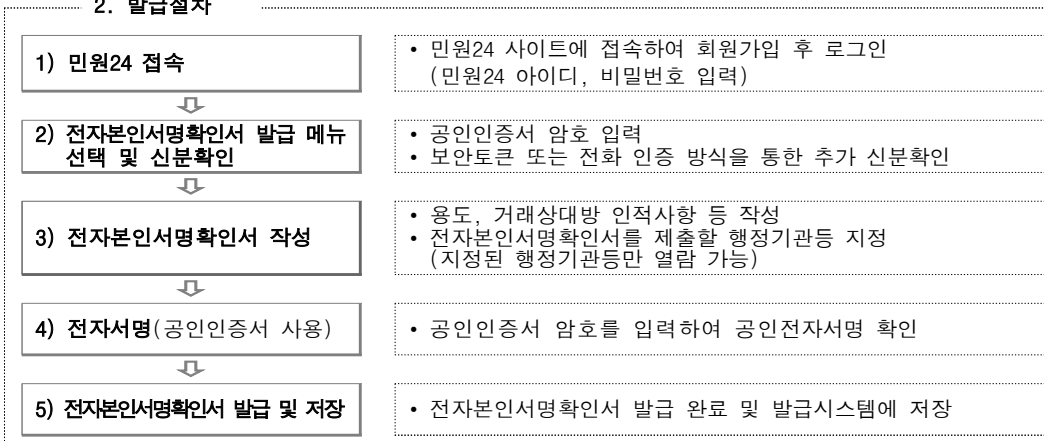
1. 추가 보안수단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 표를 하며,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안토큰 방식"이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보안토큰에 의한 인증방식을 말합니다.
 - 2) "전화 인증 방식"이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3)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 표를 합니다.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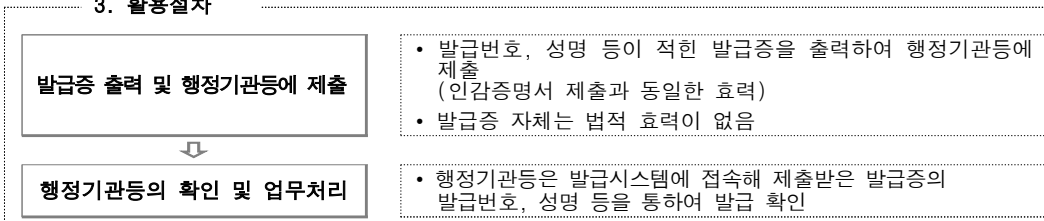
1. 이용승인



2. 발급절차



3. 활용절차



3) 발급시스템 등록 및 승인정보 이송 (영 제7조제6항 내지 제8항)

- 승인권자는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 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하고, 발급시스템에 이용 승인관련 정보 (법정대리인의 동의 정보 포함)를 등록
-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는 승인권자가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주소지 관할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
- 민원인이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민원인의 전(前)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는 발급시스템을 이용 승인 관련 자료를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이송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철회)대장

결 재	종 류	승인(철회)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승인(철회) 사유	비고
		승인	철회					
담 당	담당자							

297mm×210mm[백상지 80g/m²]

4)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등록기준지 변경시 승인권자에게 통보

-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기관의 장은 그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및 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통보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4조(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등록기준지 변경 등의 통보)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 같음하여 처리

5) 이용 승인 신청 제한대상 (영 제7조제9항)

-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을 한 경우

다. 발급시스템 유효기간 및 갱신

- 승인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발급시스템의 오용·남용 방지
- 승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발급시스템에서 갱신 가능

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의 철회 및 중지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영 제9조제1항 및 제2항)

-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받은 민원인이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이용 철회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제출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별지 제7호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은 제9호서식 제출
- 이용 철회신청서를 받은 승인권자는 본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이용승인을 철회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대장에 기록
- 발급시스템에 이용 철회 관련 자료를 등록한 후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관련 정보를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이송

2) 직권철회

- 철회권자 :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
- 철회사유
 - 민원인이 사망, 실종선고, 성년후견(금치산)선고 등을 받은 경우
 -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국내거소신고표 정리, 외국인등록 말소의 경우
* 인감증명법(§11④)과의 형평성 및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제한 필요
 -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이 중지된 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승인권자의 이용승인 철회 사유 확인 및 기록
 - 사전에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재외공관의 확인서, 국내거소신고표, 등록기준지 조회 또는 관계공무원의 사실 조사 등 실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철회)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정보를 발급시스템에 등록

3) 자료 이송 (영 제9조제3항·제4항)

-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는 승인권자가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을 철회한 경우 철회 관련 자료를 민원인의 주소지 관할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
- 민원인이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민원인의 전(前)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는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 관련 자료를 변경된 주소지 관할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
 - * 주민등록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 시 시스템으로 자동 이송됨

4) 이용 승인 중지

- 중지사유
 -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승인 신청사항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이용 승인이 중지된 사람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절차를 거쳐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함

4. 발급 사실의 확인 및 기록·관리

가. 발급 사실 확인 요청 및 확인 (영 제10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은 자는 온라인 전자민원창구(민원 24)에서 문서확인번호 등을 통하여 발급사실 확인 가능
 - * 민원인이 발급기관, 발급일, 주민등록번호, 문서확인번호 등을 입력하면 발급여부만 확인해줌.

나. 발급 사실 기록·관리 (영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발급시스템에 의해 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은 발급 후 발급 관련 자료를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이송
 -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승인 및 철회 관련 자료를 이송 받은 경우 그 내용을 발급 시스템에 기록·관리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승인권자는 민원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승인권자에게 승인 및 철회 관련 정보를 발급시스템으로 이송
-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인이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스템에 저장하고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
 - 행정자치부장관은 발급관련 자료를 민원인의 주소지 관할 승인권자에게 이송
- 발급기관, 승인권자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승인 및 이송 받은 관련 자료를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하여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
- 발급기관, 승인권자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록 파일을 작성·변경 또는 폐기하는 경우 그 기록파일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록파일의 보관 및 폐기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다.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 (영 제11조제7항)

- * 채권 소멸시효(10년) 등을 감안하여 관련 자료의 보존기간 지정
-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발급한 날부터 3개월.
 - 다만, 행정기관 및 법원(등기소) 등이 발급시스템 내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부터 10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 동의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기록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신청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신청서, 발급시스템에 등록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및 철회 관련 정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 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 열람대장 : 10년

라. 발급 현황 관리 (영 제14조의2제1항·제2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등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 행정자치부장관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발급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열 램

가. 열람 금지 (법 제12조)

- 발급기관 및 승인권자와 행정자치부장관은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없음
 - 본인이 열람을 신청한 경우
 - 관계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열람하는 경우
 - 그 밖에 수사, 소송 및 공무 집행을 위한 경우

나. 열람 절차 (영 제12조 제1항·제2항)

-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려는 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당시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를 방문하여 열람
-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와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 열람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
- 발급기관 또는 승인권자의 건물에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

다. 수사, 소송 및 공무집행을 위해 열람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영 제12조 제4항)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중인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에 필요하여 열람할 자를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이유로 본인이 동의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에 한정하여 열람을 신청한 경우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 조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 열람대장

열람 연월일	열람 대상	열람 신청인				열람 사유	열람 내용	입회인 (직, 성명)	결재	
		성명	소속/직	생년월일	주소				담당	담당자

297mm×210mm[백상지 80g/m²]

6. 수수료

가. 수수료 금액 (법 제14조, 영 제14조제1항)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한 통에 600원.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300원으로 인하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무료

나. 수수료 면제 (영 제14조제2항, 인감증명서와 동일)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 인감증명 정보 자료 제공을 갈음하여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권한의 위임·위탁

가. 지도·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등 위임 (영 제15조제1항·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나, 이를 효과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포함)에게 위임

나. 대한민국 국적자 (영 제15조제2항)

- 시·군·구청장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및 이용 승인의 철회에 관한 권한을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

다.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등록자 (영 제15조제2항)

- 시·군·구청장은 외국 국적자에 대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

8. 복수국적자에 대한 적용(영 제16조)

- 「국적법」 제11조의 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게 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및 이용 승인 철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권한 위임 등에 대한 서명, 성명, 주소 등은 대한민국 국민에 따라 적용

9. 발급 및 승인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

- 발급기관 및 승인권자는 조례에 따라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
- 발급 및 승인관련 사고로 인한 직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보험·공제 등에 가입 필요

10.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와 처리범위 (영 제17조)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11.9.30.)됨에 따라 발급기관 및 승인권자가 업무 상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신청·발급·관리 사무 및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및 철회에 관한 사무
- (처리할 수 있는 자)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및 읍장·면장·동장·출장소장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운영·관리자
- (처리 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11. 시행시기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특례

가. 시행시기 (부칙 제1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2012년 12월 1일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2013년 8월 2일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순차적 시행 (부칙 제2조)

*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최초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시행하고, 소속기관, 공공기관, 법원 등으로 순차 확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013년 8월 2일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2015년 1월 1일
- 제6조제6항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 : 2016년 1월 1일
 - *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특수법인, 각급학교(초·중·고·대학)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 2017년 1월 1일



Q&A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달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이유?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나,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 가능함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요기관간 전산 시스템 연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 중앙정부에 소규모로 시행해본 뒤 안전성 등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지방자치단체, 법원 등에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어 순차적으로 시행함

1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보완사항

가. 용도란 등 작성 요령

- 내국인의 서명 시 사용하는 성명은 공적장부(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명을 적음
 - 공적장부에 “유”씨 성씨를 가진 사람이 “류”로 서명은 불가
- “용도”가 다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용도별”로 서명을 받아 발급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상”에 “용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 “부동산 관련 용도”의“거래상대방”이란
 - 부동산 등기신청에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있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유형에서 등기의무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등기권리자가 거래상대방”이 됨

▶ 거래상대방의 예(등기권리자)

1. 부동산 소유권 이전
 - 가. 매매 : 매수인(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
 - 나. 증여 :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2. 제한물권 설정
 - 가. 근저당권 설정 : 근저당권자(예를 들어 은행 등이 돈을 빌려 주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 잡는 경우)
 - 나. 전세권 설정 : 전세권자[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자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민법 제303조)]
3. 그 밖의 용도
 - 가. 가등기 : 가등기권리자(가등기를 하여 이익을 받은 자)
 - 나. 가등기말소 : 가등기가 종료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담당자 날인”은 민원인 본인이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 의미로서 담당자 날인(작성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이 아님)

< 담당자 날인 위치 (●) > ※ 관계공무원이 전산입력시에는 날인 폐지

- 부동산 관련 용도인 경우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가등기, 가등기말소 등)	
		거래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21212-1021021 주소 서울 강동구 천중로 264 신동아아파트 15동 1호●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	빈 란	
수입인	성명 ● 홍길동 법무사●		
	주소(자격사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인 경우(위임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가등기, 가등기말소 등)	
		거래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빈 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빈 란 주소 빈 란
	그 외의 용도	●○○은행 금융계좌 해지용●	
위임받은 사람	성명 ● 김경숙		
	주소(자격사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서울 강동구 천중로 264 신동아아파트 15동 1호●		

-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인 경우(위임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가등기, 가등기말소 등)	
	거래상대방 등	성명(법인명) <input type="text" value="빈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input type="text" value="빈란"/>
		주소 <input type="text" value="빈란"/>	
	그 외의 용도	●○○은행 금융계좌 해지용●	
위임받은 사람	성명 <input type="text" value="빈란"/>		
	주소(자격사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input type="text" value="빈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발급 통수” 기재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에 “발급 통수” 기재
- 재외국민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세무서장 경유
 - 재외국민은 부동산 양도후 출국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채권 일실 우려가 크기 때문에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 경유
 - ※ “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처리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동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안정적 세수확보 및 조세채권 일실 방지에도 기여

나. 상속관련 확인서 발급 및 작성 요령

- 법정상속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요
 - 법정지분상속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음
-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협의분할서(등기소 제출)에는 상속인 전원이 서명을 해야하고 서명을 한 상속인들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매도용도'란의 소유권이전에 √표시를 하고 거래 상대방은 상속받은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성립한 때에는 그 협의서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함(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 ** 예시)거래상대방 기재방법
 - ① 상속인(A, B, C) 중 A가 전부 상속받는 경우 : A의 인적사항을 기재, 이 경우 A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거래상대방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 ② 상속인(A, B, C, D) 중 A와 B만 상속받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거래상대방에 A와 B의 인적사항을 기재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시에는 '그 외의 용도'란에 "oo가정(지방)법원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용"으로 기재

Ⅲ. 관련 법령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령(2단비교)
2. 인감증명관련 법령(2단비교)
3. 기타 참고법령(일부 발췌)



관련 법령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령 (2단비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83호, 2016.12.2., 일부개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5호, 2016.7.26., 일부개정]
<p>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 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 문서를 말한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본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p>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83호, 2016.12.2., 일부개정]</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5호, 2016.7.26., 일부개정]</p>
<p>제4조(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p> <p>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국민 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p>② 삭제 <2016.12.2.></p> <p>③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민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만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p>	<p>제2조(서명 및 신청 시의 성명)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영에 따라 서명을 하거나 각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는 성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공적(公的)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국내거소신고자"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 3.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 <p>제3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법 제5조</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83호, 2016.12.2., 일부개정]</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5호, 2016.7.26., 일부개정]</p>
<p>받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4항 본문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기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읍장·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때에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3. 삭제 <2014.12.3.> <p>③ 법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 및 한정후견인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2.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3. 등기사항증명서 <p>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명은 신청인이 직접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을 한 후, 발급기관이 신청인의 서명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란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서명은 그 서명에 따라 발급되는</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83호, 2016.12.2., 일부개정]</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5호, 2016.7.26., 일부개정]</p>
	<p>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의 다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인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서명, 주소, 용도(부동산 관련 용도 또는 자동차 매도 용도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도란과 위임받은 사람란(위임받은 사람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신청인으로부터 그 용도와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를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받아 관계 공무원이 전산 입력하고, 신청인으로부터 그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래상대방의 성명(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2. 거래상대방의 주소(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p>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되는 주소는 주민등록표의 주소와 같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해당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외국민: 대한민국에서의 최종주소지(재외국민이 출국하기 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마지막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최종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를 기재한다. 2. 국내거소신고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지 3.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국내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83호, 2016.12.2., 일부개정]</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5호, 2016.7.26., 일부개정]</p>
<p>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인(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발급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에 수록된 사진과 신청인의 얼굴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신분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무인(捺印)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p>	<p>체류지</p> <p>⑤ 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경우에 해당 신청인은 등록기준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법 제6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⑦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발급내용을 기록하고, 그 대장에 신청인(법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을 포함한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⑧ 발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위조·변조 및 복사 방지를 위하여 특수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p> <p>제4조(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대한민국 여권 5.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 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83호, 2016.12.2., 일부개정]</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5호, 2016.7.26., 일부개정]</p>
<p>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인이 본인인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p> <p>③ 신청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분이 확인된 후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은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p> <p>④ 발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서명한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이 신청한 경우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3.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발급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한다)</p> <p>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분 확인은 신청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이하 "무인"(拇印)이라 한다]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전산정보자료를 말한다) 또는 제13조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한다.[시행일 : 2017.1.27.]</p> <p>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명은 신청인이 직접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을 한 후, 발급기관이 신청인의 서명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란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서명은 그 서명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의 다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인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서명, 주소, 용도(부동산 관련 용도 또는 자동차 매도 용도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도란과 위임받은 사람란(위임받은 사람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신청인으로부터 그 용도와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를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받아 관계 공무원이 전산 입력하고, 신청인으로부터 그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래상대방의 성명(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83호, 2016.12.2., 일부개정]</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5호, 2016.7.26., 일부개정]</p>
	<p>2. 거래상대방의 주소(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p> <p>3.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p> <p>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되는 주소는 주민등록표의 주소와 같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해당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p> <p>1. 재외국민: 대한민국에서의 최종주소지(재외국민이 출국하기 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마지막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최종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를 기재한다.</p> <p>2. 국내거소신고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지</p> <p>3.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p> <p>⑤ 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경우에 해당 신청인은 등록기준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법 제6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⑦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발급 내용을 기록하고, 그 대장에 신청인(법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을 포함한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83호, 2016.12.2., 일부개정]</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5호, 2016.7.26., 일부개정]</p>
<p>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감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에 제5항에 따른 발급증을 제출함으로써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대행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관리</p>	<p>⑧ 발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위조·변조 및 복사 방지를 위하여 특수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p> <p>제13조(사실조회요청 등) 발급기관 또는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무인 등을 이용한 신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2. 신청인이 법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3. 민원인이 법 제8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4. 재외국민인 신청인 또는 민원인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실 <p>제6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시스템의 구축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83호, 2016.12.2., 일부개정]</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5호, 2016.7.26., 일부개정]</p>
<p>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p>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민원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발급시스템에서 표준화된 서식을 작성하고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p> <p>④ 미성년자인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본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p> <p>⑤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다. 이 경우 한정후견인의 본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p> <p>⑦ 민원인은 제2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번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해당 행정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⑧ 행정기관등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p>	<p>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p>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는 민원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p> <p>⑤ 민원인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하나의 행정기관등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⑥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모두 거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의 암호 입력 2. 제7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이 추가로 신청한 본인 확인 절차 3. 삭제 <2014.12.3> <p>⑦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급번호 2. 발급일시 3. 성명 4. 용도 5. 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제출기관 6. 민원인이 본인 외의 자에게 위임하여 발급증을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83호, 2016.12.2., 일부개정]</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5호, 2016.7.26., 일부개정]</p>
<p>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발급시스템 내에서만 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운영,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① 민원인은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미성년자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④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⑤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위한 민원인 및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확인 및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민원인"으로, "발급기관"은 "승인권자"로 본다.</p> <p>⑥ 승인권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여야 한다.</p> <p>1. 피성년후견인이 신청한 경우</p>	<p>행정기관등에 제출하는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사람</p> <p>⑧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발급시스템 내에서 확인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확인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p> <p>제7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신청서[재외국민 중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이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과 함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기재하는 주소에 대해서는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p> <p>③ 민원인은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본인 확인 절차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가로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미성년자인 민원인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기재된 승인</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83호, 2016.12.2., 일부개정]</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5호, 2016.7.26., 일부개정]</p>
<p>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p> <p>3.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p> <p>4. 제5항에 따른 민원인 또는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p> <p>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청서를 한정후견인의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승인권자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이용 승인 관련 정보(법 제8조제3항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정보를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정보를 포함한다)를 발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⑦ 민원인의 주소지(제5조제4항에 따라 기재되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지 않는 승인권자가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 관련 자료를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p> <p>⑧ 민원인이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민원인의 전(前)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는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관련 자료를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p> <p>⑨ 법 제8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9조(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의 철회)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발급시스템의 이용을 승인받은 민원인이 발급시스템 이용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신청서(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은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하며, 이하 "철회신청서"라 한다)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83호, 2016.12.2., 일부개정]</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5호, 2016.7.26., 일부개정]</p>
<p>제9조(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및 협조) ① 발급기관은 제6조에 따라, 승인권자는 제8조에 따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신분증을 발급한 기관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p>	<p>② 제1항에 따라 철회신청서를 제출받은 승인권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민원인의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철회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 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이용 철회 관련 정보를 발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③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는 승인권자가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을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 관련 자료를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p> <p>④ 민원인이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민원인의 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는 발급시스템 이용 철회 관련 자료를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p> <p>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②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및 이영 제9조에 따른 이용 승인의 철회에 관한 권한을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83호, 2016.12.2., 일부개정]</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5호, 2016.7.26., 일부개정]</p>
<p>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1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등)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자료로부터 그 발급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p> <p>제11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관리 등) ①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10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기관에 대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은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1. 발급기관 2. 발급일 3. 주민등록번호 4. 문서확인번호</p> <p>제11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관리) ①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는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관련 자료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가 제7조제7항·제8항 및 제9조제3항·제4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이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급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민원인이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스템에 저장하고, 관련 정보를</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83호, 2016.12.2., 일부개정]</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5호, 2016.7.26., 일부개정]</p>
	<p>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발급 관련 자료를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p> <p>⑤ 발급기관, 승인권자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관련 기록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록매체에 보관·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기록파일"이라 한다)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기록파일에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하여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p> <p>⑥ 행정자치부장관, 발급기관 또는 승인권자는 기록파일을 작성·변경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파일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⑦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과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한 날부터 3개월. 다만,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서류: 10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기록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내용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라. 승인신청서 마. 철회신청서 바. 발급시스템에 등록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및 철회 관련 정보 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83호, 2016.12.2., 일부개정]</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5호, 2016.7.26., 일부개정]</p>
<p>제12조(열람의 금지) 발급기관 및 승인권자와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열람하는 경우 3. 그밖에 수사, 소송 및 공무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 	<p>(철회) 대장</p> <p>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 열람대장</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 자료의 입력·출력·편집·검색이나 그 밖의 업무처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p> <p>제12조(열람의 절차) ① 법 제12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열람을 요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받은 사람의 주소를 관할하는 승인권자 <p>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발급기관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는 열람할 수 있는 자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 열람대장에 기록하고, 발급기관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건물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는 다른 승인권자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 등 열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83호, 2016.12.2., 일부개정]</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5호, 2016.7.26., 일부개정]</p>
<p>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p>제14조(수수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에 동의하거나 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동의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소송을 이유로 본인이 동의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자료만 열람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p>제14조(수수료) ① 법 제14조에 따른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 통에 600원.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300원으로 한다.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무료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83호, 2016.12.2., 일부개정]</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5호, 2016.7.26., 일부개정]</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5.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 인감증명정보 자료 제공을 갈음하여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1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83호, 2016.12.2., 일부개정]</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5호, 2016.7.26., 일부개정]</p>
<p>제15조(지도·감독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다.</p> <p>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발급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p>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②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및 이 영 제9조에 따른 이용 승인의 철회에 관한 권한을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p> <p>제14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현황 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발급기관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등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83호, 2016.12.2., 일부개정]</p>	<p>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75호, 2016.7.26., 일부개정]</p>
	<p>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발급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16조(복수국적자에 대한 적용) 「국적법」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에 대하여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5조를 적용할 때 복수국적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p> <p>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및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신청·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및 철회 등에 관한 사무

2. 인감증명관련 법령(2단비교)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p> <p>[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p>
<p>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무의 관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p> <p>제3조(인감 신고 등)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경우: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2.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p>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지</p>	<p>제1조(목적)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등록기준지 변경 등의 통보) ①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최종주소는 각각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소를 상실하고 국외로 출국하기 직전의 사실상의 거주지로 한다. 다만, 1968년 8월 28일 이후에 출국한 자의 경우에는 출국당시의 주민등록지로 한다.</p> <p>②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때에는 가족관계 등록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및 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p> <p>[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p>
<p>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동포가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p>	<p>제4조의2(증명청의 변경) ①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그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 2. 재외국민이 영주귀국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을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 <p>②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그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 신고(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출국한 경우: 출국일 다음날 2. 「주민등록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국신고(같은 항 후단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출국한 경우: 출국일 다음날(「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재외국민등록통보서 접수일) 3.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 <p>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①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술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고</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p> <p>[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p>
	<p>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기준지(외국인을 제외한다) 2. 주소·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지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고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5. 여권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p>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혼자 방문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p> <p>③ 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대한민국 여권 5.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p> <p>[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p>
	<p>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p> <p>④ 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이 미주민등록 제외국민,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여권번호를 여권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마친 증명청은 신고인이 보는 앞에서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인감란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구술신고"라고 적고, 신고인에게 관계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신고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이하 "무인(捺印)"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하고, 신고인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p> <p>⑥ 증명청은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 전산자료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p> <p>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법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고 및 신청을 하려는 자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아 후견등기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p> <p>[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p>
<p>제4조(인감대장) ①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갖추어 두고 신고인감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삭제 <1991.1.14></p> <p>③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감의 재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감대장이 분실·멸실·훼손 또는 마멸된 경우 2. 그 밖에 인감대장의 기록 내용 등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3. 인감대장의 서식(書式)을 변경한 경우 <p>④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과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인감</p>	<p>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번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에 따른 인감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인감의 말소 및 부활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의3에 따른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무 <p>제5조(인감대장 등의 서식)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청이 비치하는 인감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인감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의 인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p> <p>② 증명청은 인감대장외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p> <p>③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대장의 주소이동사항란에 그 일자를 기재하고 "국외이주신고"라고 표기한다.</p> <p>④ 증명청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자 또는 현지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p> <p>[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가를 등기관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5.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등과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한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들이 신청하는 경우 1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감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수료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p> <p>[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p>
<p>제6조(인장 규격의 제한) 제3조에 따라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7조(본인 신고의 원칙) 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징집·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p>	<p>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로 한정한다)이 신청하는 경우</p> <p>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p> <p>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①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술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기준지(외국인을 제외한다) 2. 주소·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지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고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5. 여권번호(미주민등록 제외국민,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p>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이하 "</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p> <p>[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p>
	<p>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혼자 방문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p> <p>③ 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대한민국 여권 5.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p>④ 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여권번호를 여권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마친 증명청은 신고인이 보는 앞에서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인감란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구술신고"라고 적고, 신고인에게 관계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신고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엄지손가락</p>

<p>인감증명법 [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p>	<p>인감증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p>
	<p>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이하 "무인(拇印)"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하고, 신고인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p> <p>⑥ 증명청은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 전산자료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p> <p>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법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고 및 신청을 하려는 자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아 후견등기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p> <p>제8조(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p> <p>②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서면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감신고서에 인장을 찍은 백지(이하 "인감지"라 한다)와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인감을 서면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인감신고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하</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p> <p>[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p>
<p>제8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p>	<p>는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피한정후견인이 인감을 서면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인감(변경)신고서에 한정후견인의 동의[한정후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한정후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한정후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한정후견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확인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재외공관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확인일부터 6개월)로 한다.</p> <p>⑥ 증명청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지를 첨부하여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한 후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한 후 "서면신고"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번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p> <p>[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p>
<p>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제9조(사망 등의 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p> <p>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①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망이 분명한 때 2.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실종선고가 있는 것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에 따른 인감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인감의 말소 및 부활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의3에 따른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무 <p>제11조(사망 등의 신고) ① 삭제 <2005.1.15> ②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소관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7조(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감관리대장,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 기록대장 : 영구 2. 인감증명서발급대장 : 30년 3. 각종 신고서, 확인서 및 동의서, 인감신고사항 통보서, 위임장 그 밖의 인감관련대장: 10년 <p>제12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 증명청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할 때에는 미리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재외공관의 확인서, 국내거소신고증 반납확인서, 등록기준지 조회 또는 관계공무원의 사실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말소사유를 확인하</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p> <p>[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p>
<p>안 때</p> <p>② 제1항의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인감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인감이 말소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청에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p> <p>④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으로 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p>	<p>여야 하며,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 및 그 사유와 "직권말소"라고 붉은 글씨로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② 인감을 신고한 자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감의 말소 및 부활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청(구술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인감의 말소 및 부활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청 2.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3.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다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혼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p>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인하여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 인감말소·부활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말소·부활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인감말소·부활신청서의 인감 및 법정대리인의 인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과 인감임이 확인된 때에는 인감대장 비고란에 인감말소·부활일자 및 그 사유와 "말소신고"·"부활</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p> <p>[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p>
	<p>신고"로 표기한 후 신청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p> <p>⑤증명청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의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되거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이 재등록된 때에는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말소·부활일자 및 그 사유와 "직권말소"·"직권부활"이라고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p> <p>제15조(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1조에 따라 인감이 말소된 때 2.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 3.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4.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 6.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사항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 없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 8.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9.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p> <p>[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p>
<p>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p>	<p>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p> <p>10.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와 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p> <p>11.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인감보호신청란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때</p> <p>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번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에 따른 인감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인감의 말소 및 부활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의3에 따른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무 <p>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p> <p>[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p>
<p>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p> <p>③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摺印)을 하여야 한다.</p>	<p>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한정후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한정후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한정후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받으려는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로 한정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p> <p>[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p>
	<p>4.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한정후견인이고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③ 부동산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④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증등(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제2항에 따른 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임을 확인한다. 2.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여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p> <p>[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p>
	<p>부를 반드시 확인한다.</p> <p>3.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 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발급하는 인감증명서가 피한정후견인의 인감 증명서일 때에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 에게 용도를 확인한 후 직접 인감증명서에 용 도를 기재하여 발급한다.</p> <p>4.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 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 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 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 을 수 있다.</p> <p>⑤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감증명 서를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신청인은 인감신 고인의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 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 급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등을 확인한 후 인감대 장의 신고인감을 복사하여 이를 별지 제14호서식 에 첨부·간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 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p> <p>⑥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 식에 따라 본인의 신청을 받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 등에게 그 사 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에 따라 인 감을 신고할 때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의 통보에 동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감대장에</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p> <p>[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p>
<p>제12조의2(인감증명서의 발급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사람이 발급</p>	<p>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지 아니하고 통보할 수 있다.</p> <p>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p> <p>제18조의2(권한의 위임) ①증명청은 법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주지 또는 재외국민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고한 자의 인감사무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을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p> <p>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번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조에 따른 인감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인감의 말소 및 부활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의3에 따른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무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p> <p>[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p>
<p>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p> <p>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1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증명청은 제3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제14조(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p> <p>제14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①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p>	<p>제16조(인감변경신고)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개명(改名)하거나 영주귀국 등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신고된 인감의 성명과 달라지게 되는 등 신고된 인감이 제3조에서 정한 성명과 달라진 경우에는 법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기 전에 법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18조의2(권한의 위임) ① 증명청은 법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가진 자나 재외국민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의 인감사무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p> <p>[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p>
<p>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이하 "인감보호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감의 말소 신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 신청 4.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 5.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 <p>②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의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①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p> <p>②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의4(권한의 위임) 증명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1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p>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인감 사무에 관한 권한을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p> <p>제19조(수수료)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감증명서 발급 : 통당 600원 2. 인감변경신고 : 회당 600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가를 등기관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p> <p>[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p>
	<p>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5.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등과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한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신청하는 경우 1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감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로 한정한다)이 신청하는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p> <p>[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p>
	<p>경우</p> <p>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p> <p>제5조의3(인감대장의 이송) ① 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관련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 또는 말소자의 인감대장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p> <p>② 인감을 신고한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사항을 통보받은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기준지 변경사항과 별지 제3호서식의 인감대장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을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p> <p>③ 「출입국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를 받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지변경사실을 통보받은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밀봉하여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p> <p>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p>

<p>인감증명법 [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p>	<p>인감증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p>
	<p>국내거소신고자의 국내거소이전통보를 받은 선거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밀봉하여 선거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대장 및 관련공부를 이송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위임으로 같은 시·군·자치구의 관내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송할 수 있다.</p> <p>⑥ 신증명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대장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p> <p>제17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감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 인감보호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한 후 인감대장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인감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p> <p>② 인감을 신고한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수감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감보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 인감보호신청서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 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보호신청서를 제출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대리인의</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p> <p>[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p>
	<p>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감보호 신청을 받은 인감 증명서발급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별지 제15호의 5서식에 따라 소관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소관증명청은 관리하고 있는 인감대장에 인감보호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인감보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인감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인감보호 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인감보호신청란에 요청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한 후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p> <p>⑥ 인감보호의 해지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⑦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감보호 신청을 한 후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인감보호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p> <p>1. 인감보호의 해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p> <p>[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p>
	<p>여 입원한 시설을 관할하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p> <p>2. 제1호의 신청을 받은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방문 여부 및 방문 예정 일시 등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전화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방문하여야 한다.</p> <p>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을 방문한 관계 공무원은 주민등록증등이나 무인으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인감보호 해지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한다.</p> <p>제14조(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자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하여 그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급기관 2. 발급일자 3. 주민등록번호 4. 발급번호 <p>제18조(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① 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 경우: 대리인(인감증명서발급내역에 관한 열람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려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p> <p>[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법 시행령</p> <p>[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p>
	<p>는 경우: 성년후견인</p> <p>3.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 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이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p> <p>4.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p> <p>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자</p> <p>② 인감을 신고한 본인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열람한 서류의 사본(전산자료 출력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이라 한다)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열람등의 신청을 받은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와 주민등록증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열람대장에 기재하고,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하게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한 서류의 사본과 함께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한다.</p> <p>④ 제1항제5호의 자 중 진행 중인 재판,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세무조사, 감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람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을 요청하는 자는 근거 법률 및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통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요청 내용에 따라 직접 열람하게 하거나 문서로 통보한다.</p>

3. 기타 참고법령(일부 발췌)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서명”의 정의 관련

제3조(정의) 5. "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제10조에 따라 결재, 위임전결 또는 대결(代決)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전자서명법 ㉠ “전자공인서명”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8.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 ①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입자의 이름(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2.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
3.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4.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
5.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6.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7.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또는 직업상 자격등의 표시를 요청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9. 공인인증서임을 나타내는 표시
- ③삭제 <2001.12.31.>
- ④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⑤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 ⑥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다. 재외공관공증법 재외국민 관련

제2조(공증사무의 담당) ① 제1조에 따른 공증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이하 "영사관"이라 한다)가 담당한다.

라. 출입국관리법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관련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5.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 또는 알선하는 행위
2.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3. 외국인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제34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시·군 또는 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③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 변경사항을 적은 후 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직접 전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체류지 변경통보를 받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지체 없이 종전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체류지 변경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외국인등록표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 이송을 요청받은 종전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이송을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외국인등록표를 이송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를 이송받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신고인의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고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종전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2. 복수사증 소지자나 재입국허가 면제대상 국가의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하였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②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국민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그 외국인이 허가된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돌려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7세 이상인 사람
 - 가.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거나 그 밖에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 또는 해당 외국인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이 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관련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1. 삭제 <2014.5.20.>

2. 삭제 <2014.5.20.>

② 제1항의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국내거소신고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국적

6. 거주국

7. 대한민국 안의 거소 등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대장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훼손(毀損)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시·군·구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 및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바-1. 전자정부법 ☞ 제7조 발급시스템 관련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①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 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④민원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바-2. 전자정부법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 통계정보, 문헌정보, 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3. 행정기관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②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행정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공동이용 대상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행정정보보유기관은 공동으로 이용되는 행정정보가 최신 정보가 되도록 하고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특정한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범위에서 대상정보의 종류, 범위 및 유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기재생략 법인관련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사-2. 지방공기업법 ☞ 기재생략 법인관련

제2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사-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기재생략 법인관련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사-4. 새마을금고법 기재생략 법인관련

제7조(설립) ① 금고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회장을 거쳐 행정자

치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4조(감독 등) ① 주무부장관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는 금고와 중앙회를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를 검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是正)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금고 또는 중앙회의 의결사항이 위법·부당한 경우에도 같다.

④ 삭제 <2016.1.6.>

⑤ 삭제 <2016.1.6.>

⑥ 주무부장관은 금고와 중앙회의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改選),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

② 제1항 및 제79조제3항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또는 중앙회가 그 등기를 게을리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금고 또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6.]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고 또는 주의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② 주무부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3. 제7조의2에 따른 설립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회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명 미만인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9조제3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9조제6항에 따른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이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회장은 금고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에게 해당 금고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주무부장은 제2항에 따라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등기에 관한 신청(이하 "등기신청"이라 한다)을 할 경우 그 신청서나 첨부서면(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의 심사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 그 밖의 법령, 대법원예규에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 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에 같음하여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

제3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서명방법 등)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등기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 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신청서의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④ 등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청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이 된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
 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
 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이 포함된 경우
 5. 그 밖에 등기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제4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확인 등) ① 등기관이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등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등기관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때 이미 제출된 신청서 등을 그에 맞게 보정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소 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주소의 확인 등) 등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의 주소이동 내역에서 확인되거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같은 사람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부동산 관련 용도란의 기재)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용도란에는 신청할 등기유형과 거래상대방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위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기관인 경우, 거래상대방란에 법인의 명칭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과 신청서 등에 기재된 등기관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그 외의 용도란의 기재) 부동산등기신청 외의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그 외의 용도란에 신청할 등기유형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예 : ○○ 주식회사 이사 취임등기용)

제8조(위임받은 사람란 등의 기재) ① 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발급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변호사○○○" 또는 "법무사○○○" 와 같이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격자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위임받은 사람란에 기재된 사람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제9조(유효기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할 경우 그 청구서나 첨부서면(이하 "청구서등"이라 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공탁법」, 「공탁규칙」 그 밖의 법령 및 대법원예규에서 청구서등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경우, 이를 갈음하여 청구서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서명 방법 등) ①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청구서등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공탁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한다.

②청구서등의 서명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한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한자로,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영문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이 한글이 아닌 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서등의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청구를 불수리하는 서명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청구서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명된 경우에는 그 청구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제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서명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본인의 성명을 전부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성명과 다른 경우
3.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려 쓰거나 작게 쓰거나 겹쳐 쓴 경우
4. 성명 외의 글자 또는 문양을 포함한 경우
5. 그 밖에 공탁관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된 경우

제5조(용도란의 기재) ①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에는 법원의 명칭, 공탁번호, 해당 용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예 : 00지방법원 0000년 금제000호 공탁금 출급 청구).

②“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에 기재된 사항과 청구서등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공탁에 관한 청구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임인란의 기재) ①대리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에 관한 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수임인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자격자대리인일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자격명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자격자대리인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②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용도란의 기재와 위임장의 위임취지는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제7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유효기간) 공탁에 관한 청구서에 첨부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차-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관련

제41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후견등기사무 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기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를 거쳐 등기전산정보를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차-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관련

제65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법 제41조에 따라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등기전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법률의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보관기간 및 안전관리대책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기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 ⑤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었거나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관련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IV. 참 고 자 료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현황
3. 인감증명제도 개요
4. 인감제도 개편에 따른 국민인식 조사결과
5. 외국의 인감제도 운영 사례
6. 해외의 서명사용 사례
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례

IV

참 고 자 료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016년 기준 323개)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4)	(산자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준 시장형 공기업 (16)	(재정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자부) 대한석탄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기 금 관리형 준정부 기 관 (16)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금융위)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위 탁 집행형 준정부기관 (74)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안전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농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미래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산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기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식약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기 타 공 공 기 관 (203)	<p>(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p> <p>(재정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p> <p>(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p> <p>(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p> <p>(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p> <p>(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p> <p>(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p> <p>(행자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p> <p>(문화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p> <p>(농식품부) (재)한식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p> <p>(산자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기초전력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p> <p>(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p>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p>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주)위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미래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단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산림청) 녹색사업단 (중기청) (재)중소기업연구원,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p>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현황 (2016년 기준 410개)

시·도	유형	수	기관명
총 계		410	
서울 (31)	광역 (7)	직영	2 상수도, 지역개발기금
		공사	4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공단	1 서울시설공단
	기초 (24)	공단	24 종로구시설공단, 중구시설공단, 용산구시설공단, 성동구도시공단, 광진구시설공단, 동대문구시설공단, 중랑구시설공단, 성북구도시공단, 강북구도시공단, 도봉구시설공단, 노원구서비스공단, 은평구시설공단, 서대문구도시공단, 마포구시설공단, 양천구시설공단, 강서구시설공단, 구로구시설공단, 금천구시설공단, 영등포구시설공단, 동작구시설공단, 관악구시설공단, 강남구도시공단, 송파구시설공단, 강동구도시공단
	부산 (10)	광역 (9)	직영
공사			3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공단			3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윈
기초 (1)	공단	1 기장군도시공단	
대구 (8)	광역 (7)	직영	3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공사	2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공단	2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기초	공단	1 달성군시설공단
인천 (17)	광역 (10)	직영	5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인천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기금
		공사	3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공단	2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기초 (7)	공단	7 중구시설공단, 남구시설공단, 남동구도시공단, 부평구시설공단, 계양구시설공단, 서구시설공단, 강화군시설공단
	광주 (8)	광역 (7)	직영
공사			3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공단			1 광주환경공단
기초 (1)		공단	1 광산구시설공단

시·도		유형	수	기관명	
총 계			410		
대전 (7)	광역 (7)	직영	3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공사	3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공단	1	대전시설공단	
울산 (8)	광역 (5)	직영	3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공사	1	울산도시공사	
		공단	1	울산시설공단	
	기초(3)	공단	3	중구도시공단, 남구도시공단, 울주군시설공단	
세종 (4)	광역 (4)	직영	4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경기 (106)	광역 (7)	직영	4	공영개발	경기도한류월드조성사업, 경기도관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경기도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공사	3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기초 (99)	직영	68	상수도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파주, 광명, 김포, 군포, 광주, 이천, 양주, 오산, 구리, 안성, 포천, 의왕, 하남, 여주, 동두천, 과천, 양평, 가평, 연천
				하수도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파주, 광명, 김포, 군포, 광주, 이천, 양주, 오산, 구리, 안성, 포천, 의왕, 여주, 동두천, 과천, 양평, 가평, 연천
				공영개발	수원, 성남, 의정부, 시흥, 안성, 의왕, 과천시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공사	14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용인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구리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의왕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양평지방공사	
				공단	17

시·도	유형	수	기관명		
총계		410			
강원 (33)	광역 (2)	직영	1	지역개발기금	
		공사	1	강원도개발공사	
	기초 (31)	직영	24	상수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인제, 고성, 양양
				하수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공영개발	춘천, 원주, 강릉, 속초
		공사	3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태백관광공사	
공단	4	동해시설공단, 속초시설공단, 영월시설공단, 정선시설공단			
충북 (21)	광역 (2)	직영	1	지역개발기금	
		공사	1	충북개발공사	
	기초 (19)	직영	17	상수도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진천, 음성, 단양
				하수도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증평, 진천, 음성
				공영개발	충주, 음성
		공단	2	청주시설공단, 단양관광공단	
충남 (34)	광역 (3)	직영	1	지역개발기금	
		공사	2	충남개발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기초 (31)	직영	26	상수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하수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홍성
				공영개발	천안, 보령, 아산, 계룡
		공사	1	당진항만관광공사	
공단	4	천안시설공단, 보령시설공단, 아산시설공단, 부여시설공단			
전북 (20)	광역 (2)	직영	1	지역개발기금	
		공사	1	전북개발공사	
	기초 (18)	직영	16	상수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
				하수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
				공영개발	익산
		공사	1	장수한우지방공사	
공단	1	전주시설공단			

시·도		유형	수	기관명	
총 계			410		
전 남 (22)	광역 (2)	직영	1	지역개발기금	
		공사	1	전남개발공사	
	기초 (20)	직영	19	상수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화순, 영암, 영광
				하수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화순, 영암, 영광
공영개발				목포, 순천, 광양	
공사	1	여수시도시공사			
경 북 (36)	광역 (3)	직영	1	지역개발기금	
		공사	2	경북개발공사, 경북관광공사	
	기초 (33)	직영	26	상수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영덕, 칠곡, 울진
				하수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영덕, 칠곡
		공사	3	청송사과유통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공단	4	포항시설공단, 안동시설공단, 구미시설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경 남 (39)	광역 (2)	직영	1	지역개발기금	
		공사	1	경남개발공사	
	기초 (37)	직영	29	상수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함안, 창녕, 거창, 합천
				하수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창녕, 거창
				공영개발	창원, 창원주택건설, 진주, 김해, 양산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지역개발기금	창원
	공사	5	통영관광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창녕군개발공사		
공단	3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양산시설공단			
제 주 (6)	광역 (6)	직영	3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공사	3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3. 인감증명제도 개요

□ 제도 개요

- 출원자가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 및 본인신분에 대한 입증자료로 폭넓게 이용
- 근거법령 : 인감증명법('61.9.23 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62.6.12 제정)
- 사무관장기관(증명청) : 주소(거소지, 체류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운영 현황

- 인감신고(주소지) : 본인신고 원칙, 예외적 서면신고 허용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 : 법정대리인의 동의
- 인감발급(전국 어디서나) : 본인발급 원칙, 대리발급 허용
 - '03. 3.26.부터 신고된 인감을 전산화하여 온라인 전국 발급
 - ※ 인감전산화사업 : '02. 4.~'03.3./ 9,865백만원(국비 80, 지방비 9,785)
- 인감열람 : 본인 및 법령에 따른 권한이 있는 자로 제한됨

□ 처리 절차

신고	관리	발급	대장이송
신고관할(증명청)	변경 등	발급기관	증명청
○본인신고(원칙) ○서면신고(예외). ※시행령에 규정된 신분증(6종) ※신분별 인감대장 구분 작성(4종)	○인감도장 변경(증명청) ○본인의 발급금지의 신청 및 해제 - 전국 어디서나 가능	○전국 어디서나 가능 ○종류 - 일반용, 부동산매도용, 자동차매도용 ○특이사항 - 매도용은 매수자의 인적사항 기재	○신고인의 주소(거소, 체류지) 변경시 - 수기 인감대장이송

4. 인감제도 개편에 따른 국민인식 조사결과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09. 5. 1 ~ 5.22 * 조사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조사대상
 - 일반인 1,500명 (만 19세 이상)
 - 전문가 55명 (정책자문위원, 교수, 법무사, 행정사, 공증인 등)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및 우편 조사

□ 조사 결과 (요약)

순번	조사 항목	일반인	전문가
1	인감증명 사용횟수	1년에 한번 이하 79.6% 2~3번 15.6%	1년에 한번 이하 38.9% 2~3번 25.9%
2	인감증명 사용용도	(부동산 관련 78.9%) 부동산 거래 50.3% 은행 거래 28.6% 자동차 등록 13.5%	(부동산 관련 66.7%) 부동산 거래 38.9% 은행 거래 27.8% 자동차 등록 7.4%
3	인감제도 불편도	편리 58.3%, 불편 41.1%	편리 48.1%, 불편 51.9%
4	개선 필요성	필요 64.5%, 불필요 31.9%	필요 83.6%, 불필요 16.4%
5	인감사무 축소	필요 76.7%	필요 89.1%
6	인감도장 오용 가능성	높다 70.4%, 낮다 29.3%	높다 65.5%, 낮다 34.5%
7	인감제도 문제점	인감 오사용, 위조사고 65.6% 인감 분실, 도난 42.8% 과다한 인감증명 요구 42.1%	인감 오사용, 위조사고 72.7% 과다한 인감증명 요구 49.1% 인감 분실, 도난 18.2%
8	대체수단	신분증 확인 70.9% 법무사 등 확인 13.1% 공증인 확인 12.3%	법무사 등 확인 47.3% 신분증 확인 32.7% 공증인 확인 14.5%
9	주민증에 서명 기재 활용	찬성 67.8%	찬성 61.8%
10	새로운 제도 우선 요소	당사자 확인의 정확성 70.2% 이용의 편리성 23.4%	당사자 확인의 정확성 90.9% 이용의 편리성 7.3%

5. 외국의 인감제도 운영 사례

□ 외국의 인감제도 운영실태

- 일본 및 대만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인감증명제도를 두고 있는 반면, 유럽 및 미국은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공증제 운영

□ 우리나라, 일본 및 대만의 인감증명제도

- 우리나라 : 간접증명방식, 컴퓨터 출력
 - '03.3.26부터 컴퓨터로 출력·발급하는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
 - 특수용지 사용관계로 인감도장은 흑백으로 출력
 - 이전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도장일치여부를 셀로판 종이를 이용, 육안으로 대조하여 수기발급하는 직접증명방식 운영
- 일 본 : 간접증명방식, 대리등록신고시 본인의사여부 문서확인
 - 인감 신고는 본인이 시정촌을 방문하여 인감을 등록하며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된 자를 요건으로 등록하도록 규정
 - 대리신고도 허용하나 15일간의 기한으로 본인에게 문서로 조회, 본인의 인감 신고 의사를 문서로 회신받은 후 등록처리
 - 등록 후 배부되는 인감등록증(카드)에 의해 출원자 신분 확인, 본인·대리인 구분없이 컴퓨터로 출력·발급하는 간접증명방식
 - 발급된 인감등록증(카드)에 의해 “자동교부기”에서 인감증명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암증번호(칩에 내장)를 부착하여 교부
 - 부동산 등에 인감증명이 요구되나, 인감증명 신뢰도는 우리보다 낮음
- 대 만 : 직접증명방식, 인감등기 관리업무는 법원소관(호적법)
 - 직접증명 방식으로 컴퓨터로 출력된 일정 서식에 인감 날인 후 제출하면 등기를 한 인감과의 일치여부를 육안으로 대조하여 발급
 - 사고 부담, 전산화 이행 어려움 등으로 '03. 제도폐지를 시도하였으나,
 - 국민의 불편함 호소, 등기사무소 등의 거부로 직접 증명 방식 고수

- 호적법에 의해 인감등기를 관리하며 인감제도 운영기관은 호적사무소로 우리의 읍·면에 해당되며 총괄기관은 내정부임

6. 해외의 서명사용 사례

- 인감을 사용하는 국가는 일본, 대만, 우리나라밖에 없음.
 - ※ 중국도 공증제도 활용
- 미국, 캐나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개인서명을 신분증에 등재하여 활용
- 당사자들이 계약 등 거래과정에서 신분증 상의 서명을 본인 확인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
- 서명에 대한 인증이 요구되는 거래시에는 공증인과 대면하여 공증 실시


<외국사례 (신분증 서명)>



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례

<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매도용도 >

① 소유권 이전(매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시행령(별지 제 2호서식)
*이 용지는 취소·변경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51231-1234567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도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불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거래상대방 (매수자)	성명(법인명) 나명리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890105-2222222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194. (대흥동)		
그 외의 용도	빈 칸			
위임받은 사람	성명	빈 칸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빈 칸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홍길동 (서명)				
비고				
발급번호	No. 00000036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0000년 0월 0일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거래상대방
(매수자)
전산입력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서명은 작성자 그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 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세기구와」와 「직접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공사, 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유취득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중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른 위임받은 사람의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 법무사)
-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210mm × 297mm(특수용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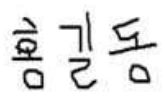
② 소유권 이전(증여)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 2호서식]

문서확인번호 : 4975-7053-0278-5720 *이 용지는 워드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주민등록번호	851231-1234567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도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액도용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불린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거래상대방 (매수자)	성명(법인명) 나예리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890106-2222222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184. (대흥동)	
그 외의 용도	빈 칸		
위임받은 사람	성명	빈 칸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빈 칸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홍길동 (서명)			
비고			
발급번호	No. 00000036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0000년 0월 0일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거래상대방
(매수자)
전산입력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그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액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 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일러하고, 신청인은 진상 일러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솔러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액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위탁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대술보정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6.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른 위임받은 사람의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번호를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워드·번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80g/㎡)

③ 소유권 이전(협의분할 상속)

Korea e-Government e-Service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원본 인증서 발행[별지 제 2호서식]
 문서확인번호 : 4975-7053-0278-572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51231-1234567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거래상대방 (대수자) 성명(법인명) : 나애리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800106-222222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194, (대흥동)	
	그 외의 용도		
위임받은 사람	성명	빈 칸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빈 칸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비고	발급 신청자 홍길동 (서명)		
발급번호	No. 00000036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0000년 0월 0일			

○○○시도 ○○시·군·구 ○○읍·면·동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그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상의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통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예드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한다] 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자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예드용도의 거래상대방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제기구와'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기업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법인명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대수자의 성명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일용, 보관금 수일용 등).
6.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른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법원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한정행위권인의 표시와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행위권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80g/㎡)

③-2 협의분할 상속(별지) - 거래상대방 등 추가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거래상대방 등 사항

공동상속인을
전산입력

1	성명(법인명)	홍길상	주민등록번호	831201-1111111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175번길, (대흥동)		
2	성명(법인명)	홍길오	주민등록번호	760630-1111111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월평동)		
이 하 여 배				

[다음장없음]

④ 신탁등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 2호서식]
*이 용지는 라오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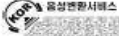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홍길동
주민등록 번호	851231-1234567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거대상대방 (매수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890105-2222222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194. (대흥동)
	그 외의 용도	빈 칸	
위임받은 사람	성명 빈 칸 주소(자격증 소지가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빈 칸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비고	발급 신청자 홍길동 (서명)		
발급번호	No. 00000036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0000년 0월 0일			
○○○시도 ○○시·군·구 ○○읍·면·동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서명은 작성자 그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대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 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대상대방란은 거대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세기구와"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공사, 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대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도관금 수령용 등).
-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행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른 위임받은 사람의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번호를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법무사)
-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제한후견인의 표시와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50g/㎡)

⑤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 2호서식]

본서확인번호 : 4975-7053-0278-572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51231-1234567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도	부동산 관련용도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자동차 매도용도	증명(법인명) : <input type="checkbox"/> 은행 거래상대방 (매수자) : _____ 주소 : _____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그 외의 용도	빈 칸		
위임받은 사람	성명	빈 칸	
	주소 (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빈 칸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홍길동 (서명)			
비고			
발급번호	No. 00000036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0000년 0월 0일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서명은 작성자 본인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란 미주민등록 지체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 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제기구'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atch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판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른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법무사)
-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80g/㎡)


거래상대방
(매수자)
전산입력

※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번호·법인주소 생략 가능

⑥ 전세권 설정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록 증명 방법 시행령[별지 제 2호서식]

문서확인번호 : 4975-7053-0278-572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공인인증서서비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홍길동
주민등록 번호	851231-1234567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도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이전 (매매, 증여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한불린 설정 (근저당권 설정, 경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거대상대방 (매수자) 성명(법인명) / 나열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194. (대흥동)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800105-2222222
	그 외의 용도	빈 칸	
위임받은 사람	성명	빈 칸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빈 칸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비고	발급 신청자 홍길동 (서명)		
발급번호	No. 00000036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0000년 0월 0일	
○○○시도 ○○시·군·구 ○○읍·면·동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을
전산 입력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그외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부상(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 이주민등록 제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등록표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종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대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함]이다 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대상대방은 거대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험회복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대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6.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필한 후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른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쳐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50g/㎡)

⑦ 가등기 설정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시행령[별지 제 2호서식] *이 용지는 워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문서확인번호 : 4976-7053-0278-572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홍길동
주민등록 번호	851231-1234567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도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관련용도 <input type="checkbox"/> 제한불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거래상대방 (매수자)	성명(법인명) 후린상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방로 168, (대방동)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780101-1234567
그 외의 용도	빈란		
위임받은 사람	성명	빈란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빈란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비고	발급 신청자 홍길동 (서명)		
발급번호	No. 00000036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0000년 0월 0일			
○○○시도 ○○○시·군·구 ○○○읍·면·동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서명은 작성자 그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상의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취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예드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 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솔러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예드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회기구와」와 「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대출보증용, 선반증기용(매수인의 성명등), 법인증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른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법무사)
-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취소·보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80g/㎡)

⑧ 가등기 말소

TOP  음성변환서비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권한 범위 시행령[별지 제 2호서시]
 문서확인번호 : 4975-7053-0278-572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홍길동
주민등록 번호	851231-1234567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도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유권 설정 (근거당연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예도용도	거래상대방 (매수자)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160, (대흥동)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780101-1234567
	그 외의 용도	빈 칸	
위임받은 사람	성명 빈 칸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빈 칸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홍길동 (서명)			
비고			
발급번호	No. 00000036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0000년 0월 0일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가등기가 경로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
 자를 전산입력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1. 서명본 작성자 그외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리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예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함]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예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회기구와"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공사, 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atch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대출보증용, 선박등록용(매수인의 성명등), 법인등록기용, 공판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6.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공란은 미신청자 또는 피신청후견인의 표시와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80g/m²)

⑨ 자동차 이전등록 : 거래상대방(매수자) 기재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받은 명을 시정명[별지 제 2호서식]

문서확인번호 : 4975-7053-0278-572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홍길동
주민등록 번호	851231-1234567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도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이전 (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거래상대방 (매수자)	성명(법인명) 나열리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184. (대흥동)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800105-2222222
	그 외의 용도 민란		
위임받은 사람	성명 민란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민란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홍길동 (서명)			
비고			
발급번호	No. 00000036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0000년 0월 0일			
○○○시도 ○○시·군·구 ○○읍·면·동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서명은 작성자 그외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증부상(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란은 이주민등록 재취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증 할 취득국직통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와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래상대방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회기구와 와'체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법」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만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대출보증,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른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 법무사)
-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쳐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정후견인의 표시와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80g/㎡)

< 그 외의 용도 > (그 외의 용도란에 사용 용도를 자세하게 기재)

⑩ 상속 포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시행령[별가 제 2호제4기]

문서확인번호 : 4975-7053-0278-572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 吉 東)		서명	홍길동	
주민등록 번호	851231-1234567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도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 (근거당런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무)
	거래상대방 (매수자)	빈란		주소	빈란
	그 외의 용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정(지방)법원 상속개산포기 심판정구용			
위임받은 사람	성명	빈란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빈란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홍길동 (서명)					
비고					
발급번호	No. 00000036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0000년 0월 0일					
○○○시도 ○○시·군·구 ○○읍·면·동					

각설 방법 및 유의사항

- 서명은 작성자 그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 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임하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유취득의 실행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란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른 위임받은 사람의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 법무사)
-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미신청자 또는 피신청수권인의 표시와 발청대리의 또는 한정수권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50g/㎡)

① 자동차 저장권 설정 또는 해지


 음성변환서비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권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 2호서식]
 문서확인번호 : 4975-7053-0278-572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51231-1234567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도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관련용도 <input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거래 상대방 (매수자) 성명(법인명) : 빈란 주민등록번호(별) : 빈란 주소 : 빈란	그 외의 용도 전산입력	
그 외의 용도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 캐피탈)		
위임받은 사람	성명 : 빈란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 빈란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비고	발급 신청자 홍길동 (서명)		
발급번호	No. 00000036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0000년 0월 0일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그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제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를 한 외국국민등록번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예대용도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와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예대용도의 거래 상대방란은 거래 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6.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른 위임받은 사람의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영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발급은 미성년자 또는 제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80g/㎡)

⑫ 자동차 신규 구매(할부)

음성변환서비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권한 범위 시행령[별지 제 2호서기]
 문서확인번호 : 4975-7053-0278-572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홍길동
주민등록 번호	851231-1234567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도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불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거래상대방 (매수자)	성명(법인명) <input type="text" value="빈란"/> 주민등록번호(법 인번호) <input type="text" value="빈란"/> 주소 <input type="text" value="빈란"/>
	그 외의 용도	자동차 신규등록 및 근저당권 설정 (○○ 캐피탈)	
위임받은 사람	성명 <input type="text" value="빈란"/>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input type="text" value="빈란"/>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비고	발급 신청자 홍길동 (서명)		
발급번호	No. 00000036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0000년 0월 0일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서명은 작성자 그외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상의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자취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용도란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 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주소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와 실체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대출보증용, 선불등기용(매수인의 성명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 위임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필한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른 위임받은 사람의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령을 기재하며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법무사)
-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취소·변조하는 경우에는 「행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800원을 받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80g/㎡)

⑬ 공탁금 출금 청구


 유성관서서비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번호 범위 사용명(별지 제 2호서식)
 문서확인번호 : 4975-7053-0278-572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홍길동	
주민등록 번호	851231-1234567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도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	
		거래상대방 (매수자)	주소	민 탄
	그 외의 용도	○○ 지방법원 0000년 금 1234호 공탁금 출금 청구		
위임받은 사람	성명	민 탄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민 탄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홍길동 (서명)	
비고				
발급번호	No. 00000036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0000년 0월 0일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서명은 작성자 본인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표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를 한 재외국민등록표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 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세기구」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취급처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사마출급규정」에 따른 사마출급(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른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 법무사]
-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50g/㎡)

⑭ 영업권 양도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 2호서식)

문서확인번호 : 4975-7053-0278-5720 *이 용지는 워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51231-1234567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도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거래상대방 (매수자) <input type="text" value="빈란"/>	주민등록번호(별) <input type="text" value="빈란"/>
	그 외의 용도	본인물산 영업권 양도	
	위임받은 사람	성명 <input type="text" value="빈란"/> 주소(자격증 소지가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란 작성) <input type="text" value="빈란"/>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홍길동 (서명)			
비고			
발급번호	No. 00000036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0000년 0월 0일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서명은 작성자 그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리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 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진한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회기구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유취침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란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대출보증용, 선반등기용(매수인의 성명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필한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른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법무사)
-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워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국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5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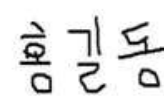
⑮ 보험금 청구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 2호서식]

문서확인번호 : 4975-7053-0278-572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주민등록 번호	851231-1234567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도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대도용도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결번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거래상대방 (매수자)	성명(법인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년) 주소
	그 외의 용도	[빈란] [빈란] [빈란] [빈란] [빈란] [빈란]	
위임받은 사람	성명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빈란] [빈란] [빈란] [빈란]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홍길동 (서명)			
비고			
발급번호	No. 00000036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0000년 0월 0일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서명은 작성자 그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대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함] 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대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회기구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자의 성명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른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번호를 기재하며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 법무사)
-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80g/㎡)

⑩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시행령(별지 제 2호서위)

문서확인번호 : 4975-7053-0278-572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51231-1234567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도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불린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그 외의 용도	증명(별인명) 주민등록번호(별인명) 거래상대방 (매수자) 주소	빈 칸 빈 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그 외의 용도 전산입력
	위임받은 사람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빈 칸 빈 칸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비고	발급 신청자 홍길동 (서명)			
발급번호	No. 00000036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0000년 0월 0일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서명은 작성자 그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성의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별인명), 주민등록번호(별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 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솔러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회'나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법」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제 1호부터 제 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대출보증용, 선박등록용(매수인의 성명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른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령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 법무사)
-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미신청자 또는 피신청추천인의 표시와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추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80g/㎡)

⑰ 아파트 분양권 매도 시(등기소 제출 안함)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시행령(별지 제 2호서식)

문서확인번호 : 4975-7053-0278-572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51231-1234567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도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거래상대방 (매수자) 성명(법인명) <input type="text" value="빈란"/> 주민등록번호(법 인번호) <input type="text" value="빈란"/> 주소 <input type="text" value="빈란"/>	그 외의 용도 전산입력
	그 외의 용도	본인서명 아파트 분양권 매도	
위임받은 사람	성명 <input type="text" value="빈란"/>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input type="text" value="빈란"/>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비고	발급 신청자 홍길동 (서명)		
발급번호	No. 00000036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0000년 0월 0일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서명은 작성자 그주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자취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한·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용도란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 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른 위임받은 사람의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 법무사)
-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취소·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50g/㎡)

⑱ 부동산 매수 (등기소 제출 안함)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시행령(별지 제 2호서식)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문서확인번호 : 4975-7053-0278-572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51231-1234567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도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그 외의 용도	거래상대방 (매수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무) 빈 칸 빈 칸 주소 빈 칸
	부동산 매수용		
위임받은 사람	성명 빈 칸 주소(자격증 소지가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빈 칸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비고	발급 신청자 홍길동 (서명)		
발급번호	No. 00000036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0000년 0월 0일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서명은 작성자 그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 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일괄하고, 신청인은 진상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솔러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회기구와」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공취급회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란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대출보증용, 선박등록(매수인의 성명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른 위임받은 사람의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번호를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 법무사)
-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50g/㎡)

①9 혼인신고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권한 법률 시행령(별가 제 2호까지)
 문서확인번호 : 4975-7053-0278-572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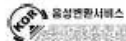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주민등록 번호	851231-1234567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도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대도용도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 (대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그 외의 용도 전산입력
	거대상대방 (대수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무)	
		주소	빈 칸	
그 외의 용도	혼인신고			
위임받은 사람	성명	이준향		
	주소(자격중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비고	발급 신청자 홍길동 (서명)			
발급번호	No. 00000036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0000년 0월 0일				
○○○시도 ○○시·군·구 ○○읍·면·동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서명은 작성자 그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표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대도용도의 경우 거대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 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솔러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대도용도의 거대상대방은 거대상대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회기구"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atch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대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대출보증용, 신발등록용(대수자의 성명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른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중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자격중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되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법무사]
-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50g/㎡)

㉔ 미성년자 여권발급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록 관련 법률 시행령(별지 제 2호서식)
 문서확인번호 : 4975-7053-0278-5720 *이 용지는 워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홍길동 (洪吉東)	서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51231-1234567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도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input type="checkbox"/> 제한불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용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거래상대방 (매수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원)
	주소	빈란	빈란
그 외의 용도	미성년자 여권발급		
위임받은 사람	성명 이준향 주소(자격중 소지가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비고	발급 신청자 홍길동 (서명)		
발급번호	No. 00000036	수수료	300 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0000년 0월 0일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서명은 작성자 그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 상의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예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 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솔러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예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이 "국기"나 "지방자치단체", "국회기구"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거래상대방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외의 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 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예시: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른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중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자격중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 법무사]
-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취소·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

210mm × 297mm(복수용지 50g/㎡)



인감증명 사무편람



I. 일반사항

1. 인감증명제도
2. 주요연혁

I

일반사항

1. 인감증명제도

가. 개요

- 인감증명제도는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감 신고인의 일종의 보증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로써 공증서에 의하지 않고도 공증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각종 활동에 편리하고 폭 넓게 이용되어 경제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2003.3.26.인감전산망에 의한 온라인 발급으로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인감증명제도는 더욱 편리해졌다.
- 그러나 거래상대방의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와 인감증명서의 부정 발급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해지자, 인감증명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으며, 논의 끝에 2012.12. 1.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나. 기능(대판 2006다63273)

(1) 인감 자체의 동일성 증명

- 인감 신고인의 신고된 도장을 증명한다. 증명청은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신고인의 명의를 적합한지 인감도장을 철저히 확인한다. 간접증명방식을 택함으로써 인감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수요기관이 판단한다.

(2)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증명

- 거래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증명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신분을 증명한다.

(3)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

- 인감증명을 통해 확인된 인감도장을 날인한 거래행위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근거한 행위임을 증명함으로써 제3자의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2018. 7. 1. 이후 피성년후견제도) 및 미성년자의 인감 증명에 대하여 법률로 제한하고 있으며 담당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확인한다.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신적인 이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는 피성년후견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다.

2. 주요연혁

가. 인감증명법

구 분	내 용
제 정 (‘61.9.23.)	
1차 개정 (‘62.12.12.)	○ 인감신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인감신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감의 직권발 소 범위를 확대하여 부정인감의 사용을 방지(사망·실종신고, 개인요구 불응시) ○ 시장·구청장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
2차 개정 (‘77.12.31.)	○ 인감대장을 개인별주민등록표와 통합 관리(‘78. 9. 1 시행, 1차 경신)
3차 개정 (‘91.1.14.)	○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으로 인감대장을 주민등록과 분리 (2차 경신, 현행 인감대 장 도입)


구 분	내 용
6차 개정 (’96.12.30.)	○ 인감의 대리 신고시 보증인의 거주범위 전국 확대 ○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도 인감 신고 가능
7차 개정 (’97.12.17.)	○ 주민카드제도 도입을 위하여 인감을 주민카드(주민등록증)에 수록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에 관한 사무를 수행 ○ 주민등록 말소 및 재등록시 신고된 인감도 말소 또는 재신고한 것으로 봄 (’98.4.1.시행)
8차 개정 (’99.1.21.)	○ 인감대리 신고시 보증인을 2인 이상에서 1인으로 함
9차 개정 (’99.5.24.)	○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규정에 의한 인감의 주민카드 수록 폐지
10차 개정 (’02.3.25)	○ 전국의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을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와 제출 서류 규정
11차 개정 (’04.10.16)	○ 인감증명 발급을 시·군·구청에서도 발급하고,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 ○ 인감을 신고한 자가 국외이주 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에, 현지이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으로 신분을 정리한 날에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 ○ 말소신고된 인감을 본인이 부활신청 하는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13차 개정 (’07.5.17.)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3조제2항 등의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개정함
16차 개정 (’12.3.21.)	○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 대리인이 무인을 제출하도록 근거 마련함(의원입법)
17차 개정 (’15.1.22.)	○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하게 되고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인감신고 절차를 정비하고 본인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
18차 개정 (’16. 1. 6.)	○ 성년후견에 관한 사항 반영 ○ 인감보호제도 및 열람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구 분	내 용
제정 (’62.6.12.)	
3차 개정 (’69.6.16.)	○ 인감신고 시 구두신고제 채택, 증명의 유효기간 단축 (6월 → 3월)
6차 개정 (’78.4.6.)	○ 인감업무와 관련된 신고·신청서의 성명은 호적 또는 주민등록상의 성명에 의하도록 함 ○ 서식을 정비하고 증명의 “사용용도” 란을 신설
7차 개정 (’79.2.1.)	○ 증명의 유효기간을 변경(3월 → 부동산매도용 1월, 기타 3월)
8차 개정 (’82.5.29.)	○ 인감증명 발급 시 수령자의 무인을 받도록 함 ○ 재외국민 및 국외이주신고자가 부동산매도 시 관할 세무서장 경우
9차 개정 (’83. 4.25.)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신청 시 매수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10차 개정 (’85.6.29.)	○ 인감증명 발급시 날인절차를 개선(무인 → 본인은 인감 날인, 대리인은 무인 날인)
13차 개정 (’91.4.16.)	○ 개인별주민등록표에서 인감이 분리됨에 따라 인감대장의 서식을 새로 정함 ○ 인장 크기의 최저한도를 정하고(가로·세로 7mm이상), 인감대장에 사진을 붙일 수 있도록 함
15차 개정 (’93.12.28.)	○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으로 인감신고 및 증명서 발급 ○ 국외이주신고를 한 때에는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으로 관리 ○ 인감의 서면신고시 보증인의 거주범위를 동의 경우 동일 시·구까지 확대 ○ 증명신청시 재외국민에 한하여 재외공관 확인을 받도록 함 ○ 부동산매도용을 제외하고 증명의 용도지정 제도를 폐지 ○ 증명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유효기간을 6월로 확대 ○ 인감의 신고 및 증명서 발급시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가에 대한 확인규정 삭제
16차 개정 (’97.4.12.)	○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인감신고 방법과 인감증명 신청절차 신설 ○ 인감색인대장, 인감대장수령부 및 인감대장이송부를 인감관리대장으로 통합 ○ 대리료 인감변경 신고할 경우에 증명발급 유예기간 5일 폐지 ○ 증명발급 시 수령인 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을 받도록 함
17차 개정 (’99.3.12.)	○ 인장은 원형·타원형 또는 4각형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 폐지

구 분	내 용
18차 개정 (’02.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대장(5호) 신설 ○ 전국의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 인장의 규격을 가로·세로 각각 7mm이상 30mm이내로 조정 ○ 서면신고 시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주소변경(전입) 신고 시 인감관련서류가 도착되어야 발급이 가능하던 사항을 전산 처리와 동시에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 인감증명 관련 수수료(자동발급 → 통당 500원, 타동발급 → 통당 800원, 인감 변경신고 → 회당 500원)규정 ○ 인감신고·증명발급 시 제출하는 신분증에 장애인등록증 추가 ○ 재외국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시 소관 증명청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확인을 선택 ○ 사망한 경우 외에는 말소된 인감 부활신고 시 최초 작성한 인감대장 계속 사용 ○ 인감관련 서류의 열람에 관한 구체적 절차 마련 ○ 복사방지를 위하여 인감증명서 용지를 특수용지로 사용 ○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제도(보험, 공제 등) 도입
19차 개정 (’03.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해제)신청을 하는 경우 전국 읍·면·동사무소 접수 처리 ○ 재외국민, 해외체류자가 인감의 보호(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신청 가능 ○ 인감을 신고(변경)하거나 증명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은 서명 또는 무인 을, 대리인의 경우에는 무인으로 확인 ○ 대리발급 시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시하지 않을 경우 발급 거부
20차 개정 (’05. 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 중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 등록 증은 제외 ○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인감보호(해제)신청을 전국 시·군·구청에서도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한 증명청은 그 사실에 대하여 우편, 휴대폰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하여 줄 수 있도록 함 ○ 인감 수수료 전국 통일
21차 개정 (’07.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관련사항 정비 ○ 인감대장 및 관련공부의 이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시·군·자치구 관내의 인감대 장 및 관련공부에 대한 이송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하 도록 함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보호 및 해제신청을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외에 복역자도 가능하도록 하고, 인감보호 및 해제신청에 대한 인감대장의 신고사항 기록을 인감대장 관리 증명청으로 일원화
<p>29차 개정 (’13.4.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발급시 국내거소신고증만 확인(여권확인 은 폐지) ○ 인감보호신청자의 의식불명시 금치산선고를 받아 법정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인감신고인의 유고시 법정대리인 또는 상속인 열람 허용 ○ 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위임장에 날인 외에 서명 허용 ○ 재난지역, 특수임무유공자, 한부모가족을 수수료 면제자로 추가 ○ 민원 편의 등을 위한 서식 개선(6건), 대리발급사실에 대한 SMS 문자통보 신청서, 인감대장이송 서식 등 신설(2건)
<p>30차 개정 (’15.1.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도 주민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하여 일부 서식에 대하여 영문 및 중문의 서식을 병용함
<p>31차 개정 (’16. 1.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통보 ○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열람 가능 ○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자의 인감보호 해제 신청 방법 신설 ○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보존기간 상향 조정 ○ 인감자료 열람 시 확인서, 사본 제공 ○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시 수기 발급대장 작성 생략 가능 ○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매수자 인적사항을 담당공무원이 입력하고 민원인은 확인서명만 하도록 함 ○ 개명 등으로 신고된 인감이 주민등록표 등의 성명과 다른 경우 인감의 재신고 규정 ○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사무를 동주민센터로 이관(4.12.)
<p>32차 개정 (’16. 7.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인감 신고 및 발급 신청 ○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 외에는 스스로 인감업무를 처리 ○ 인감신청시 본인확인을 무인 외에 다른 손가락의 지문(十指)으로도 확인 가능하도록 함 ○ 수감자의 경우 수감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 신분증 제출 의무 면제 ○ 외국인이 입증서류 제출 시 외국인등록표나 국내거소신고원부에 기재되지 않는 한자 성명으로 인감신고 가능하도록 함



Ⅱ. 신고, 변경, 말소, 부활

1. 신고
2. 변경
3. 말소
4. 부활

II

신고, 변경, 말소, 부활

1 신고

1. 증명청 방문

-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이 신고되어야 한다. 현행 인감증명 체계에서는 증명청과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구분하여 신고, 변경, 말소, 부활과 같은 업무는 반드시 증명청이 수행하도록 하고, 대신 발급업무는 전국 어느 시 군구 및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문서감정 기술상 인감사고 시 인감대장의 감정은 종이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있어야만 하므로 인감대장의 관리책임을 위해 인감의 증명청이 필요하다.
 - ※ 행정자치부는 인감사고 시 인감 도장의 감정을 위하여 수기 인감대장을 폐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인감의 신고가 가능한 방법을 검토중에 있다.

2. 사무 관장기관(법 제2조, 영 제18조의2)

시행령 개정(2016.1.12.) 사항

-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증명청
-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 동에서는 처리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이들의 인감업무 편의를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이관하도록 하였다. 그간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사항은 물론 기본정보를 외국인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동주민센터에서 하지 않아 위임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법무부와의 업무협의로 FINE시스템으로 가능해져 개정되었다.

가. 증명청

- 주소지(주민등록하지 않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또는 최종주소지, 외국인인 경우에는 체류지, 거소자인 경우 거소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증명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인감사무를 처리하며 이를 수입증명청이라 한다.(법 제14조의2, 영 제18조의2)
 -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사무를 위임받아 인감사무를 관장한다.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신고 및 변경업무는 시·구·읍·면에 서만 가능하였으나, 시행령을 개정하여 동주민센터가 있는 경우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하였다.(2016.4.12. 시행)

나. 인감증명서발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등 인감증명서의 발급업무를 한다.

3. 신분확인

가. 신분증

시행령 개정(2016.1.12.) 사항

-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신분확인
 -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제작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통해서 신분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FINE시스템과 대조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 반드시 본인이 방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인감대장과 인감도장을 직접 대조 확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과거 직접증명 방식과 달리 간접증명방식을 택하고 있는 현 제도 하의 인감증명업무에서는 신분확인을 통해 인감증명 업무(신고, 발급 등)를 처리하므로 신분증 확인은 엄격히 한다.
- 그러므로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신분증에 의거하여 신분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 방법으로도 본인 확인이 불명확한 경우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인의 지문을 확인한다. 신분 확인 시 신분증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조적인 방법으로 지문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지문 날인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신분증을 제출받으면 인감전산시스템 또는 해당 신분증의 발급사실 확인시스템에서 발급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재외공관이나 수감기관의 확인을 거친 경우에는 재외공관이나 수감기관에서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므로 인감담당자는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재외공관은 인감증명법령에 따른 신분증임을 확인해야 한다.

나. 신분증의 종류

(1)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에서 확인 또는 인감전산(주민등록 시군구 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여 신분증과 대조한다.
- 1999.7.1.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2000.6.1.부터 사용할 수 없으므로(법률 제5987호, 1999.5.24.시행,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제2항) 舊주민등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분실 또는 재발급 처리된 주민등록증(발급일자 확인)은 회수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 제3호)
- 단, 임시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사진을 부착한 점과 주민등록전산 정보를 통해서 직접 대조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정한다.

(2) 자동차 운전면허증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제80조의 제1종, 제2종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제2종)도 포함된다.
-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운전면허증(1종)은 적성검사기간 종료 후 1년까지 유효하며, 갱신기간이 표시된 운전면허증(2종)은 갱신기간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 적성검사기간 종료 후 1년까지 유효하나 운전면허증이 재발급된 경우는 舊 운전면허증은 무효이므로 반드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인감전산시스템 내에서 본인 확인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조회' 버튼을 이용한다.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면 운전면허정보조회/면허증진위여부조회를 클릭하여 새창이 나타나면 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번호-암호일련번호를 입력하여 진위를 확인한다.
- 인감전산시스템은 본인서명사실확인시스템처럼 바로 진위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2017.2월 중순에 시행되도록 경찰청과 협의하였다.
- 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자의 운전면허증은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체류기간, 체류지 등이 불분명한 경우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하고 있으므로 인감증명 사무에서 신분증으로 볼 수 없다.
-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의 운전면허증(주민등록번호 기재)은 인정한다.

(3) 장애인등록증

- 복지카드로도 가능하다. 단,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 보건복지부 행복 e음 시스템과 연계를 추진중이다.

(4) 대한민국 여권

- 기간만료일이 지난 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2015년 인감전산시스템은 외교부 여권정보조회시스템과 연계하였으므로 본인 확인창에서 ‘여권번호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한다.

(5) 외국인등록증

- 체류기한이 경과한 외국인등록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2015년 법무부와 의 협의로 동주민센터에서도 외국인정보이용시스템(FINE 시스템) 활용이 가능해졌다.
※ 증확인 : www.hikorea.go.kr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왼쪽 메뉴 ‘유효확인조회’
- 본인방문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인정한다.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는 외국인등록증을 분실재발급 신청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인정한 경우이므로 인감증명 발급시 외국인등록증을 우선 확인하여야 한다.

(6)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체류기한이 경과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 본인방문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인정한다.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다. 허용하지 않는 신분증

-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신분증은 인감증명업무에서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증, 공무원증,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없고 진위여부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 사례 : 지문, 신분증 사본, 스마트폰의 사진, 화상통화 등을 신분증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

4. 인 장

시행령 개정(2016.7.5.) 사항

- 외국인의 인감 신고시 한자 명의 확대
 -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외국국적동포)가 아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한자 성명으로 인감 신고 및 신청 가능
 -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한자 성명이 기재된 외국 여권
 - 그 밖에 본인의 한자 성명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예 : 중국 및 대만 등 아시아권의 호구부 등)

가. 규정

(1) 근거

-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을 정할 수 있다.

(2) 규격 등

-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 동판·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이어서는 안된다.
- 마멸 또는 훼손되지 않은 것어야 한다.
- 인쇄 활자처럼 삽입·탈착되는 도장은 안된다.

나. 유의사항

- 인감증명은 수요기관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비교함으로써 동일인임과 동일인의 도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인의 도장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도장을 신고한 경우, 인감 신고인 본인이 본인임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 그러므로 인영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명의에 의하여야 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성명 외에 문자나 부호, 그림 등의 표현을 수리할 수 없으며 다만, 성명의 인식을 훼손하지 않는 테두리와 관행적으로 사용하여 온 글자인 “印·章·信”도 허용한다.
- 순한글로 된 이름은 임의의 한자로 새길 수 없다.
예) 韓강수(한강수) : 韓강수(○), 한강수(○), 韓江水(×)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이름에 의하면 되므로 한자와 한글을 섞어 새기더라도 무관하다.
예) 홍길동(洪吉東) : 홍길동(○), 洪吉東(○), 洪길東(○)
- 주민등록한 국민의 성명이 길어서 도장규격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축약할 수 있다. 성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이름은 신고인이 선택하도록 한다.
예) 박하늘별님구름햇님보다사랑스러우리(박보리)

(3) 인영의 명의

(가) 개요

- 인감증명법 제3조제6항에서 ‘인감신고인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하고, 동법 제5조에 따라 ‘그 인감은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또한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청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동법 제14조에서 ‘변경신고’와 ‘증명’의 경우에 ‘제3조, 제5조~제7조, 제12조(발급)을 준용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성명과 다른 인감으로 인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발급도 안된다.

(나) 내국인 및 주민등록 재외국민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 한자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표와 성명이 다르므로 수리가 불가하다.
- 전서체, 약자, 간자라 하더라도 민원인이 동일한 글자임을 입증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알 수 있는 경우 수리한다.
- 제작을 양각으로 하든, 음각으로 하든 관계없다.

(다)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대한민국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 한자가 다른 경우 수리가 불가하다.
- 전서체, 약자, 간자라 하더라도 민원인이 동일한 글자임을 입증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알 수 있는 경우 수리한다.
- 제작을 양각으로 하든, 음각으로 하든 관계없다.

(라) 외국인 : 외국인등록표, 여권,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및 자국의 호구부 등에 기재된 성명(한자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성명에 의한 인장표기가 어려우므로 성은 전부 기재하고 이름은 두문자형 또는 원음을 한글표기하여 신고할 수 있다.

예) KEUMJU KIM → KJ KIM 또는 김금주

John Maynard Keynes → JM Keynes, John M Keynes,

제이 엠 케인즈, 존 엠 케인즈

※ 가족관계등록 시 한자를 원지음으로 읽어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조한다.

- 외국에서 한자를 쓰던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에 영어명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를 통해 한자 또는 그 한자의 원어 발음대로 한글표기를 알 수 있다면 수리한다.

예) ChungLoong → ChungLoong, 청룡(○) / 成龍(○), 성룡(×)

- (마) 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원부,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성명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로서 거소신고증에 외국어 성명과 국내에서 쓰던 성명이 표기되어 있다면 한글 성명의 도장이 인정된다.
예) Jessica Kim(김지수) → Jessica Kim(○), 제시카 김(○), 김지수(○)
 - 가족관계등록부나 다른 근거에 의한 성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고하고자 하는 성명으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신규 발급받도록 안내한다.

5. 신고의 종류

가. 신고방법에 따른 구분

(1) 본인신고

(가) 규정

- 법 제7조에 따라 본인이 방문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면신고를 제한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인감이 신고되거나 증명서가 발급될 경우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나) 신고방법

-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신고할 수 없다. 담당자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단은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 신고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방법으로 담당자가 본인의 의사를 판단할 수 있다면 무방하다. 의사능력은 개별적인 기준에 맞게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 신고인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장을 제출한다.
- 본인이 방문한 경우 별도의 신청서 없이 구술 및 신분증을 확인하여 등록한다.

- 신분증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본인의 무인(십지문 포함)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 신고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여권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일 경우 주민등록신고를 하도록 안내한다)
- 인감대장에 신고인의 무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 후견대상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2) 서면신고

(가) 규정

- 서면신고할 수 있는 사유는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법 제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

(나) 신고방법

- 신고서(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 및 입증서류(원본)를 제시한다.
- 서면신고는 담당자가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므로 입증서류가 위조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의사표현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인감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질병일 경우 입증서류에 반드시 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 1인의 보증이 필요하고 보증인의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며, 보증인의 인영을 인감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한다. 시행령에 성년 1인이라고 하였으므로 보증인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인감이 신고되었다면 가능하다.

- 보증인의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신분증은 지참하지 않아도 되며, 보증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 보증인과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리인은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
- 서면신고서 인감지 란에 신고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대장에 첨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감지에 날인하여 첨부한다.
-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은 직인으로 간인하고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서면신고”라고 기재하고 대리신고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입증서류

1) 질병·출산

-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것은 서면신고의 사유가 되지 못하며 거동불능 상태가 아니면 서면신고할 수 없으며, 입원확인서(수용사실확인서) 및 의사진단서(소견서도 무방)가 필요하다.
- 진단서에는 ①시설 밖으로 거동해서는 안된다는 확인과 ②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 뇌병변·지능·정신장애, 치매, 뇌졸중 등 이라고 하면 통상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므로 수리대상이 아니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자는 의사진단서를 제시하도록 하거나 담당자가 의사소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문을 요청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피성년후견제도 판결을 받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예외적으로 병원이나 요양시설 외의 일반 가정에서 방문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의사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통·리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확인서에는 진단서와 동일하게 ①,②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2) 징집

- 사병일 경우 현역복무확인서(훈련병일 경우 소속 부대마다 복무확인서에 준하는 서류 명칭이 다른데 논산훈련소의 경우 '입대명령'이라 한다. 반드시 본인 의사를 확인하여 인감서면신고용임을 알려주도록 안내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병무청의 병적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발급과정에 본인의사를 확인하지 않고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직업군인, 사관학교 재학생, 동원훈련 참가자는 징집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하지 않았으나 외출·외박이 어려운 훈련에 동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서면신고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①부대장 직인 날인된 확인서 제출, ②담당자가 반드시 부대로 전화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부대장 확인서에 기재할 사항: 외출·외박이 어려운 훈련에 동원되었다는 사실 기재, 담당장교 서명 또는 날인, 담당장교 부대 연락처)

3) 복역

- 기관의 직인이 찍힌 교도소 수감증명서로 증명하여야 하며, 수감된 상태를 말하므로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도 인정한다.

- 서면신고서 여백에 수감자 본인의 무인 날인 및 교도관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유학, 해외체류(거주)

- 서면신고서에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체류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경우도 인정한다.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신고(발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없다.

나. 신고대상에 따른 구분

(1) 내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외이주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는 경우(주민등록한 재외국민)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다.
-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소 관할 증명청에 신고한다.
- 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한다.

(2) 재외국민

(가) 용어의 정의

-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국민을 말한다.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재외국민의 종류

1)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 재외국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다만, 영주권이나 장기체류허가증이 있어 해외에 장기체류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국민과 다르다.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졌으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영주귀국을 하지 않는다면 내국인이 아니다.
-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2015.1.22.) 후 국외이주할 경우에는 행정상 관리주소에 주민등록 된다.
-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 전 국외이주하여 국내에 주소가 말소된 재외국민이나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 후 국외이주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에 등록된 재외국민은 입국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
- 주민등록 한 이후 출국신고를 하고 출국하게 되면 행정상 관리주소에 주민등록된다.

2)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 개정 주민등록법(2015.1.22.시행) 시행 전에 국외이주하여 재외국민이 된 사람이 주민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다.
-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증명청에 신고한다.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사람은 최종주소지 관할 증명청에 신고하고,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않거나 없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증명청에 신고한다.

(다) 신고방법

1)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에 인감을 신고한다.
-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운전면허증(주민등록번호 기재)으로 신분을 확인한다.

2)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 인감증명법 변경 전 재외국민 인감신고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신분확인용 거주여권을 제시하도록 하되, 거주여권없이 일반여권을 지참하였을 경우,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이나 해외/현지 이주확인서 첨부해야 한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의 서식으로 재외국민 인감신고사항이 통보(자동)되면 등록기준지는 재외국민인감신고기록대장(별지 제7호 서식)을 관리해야 한다.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이 이중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지에서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감신고기록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3) 외국인

(가) 개요

-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고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하여 체류지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나) 신고방법

-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여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 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된다.(복수국적자 아님) 즉, 국적상실 신고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가족관계서류가 정리되었느냐, 정리되지 않았느냐가 국적상실을 확정짓지 않는다(국적상실 신고는 창설적 신고가 아닌 보고적 신고)

⇒ 대한민국 국민이 시민권자가 되었을 경우, 가족관계서류가 정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인감업무 처리방식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상실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정리되지 않는 등의 일들은 인감업무와 관련이 없다.

※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외국인등록 면제자(A1~A3 비자보유)의 인감신고는 자진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신분확인 및 인감신고를 할 수 있다.
- 인감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내국인,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지참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감 신고를 하도록 하고, 기존의 인감은 직권말소하도록 한다.

(4)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가) 개요

- 재외동포법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말한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나) 신고방법

-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제출하여 신분을 확인한다. 단, 발급 시에는 여권확인을 하지 않는다.
- 담당자는 기존에 신고한 인감이 있는지 인감전산시스템의 **舊인감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한다.

다. 미성년자 등의 인감신고

(1) 미성년자

(가) 개요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민법 제4조) 미성년자일 경우 인감전산시스템에 표시된다.
- 미성년자의 인감신고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고,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한 명이 행사한다.

※ 유의할 것은 이혼한 가정에서 부모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2013. 6.30.까지는 생존한 부모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지정되었으나, 2013. 7. 1. 이후에 사망한 경우는 나머지 부모 중 한명이 자동으로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고 판결을 받아야만 친권을 갖게 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일 경우에도 친권은 동일하므로 부모 중 한명 사망으로 외국인만 남았을 때도 외국인이 친권자가 된다.

(나) 신고방법

-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할 수 없고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야 한다.
-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에도 미성년자를 동반하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이 방문한 경우 단독으로 신고한다.
- 법정대리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리권이 있으므로 위임장에 근거한 임의 대리와는 다르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위임에 따라 대리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위임장이 필요 없고, 위임자(미성년자)의 신분증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는 필요없다. 법정대리인의 신분확인을 철저히 한다.
- 미성년자 인감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의 사유로 인한 경우이다.
-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법정대리인 동의란에 법정대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고 이 사항에 대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후 임의의 대리인이 신고한다.

참고 ▶ 행위 무능력자 제도의 변경

시행령 개정(2016.7.5) 사항

-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관련사항 반영
 -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인감 신고 및 발급 신청
 -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사항 외에는 스스로 인감업무를 처리
 - 서식 개정(별지 제2호, 제9호, 9호의2, 제12호, 12호의2, 제13호, 13호의2, 13호의3, 제14호, 제15호의 3, 제15호의 4, 제15호의 5, 제15호의 6*)
 - * 서식 15호의 3~15호의 6은 시행령 개정으로 조문위치(종전 제7조의 2 → 제17조의 2)가 변경됨에 따라 서식번호도 변경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 ※ 기존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
 - 서식 삭제(별지 제8호)

1. 성년후견제도 도입

가. 금치산제도

-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라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가 폐지되었다. 개정 민법은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여 후견법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도 자기 의사와 의지에 따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경과조치

- 민법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제2조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기존 선고자에 대하여 그대로 인정된다.
- 기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선고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여 확인한다.

다. 신고주의 적용

-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을 선임받을 수 있다. 이때 후견인을 둔 사람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라 한다.

- 인감제도에서 피한정후견인은 한정치산자와 동일하게, 피성년후견인은 금치산자와 동일하게 본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 후 등본을 발급받으며, 판결 후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통보하는 제도도 폐지되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인감전산시스템과 성년후견정보시스템이 연계되어 민원인이 담당자에게 후견등기사항을 말하지 않아도 성년후견제도 대상자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단, 자세한 선고내용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 •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무인을 받음 • 서면신고시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방문 •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무인을 받음 • 서면신고 시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음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정치산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 금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 •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인감증명 발급 거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용도를 기재하도록 함 •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신청 •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의 동의없이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발급 거부함
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소시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소시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거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음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보호 및 보호해제 • 인감보호 신청 후 금치산신고 시 법정대리인이 보호 및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보호 신청하고, 해지 시에는 함께 방문하여 신청 •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보호 및 보호 해지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정대리인이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선고를 받은 경우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이 열람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 등록사무관장은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의 통보를 받은 경우 증명청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2013.7.1.)에 따라 통보를 하지 않고 등기

2. 성년후견제도 대상자의 인감신고

가. 공통사항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심판확정과 동시에 효력을 가지므로 판결문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2018. 7. 1. 이후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판결을 새로 받아야 하며, 그 때까지 새로 판결을 받지 않을 경우 기존에 받은 금치산, 한정치산의 효력은 상실한다.
 - ※ 기존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선고된 사람은 2018.6.30.까지는 2015 인감증명업무편람대로 처리하면 된다.
-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을 입력하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확인하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복사하여 제출자의 우무인을 날인하고 관리한다.
- 인감대장(수기, 전산)에는 후견등기사항을 기재하지는 않으며, 발급할 때마다 비고란에 기재하여 발급한다.
-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위임에 없이 단독으로 한다.

나.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이 방문하도록 하며, 인감대장에 성년후견인의 무인을 받는다.
- 성년후견 선고 전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한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 피한정후견인

- 후견내용에 따라 대리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으나, 신고를 하는 단계에서는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할 수 없다. 피한정후견인이든 한정후견인이든 신고할 때는 반드시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 인감대장에 한정후견인의 무인을 받는다.

라. 피특정후견인

- 피특정후견인은 후견선고를 받더라도 행위능력이 있으므로 후견사항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 피특정후견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특정후견인 임의로 신고할 수 없도록 특정후견인이 방문한 경우에는 피특정후견인이 방문하도록 한다.

마. 후견별 업무처리 요령

구분	구분	방문주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후견인에게 대리권 있음)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후견인에게 대리권 없음)				비고
			피후견인		후견인		피후견인		후견인		
			신분증	위임장	신분증	동의서	신분증	위임장	신분증	동의서	
피성년 후견	신고	함께	×	×	○	×	/	/	/	/	
		피후견(단독)	/	/	/	/	/	/	/	/	
		후견인(단독)	×	×	○	×	/	/	/	/	
	발급	함께	×	×	○	×	/	/	/	/	
		피후견(단독)	/	/	/	/	/	/	/	/	
		후견인(단독)	×	×	○	×	/	/	/	/	
피한정 후견	신고	함께	○	×	○	×	○	×	/	/	
		피후견(단독)	/	/	/	/	/	/	/	/	
		후견인(단독)	/	/	/	/	/	/	/	/	
	발급	함께	×	×	○	○	○	×	×	×	수령인이 후견인일 경우 동의서불필요
		피후견(단독)	○	/	○	○	○	×	×	×	
		후견인(단독)	×	×	○	×	/	/	/	/	

구분	구분	방문주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후견인에게 대리권 있음)				동의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후견인에게 대리권 없음)				비고
			피후견인		후견인		피후견인		후견인		
			신분증	위임장	신분증	동의서	신분증	위임장	신분증	동의서	
피특정 후견	신고	함께	○	×	×	×	○	/	/	/	
		피후견(단독)	○	×	×	×	○	/	/	/	
		후견인(단독)	/	/	/	/	/	/	/	/	
	피후견인은 후견선고 후에도 행위능력이 있으므로 후견인의 동의여부가 필요한지 여부에 무관하게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함.										
	발급	함께	○	×	×	×	/	/	/	/	둘 다 가능
		피후견(단독)	○	×	×	×	○	×	/	/	
후견인(단독)		×	×	○	×	/	/	/	/		
피임의 후견	신고	함께	○	×	○	×	/	/	/	/	
		피후견(단독)	○	×	×	×	/	/	/	/	
		후견인(단독)	/	/	/	/	/	/	/	/	
	피특정후견인과 동일함										
	발급	함께	○	×	×	×	/	/	/	/	둘 다 가능
		피후견(단독)	○	×	×	×	○	×	/	/	
후견인(단독)		×	×	○	×	/	/	/	/		

② 변 경

1. 개 요

- 인감신고인의 신고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변경되면 증명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인감도장에 관한 사항일 경우 인감의 변경신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 종 류

가. 신고사항의 변경

(1)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 주민등록된 주민의 인감신고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의 변경과 사망·실종 신고·국적상실은 주민등록 신고로 같음하여 직권 정리한다.
- 행정구역 명칭변경, 행정구역변경 등 주소변경에 따른 사항과 직권조치에 관한 사항의 정리는 주민등록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

(가) 정리방법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사항의 변경과 사망·실종신고·국적상실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해외체류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증명청에 신고한다.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은 등록기준지의 통보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자의 거소지 변경이나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보에 따라 직권 정리한다.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등의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 여권시스템 또는 출입국 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직권으로 변경한다.
-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신고자(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신분변동 사항 및 체류기한(연장) 여부에 대하여는 인감관리(8130, 8140)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확인한다.
-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시스템에서 「체류기한, 재입국 허가란」 등을 확인한 후 만료자는 말소처리 하되, 체류기한을 연장받으면 재등록(신고부활)하여 인감을 발급한다.
 - ※ 체류기한 연장의 경우 출입국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신고에 의한 경우이므로 신고부활하도록 한다.

나. 인감의 변경

시행령 개정(2015.1.12.) 사항

- 성명에 맞는 인감도장 신고
 - 인감 신고 후 개명 등으로 성명과 인감이 불일치하게 된 경우 인감변경을 하도록 하였다.
 - ※ 개명이나 인감신고 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하거나 영주귀국할 경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

(1) 신고에 의한 변경

- 본인이 직접 증명청을 방문하거나 서면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신고 가능하다.

(2) 처리방법

(가)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 변경신고 하는 경우

- 신분확인 후 인감대장 제2쪽의 인감란에 인장날인하고, 비고란에 “인감변경 신고” 기재한다. 신고인의 무인을 날인하고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나) 서면으로 인감 변경신고 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서면신고 사유 및 입증자료를 확인한다. 보증인 인감확인하고 인감대장에 인감지를 첨부 후 직인으로 간인하고 비고란에 “인감 변경 서면신고” 기재한다.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무인날인토록 한다.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예시) '03.4.6. 질병으로 인한 서면 인감변경신고 / 대리인 : 홍길동(주민등록번호, 관계 : 숙부) / 무인 / 담당자 : 홍길동(인)

(3) 기타 사항

(가) 인감변경(방문·서면)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한다.

(나)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 작성

-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첨부)을 기재한다.

〈 인감변경(방문·서면) 신고 관리대장 〉

결 재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수료첨부란
담당자	담 당				
					※ 전산입력필(담당자날인)

※ 전산입력필은 인감 수기대장뿐 아니라 인감전산시스템에도 변경신고 사항을 입력하라는 의미이며 “전산입력필”의 고무인을 새겨 찍던지 담당자가 자필로 기재하여도 무방

3 말 소

1. 개 요

-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인감을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 사망이나 실종선고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권으로 말소한다.

시행령 개정(2015.12.) 사항

- 신고한 인감의 말소·부활 신청시 불편 해소방안 마련
- 인감 말소·부활 신청 시 본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하도록 개정하여 기존의 인감을 날인하도록 한 불편을 개선하였다.

2. 종 류

가. 신고말소

(1) 규정

- 법률에는 대통령령으로 말소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 대통령령으로 본인 방문 신청 및 서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법정대리인이 해외체류중일 때는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말소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지 않는다.
- 말소신청서의 인감 및 법정대리인의 인감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 인감대장 비고란에 말소일자 및 사유, 말소신고를 표기하고 신청인의 무인을 받는다.

나. 직권말소

(1) 법률규정

- 신고한 사람이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것을 안 때 직권으로 말소한다.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그와 동시에 직권으로 말소하며 인감증명발급은 하지 않는다.

(2) 말소방법

- 직권으로 말소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공부를 확인한다.
- 가족관계등록 관장기관으로부터 사망자 명단을 통보받아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인감전산시스템에서 사망자의 인감이 말소되므로 증명청은 이를 확인하여 사망자의 수기 인감대장을 말소한다.
- 관련 공부를 따르지 않고 사실상태에 따라 업무처리시 공부간 불일치상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선행공부를 정리하도록 안내한다.
- 인감대장의 제1쪽 주소이동사항란과 제2쪽 비고란에 직권말소 사유와 “○○년 ○○월 ○○일 직권말소”라고 붉은 글씨로 기재한 후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예시) 2015.8.14. 주민등록 직권말소의거 2015.8.14. 인감직권말소. 담당자 : 홍길동 날인

4 부 활

1. 개 요

- 말소한 인감은 신고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부활할 수 있다.

2. 종 류

가. 신고부활

- 말소한 인감을 신고인의 필요에 의해 부활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 별지 제12호 서식의 인감란에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지 않고 구술로 한다.

나. 직권부활

(1) 사유

-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주민등록이 재등록 된 때 인감을 재등록(부활) 하여야 한다.

(2) 인감대장 정리방법

- 인감대장 제2쪽 비고란에 그 사유와 “○○년 ○○월 ○○일 직권부활”이라고 기재한 후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부활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만 하며 인감신고 및 발급시와 같이 처리한다.



Ⅲ. 인감의 보호 및 해지신청

1. 인감의 보호
2. 인감보호의 해지신청

III

인감의 보호 및 해지신청

1. 인감의 보호

가. 개요

- 인감의 보호신청은 본인의 인감을 보호해달라는 특별한 의사의 표시로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만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사람이 발급받는 경우 위임장을 확인한다.
(인감보호에 지정된 것과 위임을 받은 것은 다른 행위이다)
- 인감 보호에 관한 조항은 2016. 1. 6. 법률개정으로 인감증명법에 규정되었다.
- 인감담당자는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감신고인이 인감 보호를 신청할 경우 이 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즉, 본인 및 ○○ 외 발급금지라고 하지 않고 ‘본인 외’ 발급금지라고만 신청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 해지하기 곤란함을 사전에 안내한다.

나. 신고방법

- 보호 및 해지신청은 수기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국 인감증명 발급기관(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임의대리인이 가능한 경우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거나 복역자가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신고 후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피성년후견 판결을 받을 경우 가능하다.

※ 거동불편, 입원 등을 이유로 대리인이 보호나 해지신청을 할 수 없음을 유의

-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 후 구술로 신청한다.
- 주소지 증명청이 아닌 곳을 방문한 경우 별지 제15호의3 서식을 작성한다.
- 인감보호의 해지를 신청하지 않는 한 인감보호신청은 유효하며, 인감변경(개인) 신고를 하여도 효력이 유지된다.

다. 처리절차

- 인감대장 제2쪽의 「인감의 보호신청」란에 인감보호 내용을 적고 신고인에게 확인토록 한 후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 서명 또는 무인을 받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는다. 이와 함께 담당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 다만, 최초 인감 신고시에는 통합하여 무인을 받으므로 인감보호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관할 증명청이 아닌 기관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의3 서식]을 작성토록 하여 인감보호 신청사항을 전산입력하면 전산으로 주소지에 자동통보된다.
- 신청서 원본은 관할 증명청으로 등기 우송하여 접수기관에서는 사본을 보관한다.
- 관할 증명청은 전산조직으로 통보된 인감보호(해지)신청 사항을 익일까지 수기 인감대장에 정리한 후 담당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라. 인감보호의 방법 및 예시

1) 판단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순화하여 신청받는다.

가) 본인, 처(성명, 주민등록번호) 외 인감증명 발급불가

- 나) 본인, 처(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방문할 때만 인감증명 발급 등
- 2) 증명청에서 상황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리를 거부한다.
- 예) 본인 사정발생 시 ○○에게 발급 허용: 사정발생 여부는 담당자가 객관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임

2. 인감보호의 해지신청

가. 개요

-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에서는 보호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처리방법

- 인감보호신청제도의 취지는 대리발급으로 인한 인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한 인감 보호요청을 존중하여 엄격히 관리하고자 함에 있다.
-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지 또한 법령에 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해지할 수 없다.
- 그간 인감보호 신청 후 해지할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이 직접 방문하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였다.
- 타동 주민일 경우에도 8420. 인감보호(해지) 신청 사항 통보 화면에서 해지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2015.12.) 사항

-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자의 인감보호 해지신청 방법 신설
 - 인감보호(예, 본인 외 발급금지) 해지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동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감보호 사항을 해지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도 불가능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방법이 전혀 없음
 -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관계 공무원이 방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의2제5항 단서 신설)
 - 서식 개정 및 신설(별지 제15호의3 및 5, 6 인감보호신청서 및 인감보호해지 방문 확인 신청서)



IV. 인감증명서의 발급

1. 개 요
2. 발급방법에 따른 구분
3. 용도에 따른 구분
4. 미성년자 및 성년후견대상자의 발급
5. 대상에 따른 구분

IV

인감증명서의 발급

1. 개 요

가. 일반사항

-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위조방지기술이 적용된 특수용지(한국조폐공사가 제작)를 사용한다.
- 발급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민원은 신분확인,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이다.
- 신분증에 관한 사항은 인감신고 시 신분증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도록 한다.
- 무인발급기를 통한 인감증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지문위조 수법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협박에 의한 강제발급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 ‘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문장 끝에 날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날인여부가 증명서의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증명서의 효력은 직인날인 여부로 결정된다

나. 효력

- 공문서 규정(시행 1950.3.6., 대통령훈령 제3호)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에 관서장의 명의로 그 직인날인으로 효력이 발생된다.
 - 문서는 관서 또는 관서의 장의 명의로 시행한다. 발행문서에는 그 관서의 청인 또는 발행자의 직인을 찍는다.
-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공문서” 참조

- 인지세법 또는 개별법에 규정된 정부민원 수수료에 대하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지를 붙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수수료는 증지를 붙여 납부할 수 있다. 수수료 납부여부는 문서의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재외공관에서 인감에 관한 신고서 등에 확인을 한 경우 영사확인 도장(서명)이 날인되어 있어야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영사확인은 되어 있으나 인지가 누락된 경우에도 효력은 있다.
 - ※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이 확인하도록 한 문서는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으로 이외의 문서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한다.

다. 유의사항

시행령 개정(2016.7.5.) 사항

- 신분확인 방법 개선
 - 무인 외에 다른 손가락의 지문(十指)으로도 확인 가능하도록 함
 - ※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조치 후 실시(2017. 1. 1 이후)
 -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시, 위임자 본인이 수감자인 경우 수감기관의 확인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 제출 의무 면제(제13조)

(1) 신분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하기 전에 지문확인부터 요구해서는 안된다.

(2) 시스템 장애

- 특정 시군구의 전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전산이 복구될 때까지 기다렸다 발급하거나 장애가 없는 인근 시군구에서 발급한다.

(3) 인감증명서 비고란의 활용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의 표시와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 발급기관에서 인감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예) 내국인이었던 사람이 외국국적동포로 신분이 바뀐 경우 내국인 당시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최종 거주지 주소 등을 기재하거나, 인감신고자의 인감 변경되었을 경우 : 2013.1.3. 현재 인감으로 변경
- 비고란에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의 앞과 뒤에 담당자 도장을 날인한다.
- 사용용도란은 인감증명서 교부 후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사용하되,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한다.
- 인감증명법령에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발급된 인감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없다.(1994. 1. 1일부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폐지). 다만, 인감증명 수요 기관에서 법령으로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질 수 있다.
※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발급된 지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토록 하여 간접적으로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4) 인감증명서 발급용지

-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인감증명서를 출력하여 발급한다.
- 인감증명서의 인영은 직접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화일을 흑백 프린터기로 출력된다.
- 인감용지는 복사·스캔 방지 등 인감증명에 대한 보안이 가능하도록 구현된 특수용지여야 하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입한다.

- 홀로그램 위의 인영이 지워지는 문제점이 있어 일시적(2015. 10.~2016. 1.)으로 보호테이프를 붙여 발급한 적도 있으나,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여 2016. 1.25. 부터는 보호테이프를 붙이지 않는다.

인감증명서 용지에 홀로그램 적용 (2010.4.)

- ◆ 인감증명서에 인쇄된 인영을 스캔하여 인감을 위조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
⇒ 홀로그램상 인영을 지운 후 재인쇄할 수 있어 위·변조의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나, 현재까지 이와 같은 인감사고가 발생한 건은 없음
- ◆ 홀로그램 상에 인쇄된 인영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홀로그램이 금속(金屬) 성질을 띤다는 특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

- 구입된 인감용지는 ‘용지관리 지침’에 따라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되, 용지관리 책임자(시군구 담당과장,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 열쇠 관리자(인감 또는 본인서명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 인감용지의 사용량은 일일결산(담당계장 전결) 하며 인감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 인감용지의 재질이 바뀌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훼손된 용지는 파기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인감증명서 발급용지(복사방해용지) 규격

구 분	규 격
제 품 명	인감증명서 복사방해용지
제조사명	한국조폐공사
크기	가로 : 210±1mm, 세로 : 297±1mm
평량(g/m ²)	82 ± 2g/m ²
섬유조성 (화학펄프함량)	100%
겉모양	균등, 평활, 불투명하고 찢어진 곳, 구멍, 주름 등 프린터 출력에 해로운 결점이 없을 것
색 상	바탕 색 : 행정자치부와 협의된 색상(연분홍) 정부마크 : 담청색, 미세문자 : 청색
복사물에 나타나는 현상	○ “사본” 문자가 나타나거나, “대한민국” 문자가 소실됨 ○ 감열성변색잉크로 된 정부마크가 복사물에서는 열을 가할 때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정부 마크 부위에 인쇄된 미세문자인 “대한민국” 문자가 재현되지 않음
포장방식	2,500장/상자(소포장 : 250매)
기 능	○ 필터형잠상, 평판잠상 및 감열변색잉크, 홀로그램에 의한 위조방지 및 복사방해 ※ 특허번호 10-1164003(2012.07.03.) - 위조방지 및 복사 방해용 인쇄물의 제조방법 ○ 오버프린팅 가능 홀로그램 적용(방사형 모양)
용지무늬	○ 용지의 정 중앙에 청색 정부마크 인쇄 ○ 용지 상단, 하단에 감열성변색잉크 정부 마크 인쇄 ○ 용지전면에 “대한민국” 글씨 인쇄 ○ 홀로그램 하단부의 “대한민국” 글씨 인쇄
특 징	○ 복사 또는 팩스 전송하면 “사본” 문자가 나타나거나, “대한민국” 문자가 나타나지 않음 ○ 용지 3개소에 인쇄된 감열성변색잉크 정부마크는 45℃ 정도의 열을 가하면 사라짐.(단, 화공약품 및 장기간 햇빛 노출시 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 ○ 정부 마크 부위의 미세문자인 “대한민국” 문자가 복사물 및 프린터 출력물에서는 재현되지 않음 ○ 필터인식기를 이용하여 원본에서는 잠상이미지를 확인가능하며, 복사본에서는 확인 되지 않음

○ 인감증명 발급용지 위·변조 방지요소

	<p>① 복사방해패턴</p> 
	<p>② 감열변색잉크</p> <p>용지에 45℃ 이상의 열을 가하면 로고가 소실(상, 중, 하단 3곳 적용)</p>
	<p>③ 필터형 잠상</p> <p>휴대용 위조 감식기(특수필터)로 용지를 보면 “원본”이라는 문자가 보임</p> 
	<p>④ 홀로그램</p> <p>- 홀로그램 하단에 청색 문자 적용 (“대한민국”문자 적용)</p>
	<p>⑤ 미세문자</p> <p>확대경으로 볼 경우 “대한민국”문자가 보임</p>

(5)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 인감전산시스템이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과 연계되어 사망자(사망의심자포함)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시 사망시각을 기준으로 사망시각 이후에 발급 신청을 하면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기관은 발급신청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다.
 -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 아래 안내 문구(수정없이)를 아크릴판으로 제작(A4용지 가로)하여 인감발급시 잘 보이도록 민원창구에 게시한다.

사망자 인감발급 예방

-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신청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시·군·구

2. 발급방법에 따른 구분

가. 본인발급

- 인감증명서를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인감증명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술로 신청한다.
- 1차적으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규정한 신분증으로 확인해야하고, 그 방법으로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인의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한다.

- 본인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판단기준은 본인이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말하거나 쓸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본인의사 표현여부는 인감 신고 부분을 적용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야 함을 안내한다.
- 본인발급의 경우에는 발급대장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본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하거나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수기 발급대장에 기재한다.

나. 대리발급

(1) 신청방법

- 대리인은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도 포함한다.
- 기존 인감증명법 시행령에는 '위임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규정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위임자의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2) 위임장

-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한다.
- 대리로 발급할 경우에는 위임자의 신분증과 별지 제13호 서식의 위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재외공관에서 별지 제13호 서식이 아닌 임의의 서식으로 위임장을 발급하여 이를 국내에서 대리인이 재외국민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리하지 않도록 한다.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임의의 서식 위임장은 외국국적동포 혹은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위임장으로서 인감증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위임장이기 때문이다)

- 위임장은 대리인이 제출해야 하는 위임인의 신분증과 함께 진정한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인감사고 시 문서감정 대상이 될 때가 많다. 그러므로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기재사항을 기재한 위임장은 수리하지 않도록 한다. 인감 담당자가 본인의 필체인지를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필임을 요구하는 것은 위임자 본인에게 최소한 본인이 위임하지 않았다는 단서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 위임인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글을 못 쓰는 사람일 수도 있으므로 대리인이 기재한 위임장을 수리불가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신분증과 위임장에 근거하여 발급하였으므로 담당자의 책임은 없다.
(단,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대리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였거나 용도가 부동산매도용 및 위임자가 고령자일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제도 대상이거나 허위위임장 작성에 의한 사고 발생이 높으므로 발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위임자의 위임 사실 여부를 유선 등으로 확인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자의 동의 없이 허위로 위임장 작성시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위임자는 위임했다는 표시로 날인(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 이름만 새긴 업무용 도장도 가능) 또는 서명(사인도 가능)한다.
- 주민등록한 사람(내국인)이 일시적으로 해외체류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이 없더라도 위임장(반드시 위임자가 작성) 및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대리발급을 허용한다.
※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은 출입국사실증명을 통해 위임장 작성시 국내 체류하였음을 증명할 경우 주민등록증 및 위임장을 제시하여 대리발급 가능하다. 출입국사실증명서는 법무부 FINE 시스템을 통해 확인가능하므로 별도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 위임자가 수감자인 경우 위임장(여백에 신고인의 무인 및 교도관의 확인)에 수감자의 신분증이 없어도 수감기관의 확인만 있으면 수리하도록 한다.
※ 교도관의 확인만 있고 수감기관의 확인(직인)이 없을 경우 수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재외공관의 확인처럼 여백에 영사관 스탬프 및 수입인지 처리가 있으면 기관 확인이 되지만 수감기관은 교도관의 서명만 있다면 수감증명서를 확인한다.(수감증명서는 사본 가능)
- 위임장은 워드프로세서로 입력하거나 복사본은 수리 불가하다.

그러나 재외공관 및 수감시설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의 경우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리한다. 재외공관의 확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다. 이 경우 초일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까지이다.
- 위임장 및 동의서는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과거 국내에서는 대리발급을 못하게 하였으나 법무부 FINE 시스템 및 여권시스템의 연계구축을 통해 국내에서도 신분증의 유효성 확인이 가능해졌으므로 위임장을 작성한 시점에 국내에 입국했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국내위임발급을 허용한다.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국내위임 발급을 불허하였으나, 2015년 외교부 여권시스템과의 시스템 연계로 신분증 확인 문제가 해결되어 허용한다.
- 발급 통수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1통을 발급한다.

(3)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시행령 개정(2015.12.) 사항

□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확대

- 그간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대리발급 시에만 본인에게 발급사실을 통보해왔으나 본인 사칭 인감사고에 대비하여 본인발급한 경우에도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 다만, 본인발급 시에는 휴대전화 문자로만 전송하고 우편으로는 통보하지 않도록 하였다.

- 인감증명서의 허위신청에 따른 인감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은 우편,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발급 사실을 통보하여 줄 수 있다.
※ 인감증명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의 문자전송(SMS)은 발급한 기관의 시스템에서 발송된다.

- 문자전송(SMS) 방식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받으려면 인감 신고인 본인이 [별지 제15의2 서식]을 작성하여 거주지 증명청 또는 전국 인감 증명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시하는 경우에도 접수가능하다. 이 경우 별지 제15호의2서식 신청인 아래에 '대리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서명이나 날인한 후 처리가능하다.
- 문자전송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시군구에서는 우편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발급사실을 통보한다.

(4) 인감증명서 발급사실확인시스템

-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수요처(은행, 법원 등 수요기관 및 개인포함)이 발급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전자민원창구(민원24- <http://minwon.go.kr>)를 통하여 할 수 있다.
- 신분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인감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므로 전화로 문의하면 발급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
- 인터넷 민원24에 접속하여 당해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용번호, 발급기관」 등을 입력하여 확인하면 발급사실과 '일치함'과 '일치하지 아니함', '본인 또는 대리발급' 등 네 가지 형태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3. 용도에 따른 구분

시행령 개정(2015.12.) 사항

- 인감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 부동산매도용이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매수자 인적사항란의 기재 를 민원인이 직접 기재함으로 인하여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에게도 많은 불편 함이 있었다.
 - 민원인이 요구하는대로 공무원이 입력하여 출력하고, 대신 그 내용에 대해서 는 민원인이 책임지도록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하고 담당자의 도장을 날인하 지 않도록 하였다.

가. 일반용

- 부동산 및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를 말하며, 인감증명 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기재하여 사용한다.

나. 부동산매도용

(1) 발급절차

-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담당자는 신청인이 구술하는 매수자 인적사항을 인감전산시스템에 기록 관리한다.
- 매수자 인적사항은 담당자가 입력하여 출력하면, 민원인이 확인 및 서명 후 교 부한다. 민원인이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므로 편의상 담당자가 기재한 사항에 대 한 책임도 민원인이 부담한다.
 -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시에는 부동산 매수자 앞의 []에 √로 용도 표시하여 인쇄
- 발급신청자 서명이 누락되어 등기소, 차량사업소 등 수요처에서 항의성 민원이 빈번 하게 제기되므로 반드시 발급신청자 서명(사인도 허용)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발급신청자는 인감증명서를 신청하러 온 방문자를 말한다. 글자를 못쓰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직인날인) 지문(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이 있다.
- 담당자는 신청인이 기록한 인감증명서를 받아 구술한 내용과 적은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담당자 개인 도장을 날인하지 않는다.

(2) 매수자 인적사항

용	매 수 자	[] 부동산 매수자, [] 자동차 매수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법인·사업장 소재지)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발급신청자)	
도	일 반 용	(서명)		

- 주소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로명 주소를 입력한다. 도로명 주소는 상세주소(서울~708호)까지(괄호 앞부분) 쓰면 되고 괄호 속의 참고항목(법정동, 건물명칭)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쓰지 않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쓴다면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 ‘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문장 끝에 날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날인여부가 증명서의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증명서의 효력은 직인날인 여부로 결정된다. (담당자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반려하지 않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 완료, 부동산등기과-433(2015.2.26.))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민원인이 알고 있는 지번주소에 대해 도로명주소를 조회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누구에게나 공개된 자료이므로 안내하여도 문제되지 않는다.
- 매수자 인적사항이 주민등록전산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상의 주소를 안내하지 않도록 하며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안내하고 민원인이 그 상태로 발급을 원한다면 발급한다.

- 매수자 성명은 한글, 한자 모두 가능하나 개인의 경우 내국인(주민등록된 재외국민 포함)은 주민등록표의 성명을 적고,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의 성명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의 성명을 적는다.
 - 매수자가 외국인등록이 안된 외국인일 경우에는 등기용등록번호와 본국 주소를 기재한다.
 -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등록된 사업자 명칭을 적는다.
- 주소는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 혹은 본인이 원하는 주소지 기재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등록된 소재지를 기재한다.
- 매수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대표자 1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성명란에는 “○○○외 ○명”이라고 표기하고 그 외의 매수자 인적사항은 별지에 기재하여 직인으로 간인하며, 천공으로 간인을 대체할 수 있다.
 - 전산 발급 시 공동매수자가 있을 때 대표자 1인을 입력한 후 공동매수자수를 입력하고 출력시 “○○○외 ○명”이라고 표기된다.

(3) 세무서장 확인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한 것은 재외국민에게 향후 국내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세금 미납부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 주민등록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은 하였으나 영주권이 있는(또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재외국민이므로 세무서장의 확인은 받아야 한다.
- 일부 세무서에서 재외국민에게 국내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양도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는데 맞지 않다.

- 국세청은 재외국민의 경우 양도세의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서장 확인을 해주도록 지침을 수정하여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였다.(2015년)

2016.7월부터는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국세청 민원처리 규정을 개선하였으며 인감증명법시행령도 이에 맞추어 개정할 계획이다.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세무서장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인감과 재외국민의 세금징수와는 관련이 없어 행자부는 이 규정을 삭제하고자 2015년 개정령을 마련하였으나, 관련 부처인 국세청, 기획재정부가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보류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여 입법절차상 논의가 중단되었다.

-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부동산 매도가 아닌 증여, 상속의 청구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를 경유할 필요 없다.
- 개정된 부동산 등기예규(제1308호, 2010.4.18.)에 따라 비고란에 매도대상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게 되었으나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우 기재하여 발급한다.
- 부동산이 내국인과 재외국민 공동소유인 경우, 지분에 따라 각각 과세하므로 인감증명서도 각자 제출한다. 그러므로 재외국민은 세무서장 확인을 받아야한다.

다. 자동차매도용

(1) 개요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대포차 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 1. 1.부터 시행하였으며, 자동차를 매도할 경우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매수자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이 부분도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요령을 적용한다.

(2) 발급절차

- 매수자 인적사항은 담당자가 입력하여 출력하여, 민원인이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한다.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담당자가 도장을 날인하지 않는다.
*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

용 도	매 도 용	[] 부동산 매수자, [] 자동차 매수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법인·사업장 소재지)		
	인 관 영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발급신청자) (서명)		

-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정보(상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로는 자동차 등록의 신청·접수가 불가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4263(2014.6.27.)호 - 사업자등록번호는 과세를 위한 자료이므로 법인이 청산될 경우 더 이상 관리하지 않으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한 차량은 대포차가 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번호로는 자동차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즉,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는 개인 및 법인이므로 사업자등록을 기재할 수는 없다. 다만, 주소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개정, 2015.3.19.)
- 매수자가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미등록외국인은 자동차 매수인 기재 불가)
- 부동산매도용과 마찬가지로 민원인에게 매수자 인적사항 확인 후 발급신청자 서명(사인 가능)을 반드시 하도록 안내한다.

4. 미성년자 및 성년후견대상자의 발급

가. 미성년자

(1) 규정

- 미성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다.

(2) 발급방법

(가) 미성년자

- 미성년자는 본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미성년자에 한한다.

(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라면 미성년자가 작성한 위임장이나 미성년자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는 필요없지만, 발급대장에 법정대리인의 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이다.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한 후 법정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방문하는 경우에도 본인발급이 아니라 대리발급이다. 인감증명서 비고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다) 임의의 대리인

- 미성년자의 신분증, 미성년자가 작성한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성년후견제도 대상자

(1) 공통사항

- 심판확정과 동시에 효력을 가지므로 판결문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2018. 7. 1. 이후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판결을 새로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기존의 인감대장에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 관련 기재사항은 삭제한다.
 - ※ 기존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선고된 사람은 2018.6.30.까지는 기존의 인감증명업무 편람대로 처리하면 된다.
- 신청인의 인적사항(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을 입력하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확인하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복사하여 제출자의 우무인을 날인하고 관리한다.
- 인감대장(수기, 전산)에는 후견등기사항을 기재하지는 않으며, 발급시마다 비고란에 기재하여 발급한다.

(2) 피한정후견인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한 후 인감증명서의 제출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일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받는다. 한정후견인이 직접 방문한 경우는 후견등기사항증명 대리권의 목록을 확인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신분증, 위임장 없이도 후견인으로서 신청가능한 목록만 발급하도록 한다.
- 피한정후견인은 동의권과 대리권의 범위가 사안에 따라 다르다.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리권의 범위도 달라지므로 피성년후견이나 미성년자처럼 한정후견인이 자동적으로 법정대리인으로 지칭하면 안된다.
- 사용용도란은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앞뒤에 담당자 도장을 날인하여 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다만, 성년후견제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은 기존과 같이 당사자가 자유로이 기재하도록 한다.

- 8210 화면 비고란에 한정후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인감증명서상에 출력되도록 한다.
- 한정후견인이 방문하더라도 피한정후견인이 동행하여 발급받을 경우 본인발급으로 표시한다.

(3)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이 방문하도록 하고, 성년후견인의 위임장, 신분증, 동의서는 제출받지 않아도 된다.
- 사용용도란은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앞뒤에 담당자 도장으로 날인하여 (부동산 매수자 확인과 같은 방법)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다만, 성년후견제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은 기준과 같이 당사자가 자유로이 기재하도록 한다.
- 8210 화면 비고란에 성년후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인감증명서상에 출력되도록 한다.

(4) 피특정후견인

- 특정한 행위에 대해 후견을 받는 것으로 한정후견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25. 대상에 따른 구분

가. 내국인

(1) 신청절차

- 본인발급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대리발급한다.
- 용도에 맞게 일반용, 부동산매도용, 자동차매도용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후견인)의 동의절차를 거쳐 발급한다.

나. 재외국민

(1) 신청절차

-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으로 신분확인한다.
-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대리로 인감증명을 신청하려면 위임장(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국외체류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위임(또는 동의)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재외공관은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인감증명에 있어서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인감증명의 위임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재외공관 확인을 거친 서류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분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과 위임장, 위임한 시점에 국내에 입국한 사실을 출입국 사실증명을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대리발급을 허용한다. 그러나 내국인들처럼 해외에 체류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만으로는 발급할 수 없다.
- 재외공관 확인 후의 대리발급 절차는 내국인 인감증명 대리발급 절차와 동일하다.

-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그 위임 또는 동의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 포괄적 위임장은 수리가 불가하다.(예 : 부동산등기이전절차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 등)

(2) 재외국민 인감증명 대리발급시 재외공관 확인

- 재외공관 확인은 영사관뿐만 아니라 대사관에서도 하며, 사인공증과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원형 관인을 압날 : 지름3.5cm, 이중원형 모양, 가운데 태극마크, 테두리에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REPUBLIC OF KOREA)
- 분관의 경우에는 태극마크가 없는 경우도 있음
- 확인사항이 의심되거나 필요시에 재외공관으로 전화 확인하여 처리
-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외공관 확인란에 날인하고 영사가 서명한다.

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1) 본인신청

- 외국인등록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으로 신분확인 후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이 없어 사실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여권을 제시하도록 한다.
- 체류기간 경과로 인해 외국인(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이 말소된 상태이나 적법하게 동일한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재입국한 사실이 인감전산프로그램 및 출입국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면 인감부활 신청을 받아 인감대장을 부활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2) 대리신청

- 국내에 입국(체류)하지 않고 해외 거주하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는 인감 신고 및 발급이 불가하며 해당 국가의 인감증명에 준하는 서류를 법원(등기소)이나 은행 등 수요처에서 안내받아 제출하도록 한다.
 - ※ 예를 들어 상속관련 서류일 경우 포괄적 위임장, 서명증명서, 거주사실증명서, 동일인 증명서 등을 아포스티유 또는 거주국가 한국영사관에서 공증받은 후 국내 위임자에게 전달 후 법원 제출(인감증명서 필요없음)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국내체류허가 받고 일시 해외출국한 경우)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대하여 ①체류지 공증인의 확인(공증)을 받은 후 공증받은 위임장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 ②대한민국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 발급받는다.
- 국내 체류허가를 받은 후라도 벌금형 3백만원 이상이면 외국인등록증 압수 및 체류허가 취소되므로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인감증명 발급시 체류허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인 위임장에 대하여 확인한 공증인이 등록된 공증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외국어로 작성된 위임장의 내용이 독해하기 어려운 정도이면 민원인에게 번역문을 첨부토록 하여 내용을 읽고 처리한다.
 - ※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작성한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안내한다.(행정사법 제2조 참조)
- 대법원 등기예규 제 1393호(2011.10.13.)
 -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등기신청절차를 보면, 인감 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는 인감증명서가 필요없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는 없다.

- 이 경우에는 처분위임장,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그 증명, 번역문으로 등기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등기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가) 개요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5.1.22. 시행)에 따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는 2015. 1.22.일자로 폐지되었으며, 기 신고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의 효력은 2016.6.30.까지 인정된다.
- 2016. 7. 1. 부터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은 더 이상 신고발급이 불가능하며, 최종 거소지를 증명청으로 하여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으로 직권 변경한다.

마.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의 관리

시행령 개정(2015.12.) 사항

-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관리 개선
 - 그간 인감사고에 대비하여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을 전산과 手記로 이중관리해 왔으나, 수기발급대장은 대리로 발급하는 경우에만 유지하기로 개선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였다.
 - 아울러 인감과 관련한 사건에서 증거서류의 확보를 위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은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조정하였다.

(1) 기재절차

- 종이로 된 手記발급대장은 본인이 방문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서명이

불가능한 사람이나 신분확인 상의 문제로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기발급대장을 작성한다.

- 인감증명을 발급하면 인감증명서발급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수령인란에 본인인 경우에는 무인 또는 서명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교부한다.
- 이때 발급대장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뒷면을 가리개나 흰종이로 가린 후에 무인을 받도록 한다.
- 미성년자나 노약자, 자신의 서명을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는 장애인 등은 본인인 경우에도 무인날인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관리방법

- 전산상으로 인감증명발급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手記발급대장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대리인의 발급시 무인날인 때문이다.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무인확인과 그 무인을 전산발급대장에 저장하는 방식은 진본성 논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전산입력한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은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 인감증명발급대장의 증명인, 신청인란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표기한다.
- 두 손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대장 수령인란에 서명하도록 할 수 없으므로 비고란에 담당자가 그 사유를 기재한다.

(3) 발급오류·발급취소에 따른 인감증명발급대장 처리요령

- 발급오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발급번호를 수정할 수 없다.
- 인감증명서 발급오류나 발급취소 등으로 인한 교부통수 수정은 당일에만 처리가 가능하며, 발급대장의 「발급통수」, 「교부통수」를 확인 후, 「교부통수」를 전산으로 수정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인감증명이 발급되었으나 교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열을 비워두고 비고란에 ‘미교부’라고 기재한다.
- 발급요류나 발급 후 취소에 의해 교부되지 않은 인감증명서는 신청인의 면전에서 즉시 파기한다.
- 잘못 발급(훼손 등)된 인감증명서는 보관하지 말고 파기하며, 필요시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파기’를 기재하고 본인의 서명을 받는다.

바. 2통 이상 발급 시 처리

- 인감증명을 2통 이상 발급하는 경우 발급자 인적사항은 한 줄에 적고 발급통수란에 발급받은 통수를 기재한다.(통수별로 각각의 기재는 지양)
- 일건에 여러 통이 발급되어도 발급번호가 동일하므로 동일번호란에 기재한다.
- 동일인이 여러 건(본인, 대리인, 매도용 등)의 인감을 발급받는 경우 각기 다른 번호가 부여되므로 별도의 칸에 분리하여 적는다.
 - ※ 일반용과 부동산 매도용은 동시에 발급 신청하여도 다른 건수로 분류되어 다른 번호가 부여되므로 별도의 칸에 분리하여 적는다.
- 발급통수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사항에 대해 신청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아 발급통수 정정에 대한 근거를 확보한다.(비고란 활용)



V. 열람

1. 개 요
2. 열람에 관한 규정
3. 열람방법
4. 舊 인감자료에 대한 열람

V

열람

1. 개요

시행령 개정(2015.12.) 사항

-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조항 정비
 - 기존에는 인감증명청을 반드시 방문하여야만 하였으나,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금치산 뿐만 아니라 한정치산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열람 외에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사본(전산자료 출력물 포함)도 제공하도록 하였다.
 -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을 30년으로 상향 조정

가. 내용

- 인감자료의 열람(공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 인감 증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열람한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일반법의 지위에 있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8조)은 인감자료에 대한 열람의 권한이 있는 자와 열람의 절차를 정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 인감정보의 공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개할 수 없고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 법령상 권한있는 자의 범위

- 법령상 권한있는 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열람등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자 중 진행 중인 재판,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세무조사, 감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람등을 요청하려는 자’로 개정하였다.
-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 요구), 감사원법 제24조(감찰사항) 및 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 ※ 국제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자료의 요구시 사법경찰관리임을 입증한 경우 해당 사건에 관하여 허용한다.
- 공문에 사건번호, 사건명, 대상자 성명 및 사유 등 수사 또는 재판과 인감증명자료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내용 기재토록 요구한다.
 - ※ 영장(원본 인감대장 압수)을 제시할 경우 원본 인감대장을 제공한다.

2. 열람에 관한 규정

가. 규정

(가) 열람할 수 있는 자

- 법령에 따른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인감을 신고한 본인
-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후견인,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

(나) 대상

- 인감대장 또는 인감에 관한 서류

(다) 방법

-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명청의 건물에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으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열람대장을 기재한다.
- 신청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와 신분증을 확인한다.

나. 인감증명 관계서류의 보존

(가) 법률

-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그 외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대통령령

- 인감관리대장,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 영구보존
- 인감증명발급대장 : 30년
※ 기존 시행령에 따라 10년 내 폐기하여야 하는 대장이라도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30년 연장하고, 열람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 각종 신고서, 확인서 및 동의서, 인감신고사항 통보서, 위임장¹⁾ 그 밖의 인감관련대장 : 10년

1) 위임장은 '03.3.26일부터 증명청에 보관되고 있으며 그 이전의 위임장은 인감증명서 이면에 기재되어 신청인에게 그대로 교부되었음(78.4.6 시행령 개정서식 참조)

3. 열람방법

가. 유의사항

- 사건 당사자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3자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용 불가(사건 당사자의 직계 혈족이라도 불가)
- 요청하는 자료가 인감관련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인감과 관련된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열람 허용
- 법령상 권한 있는 자가 열람을 요청하려면 그가 소속한 기관에서 인감관련 자료와 사건 사이에 관련성을 기재한 협조공문이 있어야 한다.
- 사망자의 인감자료에 대한 열람권자는 상속자(영 제 18조)이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속인은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한다.
 - 1) 유언장에 공증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이 때 증명청은 유언장을 복사하고 돌려준다.
 - 2) 공증인으로부터 유언에 대한 공정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나. 인감증명 발급내역 조회

-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서의 발급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다. 사본 및 확인서의 제공

- 열람후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열람한 서류의 사본과 함께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인감수기대장(별지제2~5호 서식) 사본제공은 수사기관(국과수 포함) 및 소송 등의 법원 사실조회요청시에만 제공한다(민원인에게는 인감수기대장은 열람만 가능)

4. 舊 인감자료에 대한 열람

- 인감증명법 시행 이후 작성된 인감대장은 1978년 9월 1일 개인별 주민등록카드 후면을 인감대장으로 작성하기 시작하기 직전의 최종 주소지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 개인별 주민등록카드는 2005년 7월 1일 수기 개인별 주민등록카드를 폐기하기 직전의 최종주소지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사망 또는 국외이주 등으로 말소된 자의 개인별 카드는 말소지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 현행 인감대장은 1991년 7월 1일 부터 작성되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또는 출장소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 당시의 증명청에 보관되고 있는 舊 인감자료는 舊 개인별주민등록표에 통합 관리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 관리자료가 아니므로 개인별주민등록표에 의한 주민등록 항목(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제공될 수 없다(주민제도팀-968, 2006.2.20.)



VI. 인감대장의 관리

1. 인감대장의 작성
2. 인감대장의 이송

VI

인감대장의 관리

① 인감대장의 작성

1. 개 요

- 전산상으로 인감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감사고시 인감도장의 감정업무를 위하여 手記 인감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별로 인감대장의 서식을 별도로 작성하며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을 위하여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이 변경(2015.1.22.)되었다.
- 내국인용 인감대장(별지 제2호서식) 서식을 변경(2016.7.5.)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왼쪽 상단에 위치하여 인감대장 관리에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2. 인감대장의 종류

가. 내국인용

(1) 제1쪽

- 신고인의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과 신분증으로 확인한 후 흑색필기구로 적는다.
- 「주소이동사항」은 최초 인감신고 당시 증명청에 전입한 주소부터 기재한다.
- 주민등록 거주불명 조치가 있으면 ‘주소이동사항’ 란에는 주민등록 직권조치 사항을, 제2쪽의 비고란에는 인감의 직권말소 날짜, 사유와 ‘직권말소’ 라고 표기한 후 담당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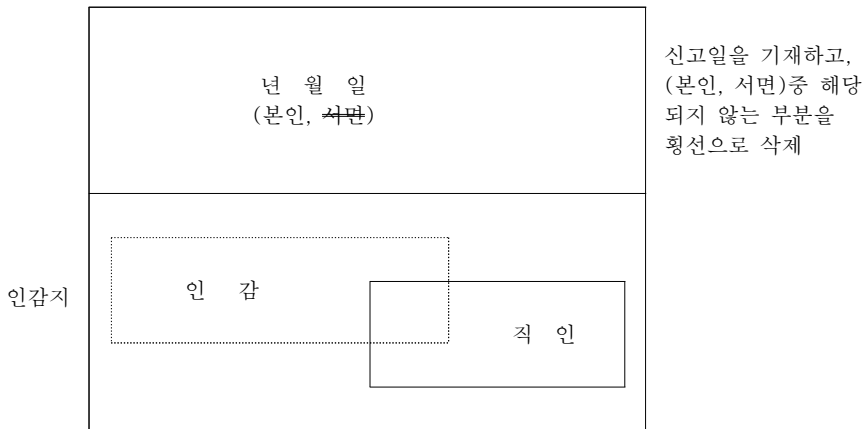
※ 주소란은 개인별 주소변경 사항만을 기재

주민등록 번호		인 감 대 장		
성 명 (한 자)		휴대폰 번호 (발급사실통보용)		인감
주 소 이 동 사 항	순서	주 소		전 입
	1	경남 창원군 내서읍 내덕리 257번지		1999. 3. 12 (전입) (인)
	2	창원군조례에 의거 리동명칭 변경(2000. 10. 20)		. .
	3	경남 창원군 내서읍 내하리 257번지		2000. 10. 20 (명칭변경) (인)
	4	법률 제4678호로 시설치 (2001. 1. 1)		. .
	5	경남 창원시 명서동 257번지 4/5		2001. 1. 1 (행정구역변경) (인)
	6	법률 제0000호로 구성치 (2010. 7. 1)		. .
	7	경남 창원시의창구 명서동 257번지		2010. 7. 1 (행정구역변경) (인)

(2) 제2쪽

- 인감란에는 인감의 신고연월일을 적고, (본인, 서면) 중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횡선(==)으로 삭제하며, 신고하려는 인장을 날인한다.
- 서면신고의 경우 대리인이 제출한 인감을 인감란에 선명하게 날인하거나, 신고서에 첨부된 인감지를 인감란에 부착한 후 증명청의 직인으로 간인한다

《 서면신고시 인감대장 작성예시 》



※ 인감지는 반드시 흰 종이를 사용함

- 인감의 특징란에는 신고인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기록한다.
 -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사항 및 법정대리인(후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 인감변경신고, 인감의 말소 및 재등록(부활) 사항
 - 예) ○○년 ○월 ○일 “신고말소”, “신고부활” 등
- 인감의 보호(해지) 신청란에는 보호(해지)신청 내용을 적고, 그 내용을 본인에게 확인하게 한 후 여백의 아래쪽에 본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은 후 담당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 인감신고와 동시에 보호신청을 받은 경우 신고사항 확인에 따른 무인날인으로 같음하여 별도의 무인날인은 생략한다.
- 다만, 보호신청 일자는 반드시 적어 신고일과 동일함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인감의 보호(보호신청 해지) 신청란 작성 예시 》

인 감 의 보 호 신 청	- 신 청 일 : 2014년 7월 19일 - 신청내용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의 발급금지 - 접수기관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군청 - 정 리 일 : 2014년 7월 19일 - 신 청 인 : ○○○, 서명 또는 무인 - 담 당 자 : ○○○, 서명 또는 날인
------------------	---

- 비고에는 서면신고 관련사항, 직권조치 사항 등을 적는다.
- 서면신고의 경우 신고일자 및 그 사유(영 제8조제1항 참조)와 함께 “서면신고”라 적고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를 적은 후 대리인의 무인을 받는다.
 - 예) 2014. 4. 6. 질병으로 인한 서면신고, 대리인 : 홍길동(주민등록번호, 관계 : 형) 무인 - 담당자 : ○○○ (인)
- 주민등록 직권조치가 있는 경우 조치날짜 및 내용을 적는다.
 - 예) 2013. 4. 5.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에 따라 인감 직권말소
2013. 4. 5. 주민등록 재등록에 따라 인감 직권부활

- 인감신고 또는 인감보호해지, 신고사항 일부 변경 등으로 인한 인감대장의 작성 이 끝나면 신고인 및 담당자가 확인한다.
- 신고인은 관계사항을 확인한 후 인감의 비고란에 본인(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 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무인을 날인한다.
- 담당자는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사무용 도장을 날인한다.

(2) 증명청 경유(서식 3쪽)

- 제3쪽은 『증명청 경유란』으로 경유 증명청의 순서와 제1쪽 주소이동사항의 순서가 일치되도록 증명청의 명칭과 관리번호 등을 기재한 후 직인으로 날인하여 관리(이송)한다.
- 인감의 신규 신고시 인감대장이 최초로 작성된 증명청을 표시한다.
- 전입신고에 의해 주소변경이 발생될 때 각 증명청을 표시한다.
 - ※ 순서의 일치이지 칸수의 일치가 아니므로 도로명 주소부여, 통번변경 등으로 주소의 이동 없이 표기만 변경된 경우 증명청란은 변동하지 아니 한다.
- 관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1쪽의 주소 이동순서에 따라 증명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인감관리대장번호”란에는 전입시 등재한 번호를 그대로 기재하거나, 신규번호를 부여하는 등 증명청의 인감대장 관리방법에 따라 일련 번호를 기재·관리한다.

《 증명청 경유란 작성예시 》

증 명 청 경 유 란					
순서	인 감 관 리 대 장 번 호	증명청 직인	순서	인 감 관 리 대 장 번 호	증명청 직인
1	시·구 사직(동) 읍·면 제2015-1호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장 인		시·구 (동) 읍·면 제 호	

나. 재외국민

(1) 신고자 인적사항

(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 제1쪽에는 내국인과 달리 여권 및 등록기준지란이 있으며, 증명청에 신고된 순서대로 일련번호란에 번호를 부여한다.
- 재외국민은 거주여권이나 일반여권(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현지이주확인서)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여권번호²⁾,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 시스템의 입력사항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여권의 내용을 확인한다.
-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열람하여 한글·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미 부여자는 생년월일)를 적고, 성별란은 해당사항에 “○” 표시한다.
- 등록기준지의 신고란에는 인감 신고 날짜와 등록기준지를 적는다.
- 국내 최종주소지는 주민등록이 이민말소된 주소지이며,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빈란”으로 둔다.
- 최종주소지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 출장소에서, 최종주소지가 불명한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출장소에서 그 인감을 관리한다.

(나)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가 주민등록한 경우 前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한다.
-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여권번호는 모를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여권번호 변경시 증명청이 정정 관리한다. 이하 전 신분에 적용된다.

- 인감을 신고한 내국인이 국외이주를 한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에 재외국민용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으로 전환하고 주소이동 사항란에 행정상 관리주소를 기재한다.
- 인감을 신고하지 않은 내국인이 국외이주를 한 후, 해외에서 서면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행정상 관리주소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다.
-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는 주소이동사항을 작성한다.

《 재외국민용 인감대장 작성예시 》

인 감 대 장

(재외국민용)

성 명 (한글·한자)	홍길동 (洪吉童)	여권번호	si578901	성별	남·여
		(전)국내거소신고번호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480000 - 1600000		
등 록 기준지	91년4월3일 신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년 월 일 신고				
	년 월 일 신고				
국 내 최 종 주소지					
	92년7월15일 출국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현리 111번지			

※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의 주소(행정상관리주소를 포함한다) 이동사항

주소이동 사항	주소	전입	
		.	인

(다) 인감 신고사항(서식 2쪽)

- 제2쪽의 인감란은 내국인의 인감란을 그대로 첨부하여 사용한다.(영 제5조제4항)

《 인감신고사항란 작성예시 》

인 감 신 고 사 항			
인	인 감 란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 내국인 인감을 재외국면 인감으로 신고한 것으로 같음함	
감	인감의 특징	재외국면 인감신고일(통보일자) : 년 월 일 출국자명단통보서 접수일자 : 년 월 일	

(라) 증명청 경유(서식 3쪽)

- 증명청 경유란의 기재요령 및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과 같다.

다. 외국인

(1) 신고자 인적사항

- 제1쪽에는 신분사항을 기록하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외에 내국인과 달리 체류자격, 여권관련 사항, 여권 유효기간 등이 있다.
- 외국인은 인감신고시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증과 여권을 제출받아 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 등을 시스템과 대조·확인하여 적는다.
 - ※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여권 재발급 후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 외국인의 성명은 외국인등록증에 표기된 성명으로 하되, ‘성’은 그대로, ‘명’은 축약형으로 등재할 수 있다.
- 외국인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서 그 인감을 관리해왔으나, 시청 및 구청에서의 외국인인감업무는 동주민센터로 이관하였다.

《 외국인용 인감대장 작성예시 》

인 감 대 장

(외국인용)

성 명		TANAKA ICHIRO(田中一雄)		국가	일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번호	700000-5100000		여권	여권번호	1		
						2		
						3		
	휴대폰번호 (발급사실통보용)	010-000-0000			여권	여권발급일	1	15.12.30
							2	
							3	
	체류자격	1	F-4비자	여권		유효기간	1	17.12.31
		2					2	
		3					3	
	체류기간	1	16.10.5					
		2						
		3						

(2) 인감 신고사항

- 인감란, 인감의 특징, 인감의 보호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 비고란의 기재요령 및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과 같다.
- 증명청 경유란의 기재요령 및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 요령과 같다.

라. 국내거소신고자

(1) 신고자 인적사항

- 제1쪽에는 신분사항을 기록하나 성명, 거소신고번호 외에 내국인과 달리 체류자격, 여권관련 사항, 여권 유효기간 등이 있다.
- 국내거소신고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이며, 재외국민의 경우 2016.7.1. 일자로 거소신고 인감은 재외국민 인감으로 변경하였다.
- 국내거소신고자는 인감신고시 거소신고증과 여권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증과 여권을 제출받아 거소신고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 ※ 시스템의 입력사항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거소신고증과 여권의 내용을 시스템의 내용과 대조·확인한다.
- ※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 국내거소신고자의 성명은 거소신고증에 표기된 성명으로 하되, 외국국적 동포는 ‘성’은 그대로, ‘명’은 축약형으로 등재할 수 있다.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서 그 인감을 관리한다.(외국인과 동일)

(2) 인감신고사항

- 인감란, 인감의 특징, 인감의 보호(해지)신청, 비고란의 기재요령 및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과 같다.

(3) 증명청 경유

- 증명청 경유란의 기재요령 및 관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요령과 같다.

《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대장 작성예시 》

인 감 대 장

(국내거소신고자용)

성 명		HONG GIL SOON		국가	미국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번호	700000-6000000		여권	여권번호	1	
	휴대폰번호 (발급사실통보용)	010-000-0000				2	
		체류자격	1			F-4비자	3
	2				여권발급일	1	15.12.30
	3					2	
	3		3				
	체류기간	1	16.10.5	유효기간	1	17.12.31	
		2			2		
		3			3		

2 인감대장의 이송

시행령 개정(2015.12.) 사항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인감대장 이송기간 단축
 - 내국인 등과 마찬가지로 3일(기존 14일) 이내 인감이송하도록 개정하였다. 읍면동에서도 이들의 주소지(체류지) 변경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하여 FINE 시스템에 반영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외국인의 인감업무를 처리하도록 개정하였다.

1. 개 요

가. 대상

- 인감신고자가 주소 이전, 등록기준지 또는 체류지 변경 등을 하면 구 증명청은 3일 이내에 신 증명청에 인감대장을 이송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으로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등록기준지를 변경한 때
: 인감대장(재외국민용) [별지 제3호서식]과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별지 제7호서식]
- 재외국민으로서 최종 주소지에 인감을 신고한 자가 등록기준지를 변경한 때 : 재외국민 인감대장 및 인감신고기록대장 [별지 제7호서식]에 표기한다.
-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체류지를 옮긴 때
: 인감대장(외국인용) [별지 제4호서식]
-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거소지를 옮긴 때
: 인감대장(국내거소신고자용) [별지 제5호서식]

나. 분실에 따른 업무처리

- 인감 신고인이 전입하였음에도 인감대장을 수령하지 못한 전입지 증명청은 책임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공문으로 인감대장의 이송을 요청하도록 한다.
- 인감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분실되어서 안 되나, 분실된 경우 아무 조치없이 송부하지 않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 분실로 인한 인감대장 재작성의 책임은 분실한 증명청에서 하여야 하므로 전출지 증명청은 신규 인감대장에 기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동사항)을 기재하고 재작성 사유 등(주소이동사항 첫째 줄에 ‘대장 분실로 인한 재작성’, 담당자 직급, 성명 기재, 날인)을 기재한 후 전입지로 이송한다.

다. 인감대장 이송 전 인감변경 요청할 경우

- 인감제도는 전산대장과 별도로 수기작성 인감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인감대장 이송 전 인감도장의 변경은 하지 않도록 한다. 이유는 인감대장 관리상 원본을 하나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전산상으로 인감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기 인감대장이 이송되기 전까지 절대 불가하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하고 그러한 긴장관계가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먼저 안내하고 그것으로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담당자 재량 하에 이송 전이라도 변경을 하도록 하는데 방법은 신규 인감대장에 신고인의 인감 및 무인을 날인하여 변경해주고 대장이 이송되면 합철보관하도록 한다.

2. 내국인 인감대장

- 舊 증명청에 인감신고자의 전출 사실이 통보·확인되면 거주자인지 말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의 인감대장 증명청 경유란에 직인(민원직인이 아닌 “관인”)을 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서 인감대장 이송통보서[별지 6의2 서식]를 출력하여 인감대장에 동봉, 3일 이내에 신거주지 증명청에 이송한다.
- 舊 증명청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6호서식 인감관리대장]의 사무처리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인감관리대장에는 인감대장 이송기관, 날짜, 재등록 등 인감업무 전반의 처리 사항이 기록되나 인감의 변경(개인)사항은 기록되지 아니 한다.
- 인감대장 및 관련공부를 이송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한다. 다만, 시·군·구 관 내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송하되, 안전한 이송방법을 강구하여 운영한다.
- 舊 증명청은 등기우편 발송 후 등기번호를 인감전산시스템(화면번호 8480,인감대장이송)에 기록 관리하고 신 증명청은 구 증명청의 관리사항을 참조하여 인감대장 수령 등 인감대장 현황을 관리한다.
- 인감이 말소된 사람의 경우 인감대장 제1쪽 주소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위의 방법에 준하여 이송한다.
- 전출지 증명청은 인감대장만 이송하고 전입지 증명청은 주민등록 재등록 사항을 정리하고 직인을 날인한다.

3. 재외국민 인감대장

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 재외국민의 인감대장은 주민등록한 재외국민과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대장을 같이 쓴다.

-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란과 최종주소지란을 기재할 필요 없이 주소이동사항만 기재하고,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나 최종주소지란을 기재한다.
-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하면 구 증명청은 14일 이내에 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 등록관서로부터 통보받은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변경사항 통보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을 신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이송한다.
- 최종주소지에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하면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재외국민 등록기준지 변경사항 통보서를 출력하여 확인한 후, 보관하고 있는 재외국민용 인감대장[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기준지란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서도 재외국민등록기준지 변경사항 통보서를 출력하여 1부는 보관용으로, 1부는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별지 제7호 서식]과 함께 신 등록기준지 증명청으로 이송한다.

《 재외국민용 인감대장 작성예시 》

인 감 대 장

(재외국민용)

성 명 (한자)	홍 기 동 (洪吉東)	여권번호 (전)국내거소신고번호	si578901	성별	남·여
휴대폰 번호 (발급사실통보용)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6 8 0 0 0 0 - 2 6 0 0 0 0 0		
등록 기준 지	91년 4월 3일 신고	전북 익산시 향우면 치즈리 77번지			
	년 월 일 신고				

-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가 확인됨에도 등록기준지에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경우, 등록기준지의 담당자는 최종 주소지를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감대장을

이송 조치하고, 최종주소지 증명청(신 증명청)은 인감대장이 이송되어 온 날 인감전산시스템에서 ‘증명청 변경’ 후 관리토록 한다.

나. 주민등록 재외국민

(1) 인감 신고한 내국인이 국외이주할 경우

- 국외이주 및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일 다음 날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현지이주를 한 경우에는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에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재외국민의 인감으로 전환
- 인감을 신고한 내국인이 국외이주, 해외이주, 현지이주 등의 신고로 재외국민이 되는 경우 그 사람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된다. 주민등록담당자가 행정상 관리주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인감전산시스템을 로그인할 때 알림창이 뜨게 되어 인감담당자는 수기인감대장을 정리한다. 인감담당자는 내국인 인감대장을 정리하고 재외국민 인감대장을 작성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기재한다.

(2) 재외국민이 주민등록할 경우

- 재외국민이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가 주민등록을 할 경우 인감담당자의 전산시스템에 주민등록된 사항이 알림창으로 팝업된다.
 - 인감담당자는 주민등록한 사람이 과거 인감대장이 있던 사람인지를 확인하여 인감대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감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재외국민인 경우)나 거소지(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로 인감대장을 송부해줄 것을 요청한다.
 -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에 내국인인감대장이 합철되어 있을 경우 내국인 인감대장도 같이 송부하며, 수기인감대장이 이송이 되었을 경우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의 인감대장으로 전환해준다.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주민등록을 할 경우 인감대장을 주민등록하는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과 별개로, 그 사람이 내국인의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그 인감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증명청으로 별도의 통보가 이루어져 주민등록하는 증명청으로 인감대장을 모두 이관받게 된다.
- 재외국민의 인감대장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서식의 주소이동 사항을 올려내어 기존 인감대장에 붙여 사용하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대장인 경우에는 거소신고자의 인감대장을 새로운 재외국민 인감대장과 합철하여 관리한다. 재외국민 거소신고자 인감대장 주소란에 ‘재외국민 인감대장으로 전환, 20**.*월. *일, 담당자 성명(서명) 기재한다.

<직권전환 방법>

- ① 8170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13자리 형식)로 신규조회한다. 기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사람인 경우 그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주민등록을 하는 사람인 경우 새로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상의 기본자료를 조회한다.
- ② 舊 인감버튼을 클릭하여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이 있는지(주민번호로 조회),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대장이 있는지(국내거소신고번호로 조회) 조회한다.
- ③ 두 종류의 인감이 모두 있다면, 둘 중 최종 인감을 선택하여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불러오고 ‘효력상실’ 여부에 ‘예’를 클릭하면 그 재외국민용 인감대장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대장을 보관하고 있는 증명청으로 주민등록사실통보서가 통보된다.
- ④ 인감전산망을 로그인 할 때 주민등록사실통보에 대한 알림창이 뜨게 되며 담당자는 통보서를 출력하여 인감대장을 이송한다.
- ⑤ 내국인이 재외국민으로 국외이주한 경우에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내국인용 인감대장도 합철보관하고 있는데, 전항의 인감대장을 송부할 때 내국인용 인감대장도 같이 이송해야 한다.

⑥ 재외국민 인감대장과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대장 둘 다 있는 신고인의 경우, 두종류의 인감대장 중 최종 인감대장을 전환한 후, 나머지 인감대장도 이송받아 같이 관리해야 한다. 방법은 8451화면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사실을 통보하면 재외국민용 인감대장 관리 증명청으로 자동 통보한다.

(3)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이 출국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

○ 국외이주 신고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4) 인감신고한 재외국민이 영주 귀국하여 내국인으로 되는 경우

○ 내국인 인감이 있던 재외국민이 영주귀국할 경우는 내국인 당시의 인감대장을 직권부활한다. 수기로 작성된 내국인 및 재외국민의 인감대장은 영주귀국하는 주민등록관할 증명청으로 이송되도록 전산으로 안내된다.

○ 내국인 인감이 없던 재외국민이 영주귀국할 경우는 재외국민의 인감대장을 내국인의 인감대장으로 전환(8110.인감대장관리의 구 인감확인) 신규 등록 후 재외국민 인감대장을 직권(또는 신고) 말소한다.

4. 외국인의 인감대장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증명청은 그 신고일 부터 3일 이내에 신 체류지 관할 증명청으로 인감대장을 이송하되, 이송방법은 내국인의 경우와 같다.

○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절차는 출입국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의 인감대장

(가) 개요

-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거소지 이전신고를 하면 증명청은 그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 거소지 관할 증명청으로 인감대장을 이송하되, 이송방법은 인감대장 이송에 대한 요청 공문을 보내고 공문을 출력하여 인감대장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이송한다.
- 국내거소신고자의 거소지 이전신고 절차는 재외동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VII. 기 타

1. 수수료의 면제
2.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 및 공제 가입

VII

기 타

① 수수료의 면제

1. 수수료 종류 및 금액

- 인감증명발급 : 통당 600원
- 인감변경신고 : 회당 600원
 - 인감자료에 대한 열람 수수료는 없음
 - ※ 2003.3.26.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규정한 관계로 증명청에 따라 각기 다른 수수료를 적용하였다.

2. 수수료 징수

- 인감증명발급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수입증지 표기는 인감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되도록 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수입 증지를 인감증명서에 첨부하여 소인(천공 등)하거나 인증기를 사용한다.

3. 수수료의 면제

- 수수료 면제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면제 대상자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
 - 따라서, 면제 대상자 본인이 타인의 인감증명을 대리로 발급받는 때는 수수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문서(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인감증명 수수료를 면제하여 발급한다.
- 시행령 제19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수수료를 면제하여 발급한다.
 - 다만, 시스템에 확인되지 아니 하는 경우 신청자로부터 관련 신분증이나 해당 문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다.
- 수수료를 면제할 때는 인감증명서에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한 수수료 면제” 표시를 하여 발급하도록 한다.(고무인 또는 인증기 등의 활용도 무방)
 - ※ 인감증명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별도로 수수료 면제 표시한다.

②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 및 공제 가입

- 증명청은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신원보증 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영 제20조)
 - 인감담당공무원이란 인감업무 담당자로 업무가 분장된 사람을 말한다.
- 보험액의 한도·가입조건·범위 등 기타사항은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주민12130-93, '03.1.27 표준조례안 시달)
 - ※ 인감업무 직위에 대한 포괄보험 가입으로 인감업무 대직자의 경우에도 운영토록 한다.



VIII. 전산업무 처리요령

VIII

전산업무 처리요령

시군구 인감전산관리시스템 이해



목 차



인감전산시스템 개요



인감 주요업무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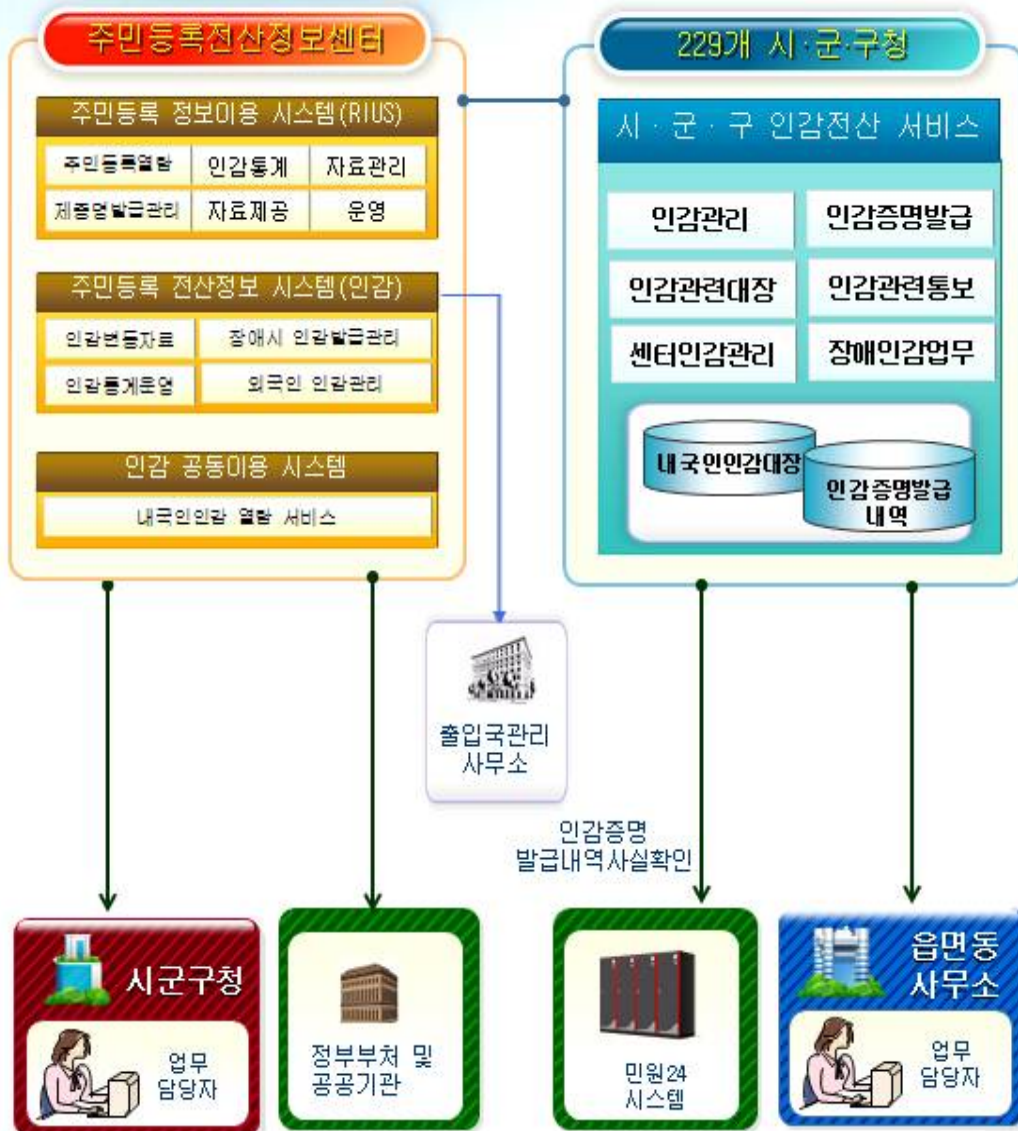
출입국자료 확인방법



장애 시 인감발급요령

1. 인감전산시스템 개요

1. 인감전산관리시스템 구성도



1. 인감전산시스템 개요

2. 인감담당자 권한설정

- 1) 사용자등록 - 시군구 전산담당자(공통행정->기초자료관리->사용자관리)
- 2) 사용자권한등록 - 시군구 전산담당자(공통행정) 또는 사용자권한관리자

장애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 민원방 홈페이지 <http://10.50.21.13>을 참고하십시오.

관리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용자관리-사용자권한일괄관리(일반용)[CMMAC001601W]

권한주기 | 권한조회/종료

업무분장코드 [RSR-주민등록행정시스템]

다중트랜잭션 설정
 추가권한 수정권한 삭제권한 조회권한

권한목록 | 권한목록관리

사용자목록 | 사용자목록관리 | 현재권한가져오기

권한목록	사용자목록
<input type="checkbox"/> 거주지이동 [RSFC1000]	<input type="checkbox"/> 남구 구룡포읍 [50300130000]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RSFK1000]	<input type="checkbox"/> 김내부12 [SLF12356]
<input type="checkbox"/> 선거 [RSRV1300]	<input type="checkbox"/> 김민방이 [CVD12344]
<input type="checkbox"/> 시군구통 [RSRS1000]	<input type="checkbox"/> 김복자2 [HL#12346]
<input type="checkbox"/> 열람및교부 [RSRG1000]	<input type="checkbox"/> 김복자5 [HL#12349]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민 [RSRP21000]	<input type="checkbox"/> 김산철이 [FRS12349]
<input type="checkbox"/> 자료관리 [RSR11000]	<input type="checkbox"/> 김수산남구구룡포읍 [MARI2355]
<input type="checkbox"/> 전자계시판 [RSRV1400]	<input type="checkbox"/> 김병경10 [ANI12354]
<input type="checkbox"/> 간판 [RSR21000]	<input type="checkbox"/> 김리수 [WT599999]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 [RSRA1000]	<input type="checkbox"/> 남구구룡포 [FRS33333]
<input type="checkbox"/> 증명금 [RSRE1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김내부12 [SLF12356]
<input type="checkbox"/> 취학아동 [RSRV1200]	<input type="checkbox"/> 주민명 [RSR11250]
<input type="checkbox"/> 호적연계 [RSRV1100]	<input type="checkbox"/> 차인표 [RSRTEST3]
<input type="checkbox"/> 화상자료 [RSRW1000]	<input type="checkbox"/> 최고봉 [RSRTEST1]
	<input type="checkbox"/> 홍길동 [RSRTEST2]

프로그램목록열람 | 권한시작일자 2004-12-04 | 확인후 권한주기 | 종료 | 도움말

1. 인감전산시스템 개요

2. 인감담당자 권한설정

3) 부서장(읍면동장, 시군구는 과장) 아이디로 주민등록시스템에 로그인



4) 인감 → 81.인감관리 → 8160.인감작업자관리 선택

인감	시군구	관련업무	SMS	본인서명사실확인	시스템기본설정	창보기	공지
81.인감관리		▶		8110.인감대장관리			
82.인감중영발급		▶		8170.인감대장관리-재외국민주민등록자			
83.인감관련대장		▶		8120.인감대장관리-재외국민			
84.인감관련통보		▶		8130.인감대장관리-외국인			
85.장애인감업무		▶		8140.인감대장관리-국내거소신고자			
86.센터인감관리		▶		8150.인감대장변경내역			
				8160.인감작업자관리			
				8160.인감발급사실통보인성(SMIS/우편)			

1. 인감전산시스템 개요

2. 인감담당자 권한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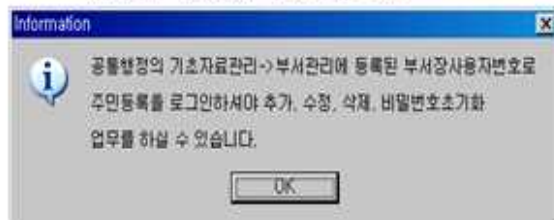
5) 하단에 인감작업자의 아이디와 성명을 넣고 추가 버튼으로 인감작업자 등록



[참고] 비밀번호 변경은 아래 창에서 한다.



[참고] 부서장으로 로그인 하였는데도 추가, 수정, 삭제, 비밀번호초기화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고 조회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시군구 전산실로 연락한다.



1. 인감전산시스템 개요

2. 인감담당자 권한설정

[참고] 시군구 전산실에서는 공동행정→기초자료관리→부서관리에서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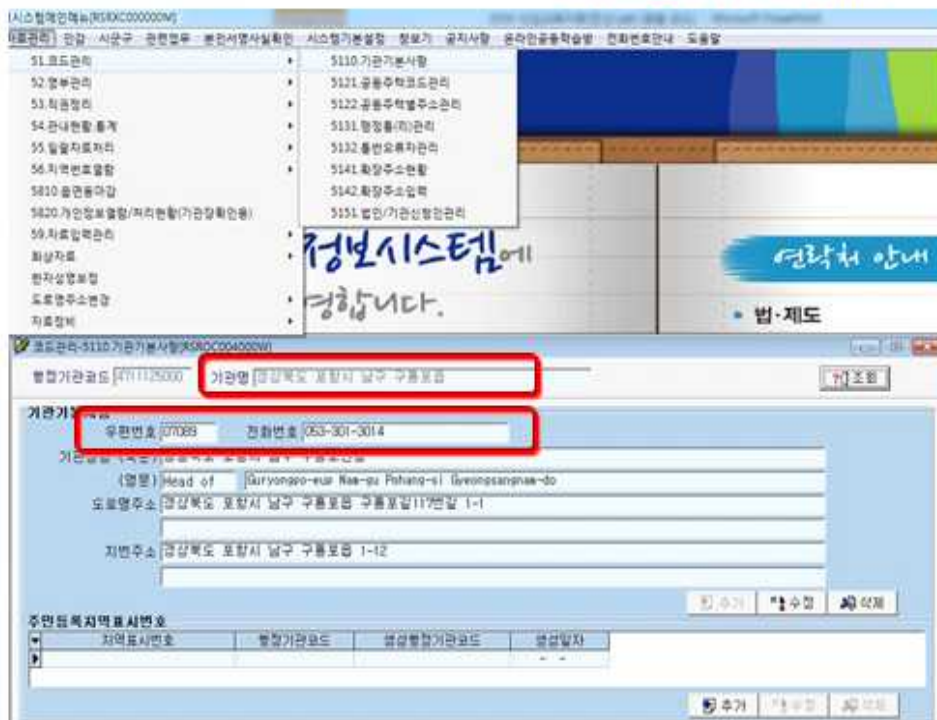
부서장사용자번호가 빈칸이거나 전임부서장사용자번호로 되어있을 경우 수정버튼을 클릭해서 부서장등록

1. 인감전산시스템 개요

2. 인감담당자 권한설정

6) 5110.기관기본사항에서 발급 시 사용하는 기관장명 확인

- ☞ 주의사항 : 기관장명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명칭까지 정확히 기재
전화번호는 대표번호를 기재하되 지역번호까지 정확히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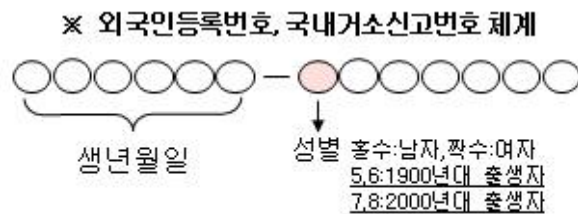
[참고] 기관장명 예시 :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장 (0)
전라북도 고창군수 (0)
광명제1동장 (X)

[참고] 전화번호 예시 : 02-123-1234 (0),
123-1234 (X),
031-123-1234-9 (X),
053-123-1234, 2345, 7890 (X)

I. 인감전산시스템 개요

3. 인감대상자 구분

- 1) 내국인 - 주민등록번호
- 2)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주민등록번호
- 3) 재외국민 -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정확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8번째 이하는 0처리)
- 4) 외국인 - 외국인등록번호
- 5)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번호
 - a.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 b. 외국국적 국내거소신고자



※ 2016.7.1.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대장을 재외국민 인감대장으로 전환
- 2015.1.22. 시행된 법률 제1253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한 경과 조치에 따라, 정상상태인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대장을 재외국민 인감대장으로 직권으로 전환함. 이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의 최종 국내거소지를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로 보고 해당 증명청으로 전환함.

4. 인감신고기관

- 1) 주민등록자(내국인, 재외국민) - 주민등록지 읍.면.동, 출장소
- 2) 재외국민 -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읍.면.동, 출장소
- 3) 외국인 - 체류지관할 읍.면.동, 출장소
- 4)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지 읍.면.동, 출장소

※ 2012.6.1 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 번호체계 변경
- 7번째 자리의 번호가 7(외국국적 국내거소자), 8(재외국민 국내거소자), 9(외국인)으로 구분되던 번호체계에서 최초 부여 받은 번호를 신분변동 시에도 그대로 유지함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가. 8710.인감대장관리

1) 1쪽 (기본사항)

The screenshot shows the '인감대장' (Seal Register)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dropdown menus for '작업구분' (Operation Type) and '자동연동' (Auto Sync), both highlighted with red boxes. Below these is a search bar and a '조회' (Search) button. The main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Header:** '인감대장' title, '등록구분' (Registration Type) dropdown, '최종관리번호' (Final Management Number) input, and '최초인감신고일자' (First Seal Report Date) input, the latter highlighted with a red box.
- Form Fields:**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성명 (한자)' (Name in Hanja), '주소' (Address), '도읍명주소' (City Name Address), and '지번주소' (Parcel Address).
- Callout Boxes:**
 - Top-left: '말소는 수정작업을 선택하여 인감상태를 신고말소 또는 직권말소로 선택하여 저장' (When deleting, select the modification operation to report and delete the seal status or delete it by authority, and then save).
 - Top-right: '다음면동 열람 시 반드시 시군구 이하 레벨까지 입력' (When viewing the next page, input the level below the city/county/district).
 - Bottom-left: '초본의 주소이력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유가세대관련, 등록기준지관련 사항은 제외됨' (Use the address history of the original as the basic information, and exclude items related to household registration changes and registration place).
 - Bottom-right: '최초인감신고일자 기준으로 이후의 주소이동 사항만 조회됨' (Search for address change items only based on the first seal report date).

The bottom of the screen shows a navigation bar with '인감대장변경내역' (Seal Register Change History), '인감원기설정' (Seal Original Setting), '인감보존(내보내기)' (Seal Backup (Export)), '유지력' (Maintenance), '취지권' (Acquisition Right), '출공료' (Fees), and '도움말' (Help).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가. 8110인감대장관리 ◆ 인감부활 및 말소처리

인감부활

작업구분을 '수정'으로 하여 민원인 조회

작업구분 수정 | 자유면동 | 정상
주민등록번호 [690921-1]
제1쪽 제2쪽 제3쪽 4 서면
본인 서면 2000-03-13
인감상태 41-주민등록에의거말소
10-정상
인 감
30-인감신고말소
31-인감직권말소
40-주민등록사망
41-주민등록에의거말소
스캔입력

인감상태를 '10-정상'으로 변경함

인감말소

작업구분을 '수정'으로 하여 민원인 조회

작업구분 수정 | 자유면동 | 정상
주민등록번호 [690921-1]
제1쪽 제2쪽 제3쪽 4 서면
본인 서면 2000-03-13
인감상태 41-주민등록에의거말소
10-정상
인 감
30-인감신고말소
31-인감직권말소
40-주민등록사망
41-주민등록에의거말소
스캔입력

인감상태를 '30-인감신고말소', '31-인감직권말소', '40-주민등록사망' 중 하나로 변경함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가. 8110.인감대장관리

◆ 인감주소이동사항관련 참고사항(2010.04.28에 반영)

-주소변동사유가 '주민등록에 의한 실종말소' 일 경우 인감주소이동사항에 다음과 같이 전입일자과 변동일자를 동시에 표기한다.

인감관리-인감대장관리 (RSROC201000W)

작업구분: 열람 | 자동연동 |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 전화: 02-351-5460

주민등록번호: 441001-2782817 | 성명: | ? 본인확인 | 재입력

제1쪽 | 제2쪽 | 제3쪽 | 4 서면신고

주민등록번호	4 4 1 0 0 1 -	인 감 대 장	거주지
번호	2 7 8 2 8 1 7		
성명 (한자)	김순자 金順子		최종관리 최초인감신

주소이동사항	지번주소	(용/반)	전입
		경상북도 영일군 구룡포읍 병포리 157	25/
	[법률제4774호(94.6.3)도농복합형시설치]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157	25/	행정구역변경 1995.01.0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154-8	25/	실제지번정정 2003.07.3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154-8 [미국]	25/	현지이주말소 2007.01.23
	[포항시 조례 제 21호에 의거 통반변경]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154-8	88/88	통반변경 2008.12.16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154-8	88/88	직권재등록 2010.04.15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154-8	88/88	2010.04.14 생사불명 기간만료 2010.04.15 실종말소(11호통보)

인감대장변경내역 | 인영법거설정 | 02-351-5460 | 02-351-5460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가. 8TIO.인감대장관리

◆ 개인메모사항 열람기능

-개인메모사항에 기재된 내역이 있다면 그 기재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주소	주소	지번주소	(종/인)
1 [법률9774호 (09.12.10) 도로명주소법, 공법관계의 주소연결]	[법률9774호 (09.12.10) 도로명주소법, 공법관계의 주소연결]	[법률9774호 (09.12.10) 도로명주소법, 공법관계의 주소연결]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90번길 8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리 100	1/1	도로명주소 2011.10.30
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로길162번길 30-1, 100동 179호 (C)차인물론발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리 C차인물론발간 103-179	1/1	실제 도로명주소 2015.08.06
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로길162번길 30-1, 100동 179호 (C)차인물론발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리 C차인물론발간 103-179	1/1	신규발소 2016.06.01
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로길162번길 30-1, 100동 179호 (C)차인물론발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삼정리 C차인물론발간 103-179	1/1	정리재등록 2016.06.03

상명	주민등록번호	작성일자	구분	제 목
고 외동	700105-11	2016-09-01	사 고	타인사실 인감발급주의

제 목 [타인사실 인감발급주의] 작성자 작성자행정기관코드

내용 [사실 인감발급주의]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가. 8110.인감대장관리

◆ 개인메모사항 열람기능

-개인메모사항의 기재는 5329.개인메모사항정리 업무에서 입력 가능하다.

자료관리	인감	시군구	관련업무	SMS	시스템기본설정	정보
51. 코드관리						
52. 영부관리						
53. 직권정리			5311. 세대일반사항정리			
54. 관내현황.통계			5312. 세대현 주소정리			
55. 알뜰자료처리			5313. 쌍생아순서정리			
56. 지역번호열람			5314. 삭선자정리			
5810. 읍면동마감			5321. 개인일반사항정리			
5820. 일일조회/처리현황			5322. 주민등록증발급사항정리			
59. 자료입력관리			5323. 현등록기준지정리			
화상자료			5324. 등록기준지이력정리			
한자성명보정			5325. 세대개인주소이력정리			
			5326. 성명이력정리			
			5327. 주민등록번호이력정리			
			5328. 동관인사사항정리			
			5329. 개인메모사항정리			
			5330. 세대별주민등록표작성입력			
			5340. 개인별주민등록표작성입력			
			5350. 세대및개인직권삭제요청			
			5351. 자료삭제승인			
			5360. 직권정리내역알림및출력			
			5390. 세대및개인직권전송			

직권정리-개인메모사항정리 [RSROC32300KW]

성명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조회]

개인메모사항	메모작성일자	메모종류	메모제목

작성일자 : _____ 메모구분 : _____ 메모작성일자 : _____ 소속기관 : _____

제목 : _____

[인] [출] [삭] [복] [도움말]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가. 8110.인감대장관리 2) 2쪽 (인감신고사항)

서면신고를 선택했을 경우에만 4서면신고 페이지에 입력가능

신규신고 시에는 무조건 '정상'으로 입력함
10-정상
30-인감신고말소
31-인감직권말소
40-주민등록사망
41-주민등록예외거말소
42-사망직권말소

신규작업으로 조회했는데 인감도장이 있다면 기존 재외국민주민등록 자동 인감이 있는 경우 (도장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는 스캔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

① 인감증명발급 시 다음면동 담당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기재: 성명정정시 자동 기재됨
② 인감보호신청을 본인과 처로 한 경우이나 같은 세대에 등록된 처가 '이혼'등으로 사유로 11호통보를 받아 동거인으로 정리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을 경우, 처000의 인감발급자격 상실등의 안내문구를 기재
③ 사망사실을 확인 했을 경우 안내문구 기재

인감대장을 '신규' 등록시 인감발급사실통보신청을 한 경우에 신청여부와 휴대전화번호, 통보내역을 입력
이 외에는 8180.인감발급사실통보신청 (SMS/우편) 메뉴에서 신청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가. 8110.인감대장관리

Q&A) 재등록시 인감 자동 부활이 안되는 경우

- ◆ 인감이 존재하는 대상자의 재등록시 등록구분이 **40-말소자, 41-사망자, 43-거주불명자, 44-재외국민거주불명자** 이면서 인감상태가 **10-정상, 40-주민등록사망, 41-주민등록에의거말소** 인 경우 자동 부활된다.
- ◆ 8110.인감대장관리 업무 2쪽에서 열람을 해보면 인감상태가 **30-신고말소, 31-직권말소상태, 42-사망직권말소**인 경우도 주민등록상태와 관계없는 인감고유의 말소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재등록 된다고 자동 부활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기인감대장을 열람하여 특이사항이 없다면 인감대장관리 2쪽에서 10-정상으로 수정하고 저장한다.
- ◆ 주민등록말소 시 현지이주, 이민출국, 국적상실로 말소된 경우는 다른 신분으로 생성된 인감대장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감대장의 말소처리 후 내국인 인감대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등록 시 자동 부활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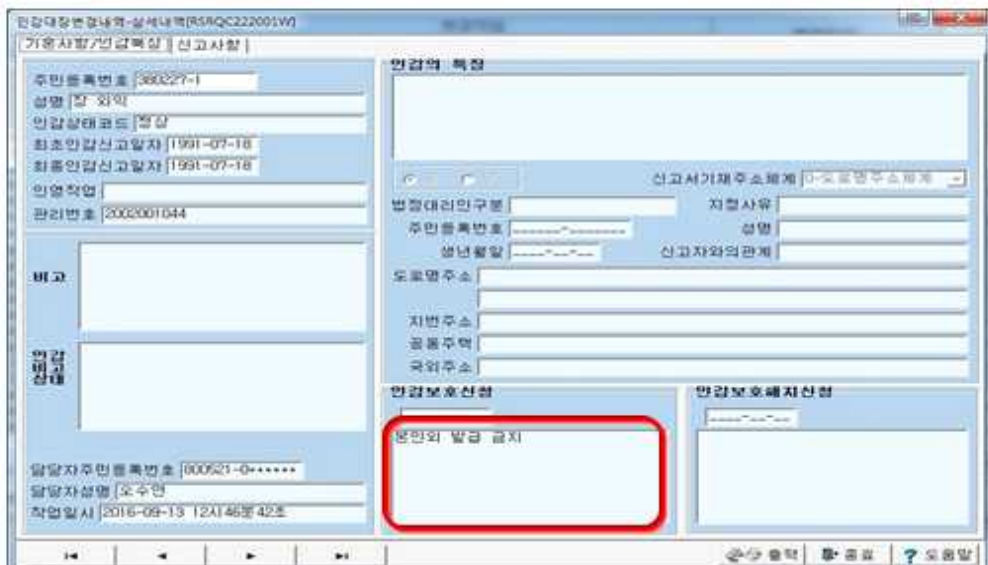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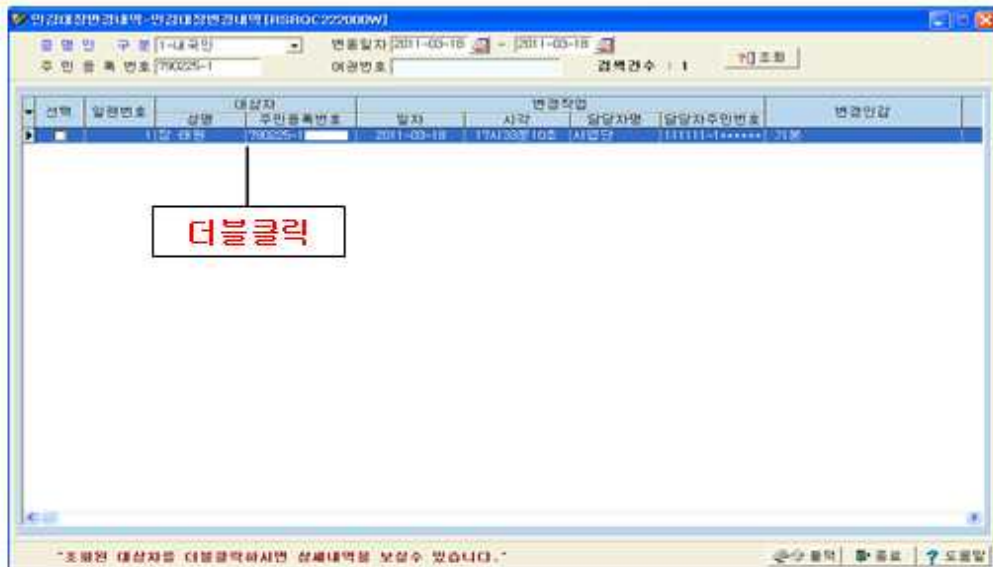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가. 8TIO.인감대장관리

◆ 인감보호(해지)신청이력 조회

8150.인감대장변경내역 업무에서 인감보호(해지)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가. 8110.인감대상관리 - 재외국민 영주귀국 시 인감전환

- ◆ 재외국민 영주귀국 시 기존인감(재외국민, 재외국민내거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를 내국인 인감으로 전환할 수 있다.
- ◆ 8110 메뉴에서 신규로 조회 시 기존에 재외국민주민등록자 인감이 존재하면 자동으로 인영을 가져온다.
- ◆ 재외국민이나 재외국민 내거소신고자 인감 전환시 **휴인감확인** 버튼 클릭 후 아래 사진과 같이 기존인감 조회 후 전환한다.
- ◆ 재외국민주민등록자 인감 전환시 자동으로 2쪽에 인감 인영이 조회 되므로 **휴인감** 확인을 하지 않는다.

주민등록자外 탭 선택 후 전환할 인감에 맞춰 대상자구분을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나 거소번호를 넣고 조회

휴인감확인

전환할 인감이 조회되면 확인버튼 클릭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 8453.재외국민영주귀국사실통보

- ◆ 재외국민 영주귀국시 기존인감을 가지고 있는 증명청으로 통보를 보내 기존 인감을 이송 받아야 한다.
- ◆ 내국인 인감대장에서 풀인감확인 창에서 전환한 인감은 기존 증명청으로 자동으로 통보가 간다.
- ◆ 인감담당자는 영주귀국 한 사람의 기존인감을 확인해 기존인감 증명청에 통보를 보내야 한다.

재외국민 인감 증명청에 통보

재외국민국내거소자 인감 증명청에 통보

재외국민주민등록자 인감 증명청에 통보

통보일자	수신행정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성명	분년월일	인감신고일자	성별
2015-02-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910820	NR	박 외합	1991-08-20	2015-02-23	여

통보를 보내려면 '추가'버튼 클릭한 뒤 대상자 조회 후 통보버튼 클릭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나. 8120.인감대상관리-재입국민

제1쪽 제2쪽 제3쪽 4.서면신고

인 감 신고 관

인 감
신고 문면 서면

이민출국 또는 현지이민 통보를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민통보 일자

최초신고
최종신고

대상 10-정상

말소일

사 전 지 문

공동주택
국외주소

인 감 영 보호신청

인 감 보호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

담당자

병정대리인 유 무 사유 0-정상 신고서기재주소체계

성명 1-내국인 확인

생년월일 신고인과관계

비 고

신청여부 신청 해제
동 보 휴대전화번호
선 문인발급 우민통보 SK통보
청 대리발급 우민통보 SK통보

최종신고일 경우에는 최초신고일자와 동일하며, 인감변경신고시 신고일자 입력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다. 8130.인감대장관리-입국인

[작업구분]
신규
입감
이름
수정
삭제

인감관리-외국인인감관리 [RSP0C203000W]

외국인등록번호 0106735

제1쪽 제2쪽 제3쪽 4.서면신고

알려번호 00000010

외국인등록번호 00000000

인 감 대 장

(외국인용) 승명성 |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인성(성자) OOH HARM () 주요출입국/신분변동보기

출입국성명 OOH HARM 기타성명 국적 일본

입국일자 1996-09-17 재입국허가 재류자격 59 상세 재류기간 --- -- -- 재류종류 --- 직업 ---

생년월일 1966-04-05 여권번호 20106735 비귀환일자 999-12-31 유효기간 009-12-31 출입국확인일 2011-03-18

순서	신고일	도도명주소	지번주소	신고사유
1	2003/10/11			경상북도 보문군 보은면 수경리
2	2003/10/15			경상북도 보문군 산외면 미식리 419-6

국 내 재류지 변경사항

신고일 --- -- -- 신고사유 --- [출입국자료보기]

도도명주소 [법정동<->도도(갈)명]

지번주소

공동주역 [등록] [수정] [삭제]

[인감발급] [인감취소] [도움말]

2009년 3월 여권번호, 여권발급일자, 유효기간 수정 기능 추가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다. 8130.인감대장관리-외국인

Q&A) 외국인 인감신고자가 원전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

- ◆ 체류자격이 이전과 달라지더라도 외국인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예전의 인감대장을 부활처리 후 사용하도록 한다.

부활처리

The screenshot shows a web interface for seal management. At the top, there is a dropdown menu for '작업구분' (Operation Category) with '수정' (Modify) selected. Below this are tabs for '제1쪽', '제2쪽', '제3쪽', and '4.서면'. The main section is titled '인 감' (Seal). It includes radio buttons for '신고' (Report) with '본인' (Myself) selected and '서면' (Paper) unselected. There are input fields for '최초신고' (Initial Report) and '최종신고' (Final Report), both containing '2010-04-01'. A '상태' (Status) dropdown menu is open, showing '10-정상' (10-Normal) selected, with other options '30-인감신고발소' and '31-인감직권말소'. A callout box points to the '작업구분' dropdown with the text '작업구분을 '수정'으로 하여 조회' (Set operation category to 'Modify' to search). Another callout box points to the '10-정상' status with the text '인감상태를 '10-정상'으로 수정' (Modify seal status to '10-Normal').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라. 8140.인감대장관리-국내거소신고자

1) 1쪽 (기본사항)

인감증명서에 출력되는 성명

체류여부확인

출입국성명 () 기타성명 상세 국적

거소신고일 체류기간 체류자격 직업

여권발급일 유효기간 생년월일 출입국확인일

주민등록번호

출입국자료보기

증명서상에 주민등록번호를 ()안에 병기하고자 할 경우 입력하여야 함 서식14호의 4번사항

출입국 자료는 변경불가하나, 여권번호, 여권발급일, 유효기간은 변경가능함

출입국주소 확인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라. 8140.인감대장관리-국내거소신고자

2) 2쪽 (인감신고사항)

출입국사진 자료

말소 또는 부활 시 상세 사항 기재
예)2004.9.1 신고말소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라. 8140.인감대장관리-국내거소신고자

Q&A) 여권번호 수정관련

- ◆ 외국인, 국내거소자의 초기 여권정보는 체류지 신고, 거소 신고 당시의 여권정보로서 이후 여권정보가 변경되더라도 인감대장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변경된 여권정보는 인감담당자가 민원인의 여권을 확인 후

8130.인감대장관리-외국인 업무나

8140.인감대장관리-국내거소자 업무에서 입력을 해야 한다.

작업구분을 '수정'으로 해서 조회 후 여권번호, 여권발급일, 유효기한을 입력하고 저장

출입국사무소의 여권발급일과 비교하여 미래일때만 여권정보가 수정됨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마. 8170.인감대장관리-재외국민주민등록자

- 8451.재외국민주민등록사실통보 메인화면

- ◆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한 민원인의 기존 재외국민,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을 가지고 있는 증명청에 통보를 보낼 수 있다.
- ◆ 기존에 재외국민, 국내거소인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재외국민주민등록자 인감을 등록할 때 전환한 인감은 해당 증명청으로 자동으로도 통보가 가지만 전환하지 않은 인감은 [8451] 메뉴에서 직접 통보를 보내야 한다.

The screenshot shows the '8451. 재외국민주민등록사실통보' main screen. It features a table with columns for '통보일자', '수신행정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 '인감신고일자', and '성별'. A table row is visible with the following data: 통보일자: 2015-02-12, 수신행정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주민등록번호: 910820, 여권번호: , 성명: 박 외삼, 생년월일: 1991-06-20, 인감신고일자: 2015-02-12, 성별: 여.

Annotations on the screenshot inclu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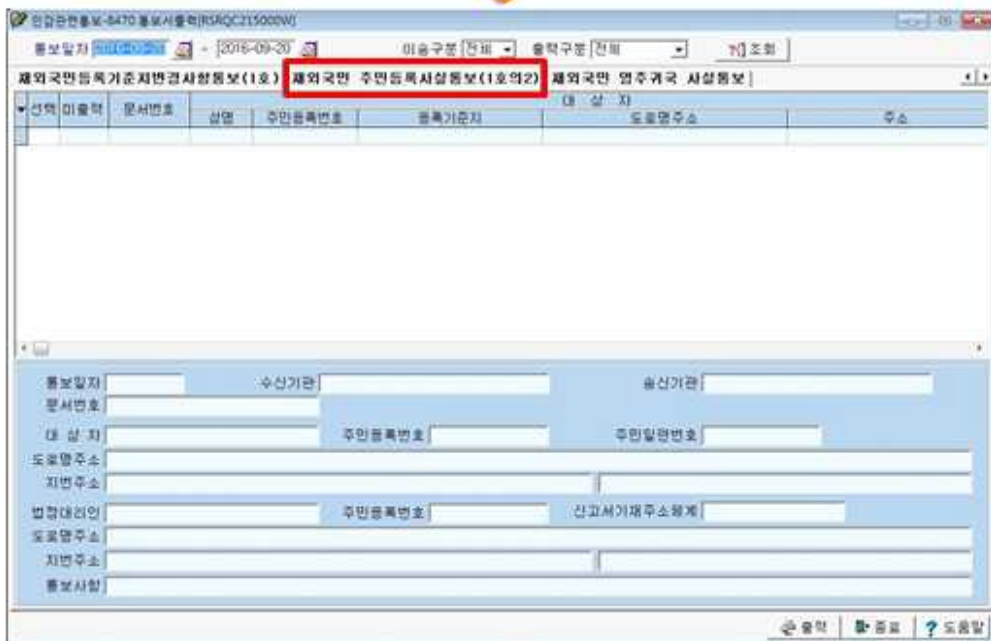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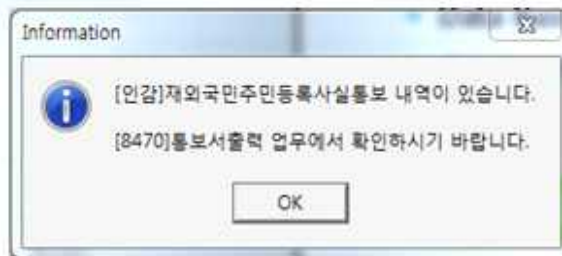
- A yellow box pointing to the '재외국민 인감을 가지고 있는 증명청에 통보' button.
- A yellow box pointing to the '재외국민국내거소자 인감을 가지고 있는 증명청에 통보' button.
- A red box highlighting the '재외국민주민등록사실통보' and '국내거소신고자주민등록사실통보' tabs.
- A cyan box pointing to the '추가' button at the bottom, with the text: '새로 통보를 보내려면 '추가' 버튼을 클릭한 뒤 대상자 조회 후 통보버튼 클릭'.

At the bottom of the screen, there are buttons for '추가', '취소', '종료', and '? 도움말'. The '추가'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마. 8170.인감대장관리-재외국민주민등록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인감 관련 알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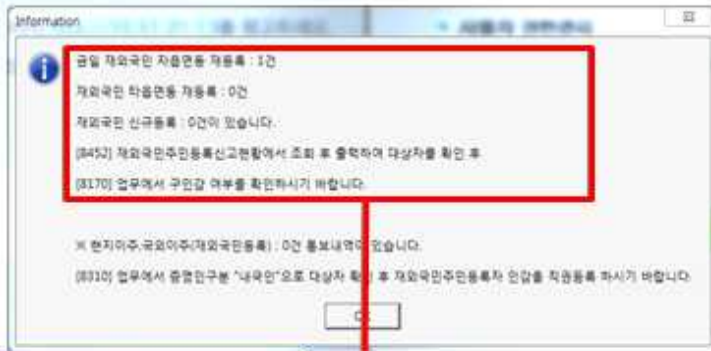


◆ 통보서 출력 후 기존 인감 확인 후 말소상태가 아니라면 직권 말소(재외국민, 재외국민 국내거소 인감)처리 한 후 인감대장 이송 한다.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마. 8170.인감대상관리-재외국민주민등록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인감 관련 알람



조회조건(신규등록, 자음면동 재등록, 다음면동 재등록) 선택 아무것도 선택 안할시 전부 검색

출력 여부 설정

인국관리번호-8452.재외국민주민등록신고현황(85AQC231000V)

처리기간 [2015-01-13] ~ [2015-02-13] 업무명 [] 출력구분 [전부] [조회]

사건일련번호	직접일시	업무명	발부처리사유	세대주성명	세대주 주민번호	신고인성명	신고인 주민번호	직접자성명
1	2015-01-21 18:25:52	자음면동재등록	직권	김 외삼	201015	김 외삼	201015	강태영
2	2015-01-23 13:31:45	자음면동재등록	직권	김 외희	580627-	김 외희	580627-	강태영
3	2015-01-23 13:38:40	자음면동재등록	직권	안 외훈	780527-	안 외훈	780527-	강태영
4	2015-01-27 16:06:49	다음면동재등록	신고	박 승훈	530127-	박 승훈	530127-	유인혜
5	2015-01-27 16:07:50	다음면동재등록	신고	권 인혁	531004-	권 인혁	531004-	유인혜
6	2015-01-29 11:52:10	신규등록	직권등록	김 외호	050125-	-	-	강태영
7	2015-02-03 16:54:45	자음면동재등록	직권	김 외주	000620-	김 외주	000620-	강태영
8	2015-02-11 18:34:54	자음면동재등록	직권	박 외현	871119-	박 외현	871119-	강태영
9	2015-02-11 18:36:59	자음면동재등록	직권	이 외나	789517-	-	-	강태영
10	2015-02-11 18:44:31	자음면동재등록	직권	김 외준	040905-	김 외준	040905-	강태영
11	2015-02-11 18:45:12	자음면동재등록	직권	최 외철	900415-	최 외철	900415-	강태영
12	2015-02-11 18:46:11	자음면동재등록	직권	박 외철	910820-	박 외철	910820-	강태영
13	2015-02-12 18:43:39	자음면동재등록	직권	방 외훈	950902-	방 외훈	950902-	강태영

출력할 대상자 선택 후 '출력'버튼 클릭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마. 8170.인감대장관리-재외국민주민등록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인감 관련 알람

The image shows a software interface for managing resident registration information. At the top, an 'Information' window displays statistics: '전일 재외국민 자음면통 자동록 : 1건', '재외국민 다음면통 자동록 : 0건', and '재외국민 신규등록 : 0건이 있습니다.' Below this, a red-bordered box contains two lines of text: '※ 현직이주,국외이주(재외국민등록) : 0건 통보내역이 있습니다.' and '※8170 업무에서 증명인구분 "내국인"으로 대상자 확인 후 재외국민주민등록자 인감을 직권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A red arrow points from this box to the '증명인구분' dropdown menu in the main form, which is currently set to '내국인'. Another yellow-bordered box contains the text '사유를 74-현직이주재외국민등록 75-국외이주재외국민등록으로 선택한 뒤 조회', with a red arrow pointing to the '사유' dropdown menu in the form, which is currently set to '74-현직이주재외국민등록'. The main form includes fields for '관리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도쿄영주소', '신교연', '지번주소', '공공주택', '출부', '미종', and '배고', along with various checkboxes and buttons.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마. 8180.인감발급사실통보신청(SMS/우편)

- 민원인이 인감발급사실통보신청(SMS/우편) 을 한 경우 8180에서 신청/변경/해지 할 수 있다. 단, 인감대상 신규 작성시 신청한 경우는 대상자 구분별로 각각 8110, 8170, 8120, 8130, 8140에서 신청한다.

인감	시군구	관련업무	SMS	본인서명사실확인	시스템기본설정	장보기	공지
81.인감관리				8110.인감대상관리			
82.인감증발급				8170.인감대상관리-재외국민주민등록자			
83.인감관리대상				8120.인감대상관리-재외국민			
84.인감관리통보				8130.인감대상관리-외국인			
85.장애인감업무				8140.인감대상관리-국내거소신교자			
86.센터인감관리				8150.인감대상변경내역			
				8160.인감차인자관리			

인감발급사실통보신청서에 의해 SMS/우편 신청한 경우 신청사항을 입력 후 "인감통보SMS신청" 버튼을 눌러 저장.

인감관리-8180.인감발급사실통보신청(SMS/우편)(RS9QC232000W)

대상자구분 [내국인] | 인감구분 [지등면동] | 전라북도 | 임실군 | 임실읍

주민등록번호 [780119-1] | 성명 | | 전화번호 [02-2076-3]

신 신청사항

신청구분 [변경] | 신청일자 [2016-02-02] | 휴대전화번호 [010-1111-2222] | 본인발급 SMS 통보 | 대리발급 SMS 통보

인감발급사실통보신청현황 조회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전화번호 | (-을 제외하고 입력) | 조회

연월일시	인감구분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신청구분	유대번호	통보구분	통보구분	구분
2016.01.25 14:04:00	이	780119-1	이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변경	010-0000-0000	대리SMS	내국인	장
2016.01.27 13:45:56	이	780119-1	이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신규	010-5292-3476	본인/대리SMS	내국인	장
2016.01.27 14:01:45	이	780119-1	이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변경	010-5292-3476	대리SMS	내국인	장
2016.01.27 14:02:46	이	780119-1	이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해지			내국인	장
2016.01.28 11:00:28	원	680107-1	원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신규	010-5292-3476	본인/대리SMS	내국인	장
2016.01.28 16:39:03	원	680107-1	원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변경	010-2222-3333	본인/대리SMS	내국인	장
2016.01.28 21:31:42	원	680107-1	원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신규	011-111-1111	본인/대리SMS	내국인	장
2016.01.28 21:57:52	원	680107-1	원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해지			내국인	장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를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조회버튼을 누르면, 8180에서 신청한 해당 읍면동의 인감발급사실통보신청 내역만 모두 조회, 인감대장에서 입력한 신청한 내역은 조회 안됨.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바. 8210.인감증명발급

1) 인감증명발급 메인화면

법정대리인 지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확인

특징, 인감보호신청사항과 인감보호해지신청사항은 반드시 재확인

대리발급의 경우에는 인감자의 주민등록증 상태확인

수수료면제대상조회로 수수료면제 여부 확인

[참고] 신청인확인으로 확인한 사항 기록, 확인통과하지말고 반드시 신청인의 전산자료를 확인할 것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 서명기 입력 가능

증상대 확인 | 발급내역배정 중발급일 | 2000-02-18

법정대리인 확인

신청인 확인

본인 신분증 조회

서명기 입력

인감증명발급-8210.인감증명발급[RSRQC205000W]

연결구분 [자유면동]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 전화 [053-301-3014]

주민등록번호 [300812-1] | 성명 [미 외록] | ?] 조회 | 재입력 | ?] 조회결과유지 이전발급번호

주민번호 [300812-1] | 성명 [미 외록] | 등록구분 [거주자]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 동 [101] | 송 [102] | 호 [308,309] | 공 [아파트]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 308,309 | (19 /)

보호해지신청

일반용 동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 동 해수자수 명 주소이력출력 [아니오]

수수료면제 [아니오] | ?] 수수료면제대상조회 | 자동조회 면제사유

비고(법정대리인)

소체계

지번주소

공동주역

원자성명 李泰玉 | 동초분발급 | 본인서명확인세발급 | 인영발기설정 | 프린터설정 | 윤출력 | 종료 | ?] 도움말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바. 8210.인감증명발급

2) 내국인 신청인확인

본인(중명인)확인(R5RQC201001W)

주민등록자(내국인/재외국민) | 주민등록자외

거주지 구분 [자율면동] 주민등록번호 [680613-] 성명 [안 수연] 조회 재입력

한자성명 [安秀瑛]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 [] 읍 [] 호 []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11] ([2] / [3])

공공주택 []

주민등록증 최종발급일 [] [] [] [] [] [] ? 센터증장보영합

세대원 확인	순번	세대주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0001	본인	안 수연	680613-1769779

[참고] 사진이 증사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전 사진을 열람할 수 있음

주민등록증이 있는 대상자인데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서 [5590]읍면동화상자료복구에서 센터의 사진, 지문 자료로 복구함

문건면허를 인위여부 조회

화상조회

확인

취소

도움말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바. 8210.인감증명발급

3) 내국인인 신청인확인

본인(중명인)확인[RSRQC201001W]

주인등록자(내국인/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

대상자구분: **내국인**

여권번호: []

한자성명: []

영문성명: []

출입국확인일: []

성별: []

도로명주소: []

(국내거소지) 읍/군/구 () - [] - [] ()

국내거소지: []

공동주택: []

연면적: []

거소신고일: []

영주권번호: []

출입국성명: []

주요출입국/신분변동사항: []

지문열람본인동의사항거재

사진확인 지문확인 인감확인

인감

확장조회

확인

X 취소

? 도움말

인감대장에 있는 주소를 보여주므로 인감대장이 없던 대상자는 출입국버튼으로 주소 조회 후 입력

제류기한

제류여부: 제류중, 출국, 기타(부동산등기)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바. 8210.인감증명발급

4) 발급번호 입력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인 경우 매수자 명수만큼 매수자 현황을 전산으로 입력 가능

5) 매수자사항 입력

매수자를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하여 입력하지만 내역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상세내역"에 등록한다. "상세내역"에 등록된 내역이 매수자 사항으로 출력, 저장

총 매수자수 중 몇번째를 입력하고 있는지 보임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바. 8210.인감증명발급

6) 인감증명서

확인사항 - 성명, 한자성명, 인감도장, 발급번호 등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민원인이 기재할 수 있도록 빈란이 나오지 않음

주소이력을 '유'로 발급하였을 경우 [주소이력있음], 매수자가 2인이상일 경우 [매수자사항있음]이 출력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바. 8210.인감증명발급

7) 매수자사항 별지

인감증명서매수자사항

1	성명(법인명)	IAM SAMSAMSAM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640812-5
	주 소 (법인 소재지)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관향로 11-22		
2	성명(법인명)	(주)한리북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23456
	주 소 (법인 소재지)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관향로 44-55		
이 하 여 백				

매수자가 총 3명인 경우 대표 1인
은 앞장에 나머지 2명은 별지로
출력됨

[42014500457103756065001-000220225040502000420]주소지 증명창 : 임실읍(1/1)

[다음장없음]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바. 8210.인감증명발급

◆ 민원 24 사이트의 인감증명진위여부 확인

민원24 <http://www.minwon.go.kr> 홈 > 확인서비스 >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본인 발급일 시 나오는 메시지

■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발급기관(시군구) *	검색 <input type="text"/>
발급일자 *	<input type="text"/> (예: 20050117)
주민등록번호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여권번호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입력하세요.
확인용발급번호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입력확인 *	<p>× 아래에 있는 숫자를 입력확인에 입력하세요.</p> <p>3712 <input type="text"/></p>

입력한 내용은 본인이 발급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리 발급일 시 나오는 메시지

■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발급기관(시군구) *	검색 <input type="text"/>
발급일자 *	<input type="text"/> (예: 20050117)
주민등록번호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여권번호	<input type="text"/>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입력하세요.
확인용발급번호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입력확인 *	<p>× 아래에 있는 숫자를 입력확인에 입력하세요.</p> <p>2358 <input type="text"/></p>

입력한 내용은 대리인이 발급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바. 8210.인감증명발급

◆보건복지부 사망인심자 정보 연계

- ◆ 거주지 증명청에 전달된 인감말소통보서는 8310.인감관리대장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작업일자를 입력 후 사유를 '96-사망직권말소'로 입력 후 조회

인감관리대장-인감관리대장 [RSROC207000W]

증명인구분 | 1-내국인 | 작업일자 | 2011-09-26 ~ 2011-09-28 | 인감대사적용 | ? | 조회 | 재입력

관리번호 | _____ | 주민등록번호 | _____ | 사유 | 96-사망직권말소

관리번호	신고인			신고인			공용주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공용주력	
▶ 2002-013607	안정기	640315-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놀대리	경	

관리번호 | 2002-013607 | 증명인구분 | 내국인 | 등록일자 | 2011-09-26 | 000001

성명 | 안정기 | 주민등록번호 | 640315-1

도로명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지번주소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놀대리 | 333 | (27 /)

공용주력 |

송부 | 기관 | 담당자 |

이송 | 기관 | 담당자 |

배고 | 사유 | 96-사망직권말소 | 최초신고일자 |

검색건수 : 1 | 입력 | 수정 | 삭제 | 저장 | 출력 | 종료 | 도움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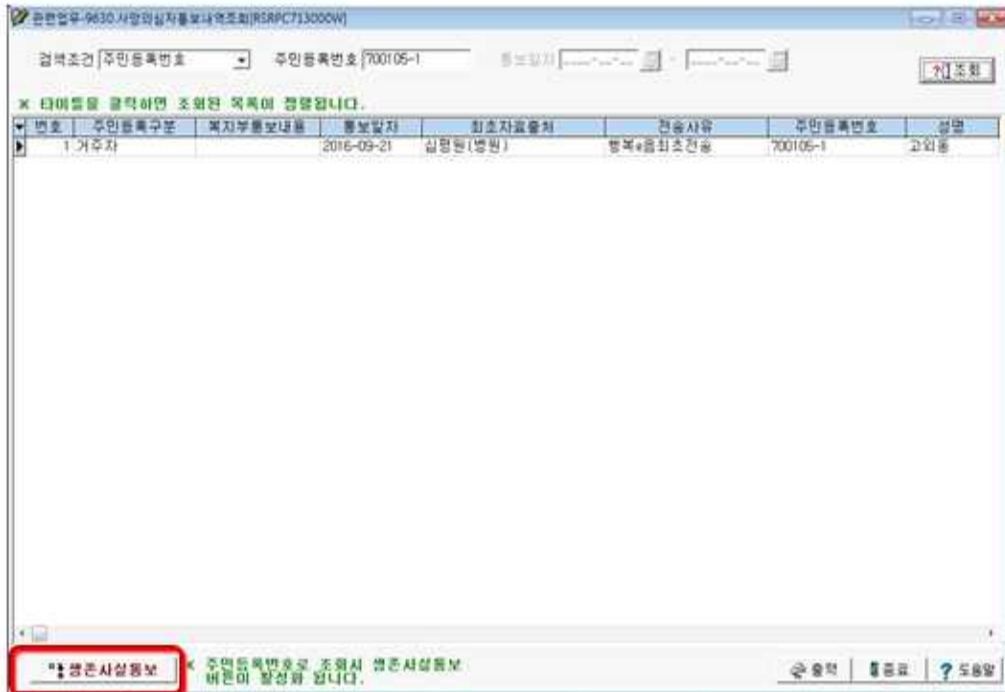
출력 버튼을 클릭 후 NO 버튼을 누르면 인감말소통보서가 출력됨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바. 8210.인감증명발급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정보 연계

- ◆ 사망의심자정보 내용은 거주지 증명청에서 9630.사망의심자정보내역조회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며, 사망의심자 중 생존사실이 확인(본인이 내방하여 증 진위확인 단말기를 통한 생체지문 및 사진 확인 등)된 경우에 생존자도 변경 등록할 수 있다.



대상자를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후
 '생존사실정보' 버튼을 누르면 생존자로 변경됨.
 단, 이미 사망의심자정보에 의해 인감대장이 말소됐으면
 인감대장을 조회하여 '10-정상' 으로 상태를 수정해야 함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바. 8210.인감증명발급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 ◆ 조회 시 대상자가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입니다. 라는 팝업창이 뜰 경우 인감담당자는 민원인이 가져온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후견인(법정대리인)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한다.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사. 8220.인감증명발급-내국인인

The screenshot shows the web application interface for issuing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s for domestic residents. The interface includes several sections: '신원구분' (Source Category) with a dropdown menu set to '재외국민' (Overseas Citizen);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ield; '주소이력' (Address History) section with dropdowns for '주소이력출력' (Address History Output) and '주민등록번호출력'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utput), both set to '아니오' (No); and '인감대장' (Resident Registration Ledger) section with a dropdown for '인감대장출력' (Resident Registration Ledger Output) set to '아니오'. Callout boxes provide additional instructions: one for '신원구분' explains that '재외국민, 외국인, 외국국적 국내거소자' (Overseas citizens, foreigners, domestic residents with foreign nationality) can be selected; another for '주민등록번호' explains that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 domestic residence notification number) can be entered, with a note that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는 반드시 확인' (Foreigners and domestic residence notification registrants must be confirmed); a third for '인감대장' explains that '인감대장 상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대상자는 생년월일출력선택' (For those who did not enter thei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the ledger, select 'Output by Birth Year/Month/Day'); and a fourth for '주소이력' explains that '재외국민의 경우는 선택불가, 주소이력이 1개 이상일 경우에만 선택가능' (For overseas citizens, selection is not possible; selection is only possible if there is more than one address history).

※ 2015.1.22 부터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은 8230.인감증명발급-재외국민 주민등록자에서 발급한다. (재외국민거주자, 재외국민출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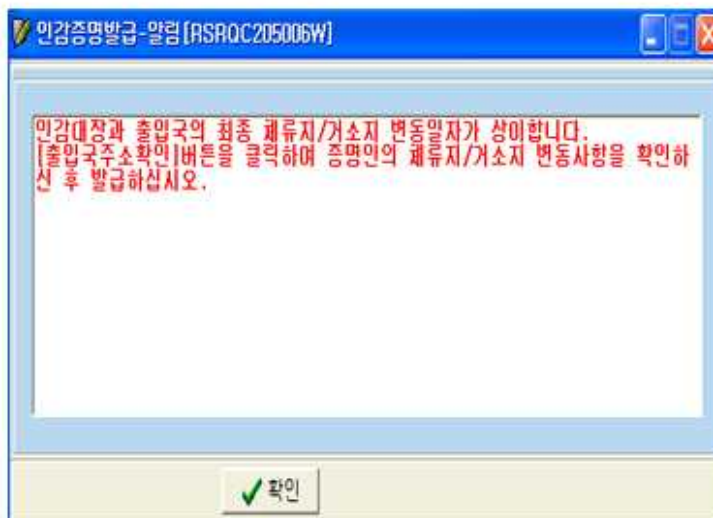
※ 2016.7.1 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을 재외국민 인감으로 직권전환 함에 따라 재외국민 국내거소자 인감은 출력 불가하다.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사. 8220.인감증명발급-내국인인 Q&A) 외국인, 국내거소자 인감발급

◆ 외국인이나 국내거소자의 인감발급 시

'인감대장과 출입국의 최종 체류지/거소지 변동일자가 상이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8130.인감대장관리-외국인이나 8140.인감대장관리-국내거소자 업무에서 최종 체류지/거소지 변동일자를 출입국 주소의 최종신고일로 변경을 하여야 한다.



◆ 체류자격 A1, A2, A3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2012.03.28 추가)

M1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2013.04.02 추가)

기존 F5(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체류기한이 없어도 발급가능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사. 8220.인감증명발급-내국인외 Q&A) 외국인, 국내거소자 인감발급

신고일 수정방법

1. 작업구분을 '수정' 으로 하여 대상자 조회를 한 다음

 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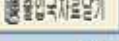



대상자 조회

거소신고일	순서번호	주소지	출입국확인일	주민등록번호
	1	2003-04-29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현대아파트 103-2001	2010-01-21	450416-2782834
여권번호				
통인감확인				
등록거주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등록거주지관할점명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국내거소지	순서번호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변동사유
	1	2003/12/21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 (1/1) 1	환지처분
현경사항				
신고일	2003-04-29	신고사유	48-환지처분	

신고일이
다름

2. 신고일을 수정한 다음  을 누르고 저장을 합니다

신고일 수정

국내거소지	순서번호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변동사유
	1	2003/12/21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 (1/1) 1	환지처분
현경사항				
신고일	2003-04-29	신고사유	48-환지처분	
도로명주소	<input type="text"/>			
지번주소	<input type="text"/>			
특수주소	<input type="text"/>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사. 8220.인감증명발급-내국인인

Q&A) 재외국민과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증명서 비교

◆ 재외국민 인감증명서에만 여권번호 출력란이 있고

재외국민 국내거소자 인감증명서에는 여권번호 출력란이 없다.

※ 2016.7.1 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을 재외국민 인감으로
직권전환 함에 따라 재외국민 국내거소자 인감은 출력 불가하다.

재외국민인감증명서

[별지 제14호 서식] 인감증명발급사실 확인용 발급번호 1250 - 277 - 1

*이 용지는 필요시행용이기 되어있음

여권번호	a a a - - - -	인감증명서 (재외국민)	본인	대리
	- - - - -			○
수번등록번호	(500721-1616922)	인 감		
성명	김기태			
(한자)	(金銀二太)			
주소	주소	연입		
주소	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24-3 비대포상가 202-202	이민출국		

국내거소자 인감증명서

[별지 제18호 서식] 인감증명발급사실 확인용 발급번호 1250 - 276 - 1

*이 용지는 필요시행용이기 되어있음

국내거소 신고번호	730102- 5	인감증명서 (국내거소신고자)	본인	대리
				○
수번등록번호	(400406-2)	인 감		
성명	김영일			
(한자)				
주소	주소	연입		
주소	1 경상남도 진주시 주안동-1	2009.12.21 표지취부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사. 822O.인감증명발급-내국인인

내국인 외 인감발급관련 참고사항(2010.01.20에 반영)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인감발급 시

주민등록상태를 체크하여 ‘사망자’ 나 ‘국적상실자’ 이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면서 인감발급이 불가하게 되며
소관증명청으로 10호/11호서식으로 통보가 가게 된다.

주민등록상태가 사망자인 민원인

The screenshot shows the '인감발급신청서' (In-ink Application Form) interface. A blue information dialog box is overlaid on the form, displaying the message: "주민등록상태가 사망자이므로 인감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In-ink cannot be issued because the resident registration status is deceased). The dialog box has a close button labeled '확인' (OK).

주민등록상태가 국적상실자인 민원인

The screenshot shows the '인감발급신청서' (In-ink Application Form) interface. A blue information dialog box is overlaid on the form, displaying the message: "주민등록상태가 국적상실자이므로 인감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In-ink cannot be issued because the resident registration status is loss of nationality). The dialog box has a close button labeled '확인' (OK).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사. 8220.인감증명발급-내국인인

내국인 외 인감발급관련 참고사항

- 사망 국적상실 통보내역 조회

사망자 인감발급 시 발급 불가가 되고 소관증명청에 통보가 올 (참고사항란에 사유가 기재됨)

인적사항구분	문서번호	송신기관명	수신기관명	국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읍주소
<input type="checkbox"/>	102	10	경상북도 포항시남·경상북도 포항시	김	기태	30215-170117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2	10	경상북도 포항시남·경상북도 포항시	김	기태	30215-170117	

발급일자	2010-01-18	송신기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수신기관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사유구분	1100	문서번호	10	국적	
성명	김 기태	주민등록번호	30215-170117	생년월일	1950-12-13
도읍주소					
지번주소					
인감번호	2010-01-18	참고사항	개요국외 인감발급요청(주민등록상명·사망자)		
국내주소(도읍주소)					
국내주소(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245-14				
거소신고일	..	국외주소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아. 8310.인감관리대장

- ◆ **증명인 신분**을 선택하고 **인감대사작업** 탭을 체크 후 조회를 하면
현재 올면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외국민, 외국인, 국내거소자의 내역** 전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감관리대장-인감관리대장[ASROC207000W]

증명인구분: 2-재외국민 작업일자: 2010-08-19 ~ 2010-08-19 인감대사작업 ?[조회] [재입력]

주민등록번호: _____ 여권번호: _____ 사유: _____

관리번호	신고인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특수주소
0000-000003	최 운정	730725-2	2222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2222-222228	김 재자	111111-1	cc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2222-222229	김 기태	590721-1	aa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현대홈타운 103-303	
2222-222230	최 운정	730725-2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2222-222231	김 태곤	570414-1	d23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2222-222232	김 복순	460416-2	b12a12345ds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2222-222233	김 기태	901213-1	bb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관리번호: 2222-222233 증명인구분: 재외국민 등록일자: 2010-01-11 (000001)

성명: 김 기태 주민등록번호: 901213-1 여권번호: bbb

도로명주소: _____ ?[법정동<->도로(길)명]

신고인: _____ 구룡포리 245 - 16 (11 / 6)

송부: 기관 년월일: _____ 담당자: _____

미송: 기관 년월일: _____ 담당자: _____

배고: 사유: 위-인감신규등록 변동일자: 2010-01-11 최초신고일자: 2010-01-11

검색건수 : 7 [입력] [수정] [삭제] [지우] [출력] [종료] [도움말]

여권번호와 주소가 조회되지만 과거자료일 가능성이 많음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자. 832O.인감증명발급대상

1) 인감증명발급대상

- 인감증명발급대상 참고사항 (2010.4.28 반영)
- 인감발급 시 출력매수를 기록하고 발급대상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인감관리대상-인감증명발급대장[ASROC20000W]

인감증명발급대장 | 인감증명발급내역조회 | 인감용지사용결산내역 |

발급 일자 2010-08-17 | 조회 | 최종발급일자 2010-08-17 | 검색건수 : 1건

발급 내역

발급번호	대상자구분	증명인	인감번호	인감발급일자	인용증 발급제이지수	비고	지문인
120	내국인	김기태	901213-177119	1	1		

인감증명서발급대장

발급번호	발급연월일	인감인원	대리인	발급/교부	용도	무인(인명)	특이사항
1	2010-08-17	김기태	901213-177119	발급	인감증명서		
2	2010-08-17	김기태	901213-177119	발급	인감증명서		
3	2010-08-17	김기태	901213-177119	발급	인감증명서		
4	2010-08-17	김기태	901213-177119	발급	인감증명서		

출력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이 출력되며 서명기를 입력받은 경우 무인란에 사인이 출력됨

인감발급누계수 | 출력 | 출력 | 도움말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자. 8320.인감증명발급대장

2) 인감증명발급내역조회

- 일정기간동안 인감발급한 내역을 증명인구분 별로 조회,출력 한다.

자음면동, 타음면동을 선택할 수 있음

- 자음면동선택 : 현재 기관에서 발급한 인감증명발급내역 조회 가능
- 타음면동선택 : 선택한 기관에서 발급한 인감증명발급내역 조회 가능

인감관리대장-8320.인감증명발급대장(8SRQC208000W)

인감증명발급대장 인감증명발급내역조회 인감용지사용량산대장

자음면동

발급일자 2016-01-01 ~ 2016-02-04 확인용 발급번호 71 조회 검색건수 : 25건

증명인구분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성명 담당자생년월일 담당자성명

인감번호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자	수용구분	발급구분	발급일	발급부	발급인	발급인	발급인	비고
0250-3-1	3	2016-01-12	김관리이	유	1	1	1	1	1	1	
0250-4-1	4	2016-01-12	김관리이	유	1	1	1	1	1	1	
0250-5-1	5	2016-01-12	김관리이	유	1	1	1	1	1	1	
0250-6-1	6	2016-01-12	김관리이	유	1	1	1	1	1	1	
0250-8-1	8	2016-01-12	김관리이	유	1	1	1	1	1	1	
0250-9-1	9	2016-01-12	김관리이	유	1	1	1	1	1	1	
0250-10-1	10	2016-01-12	김관리이	유	1	1	1	1	1	1	

상세내역

확인용번호 0250-3-1 발급번호 3 발급일자 2016-01-12 관내/관외 관내 발급 통교부 통

증명인-성명 이 주민등록번호 780119-1 증명인구분 내국인 증명성 임실군 임실읍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153번길 1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1/1)

신청인-성명 문인 주민등록번호 - 신고서기재주소체계 주소체계변기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배수자-성명 이강화 주민등록번호 270220-1 신고서기재주소체계 지번주소체계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발급누계수정 저장 출력 종료 도움말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자. 8320.인감증명발급대장

3) 인감용지사용결산대장

- ◆ 해당일자를 최초 조회시 그 날의 응지결산이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업무가 끝난 이 후에 조회한다. 이미 당일 집계가 완료되어 수량이 상이한 경우 삭제버튼을 클릭하면서 수정하고자 하는 날짜로 최종집계일자를 변경한 후 웹손란이나 구입란을 수정한다.

인감관련대장-인감증명발급대장 [ASB0C208000W]

인감증명발급대장 | 인감증명발급내역조회 | 인감용지사용결산대장

발급일자 2010-07-30 - 2010-07-30 | 조회 | 원종집계일자 2010-07-30

행정기관별용지사용

전일 잔고	구입	용 지 사 용 현 황				금일 잔고
		발급형태	발급통수	출력배수	웹손	
	인감용지	정상발급	0 통	0 배	프린터웹손	0 배
		발급취소	1 통		부동산관련오류	0 배
					타용지사용	0 배
					기타	0 배
4916 배		계	1 통	0 배	계	0 배
						4916 배

X비고

담당자별용지사용

구분	용 지 사 용 현 황		
	발급형태	발급통수	출력배수
용지사용	정상발급	0 통	0 배
	발급취소	1 통	
계		1 통	0 배

수정 | 인출 | 삭제 | 종료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자. 8320.인감증명발급대상

3) 인감용지사용결산대상

- ◆ **금일잔고 매수 증가시키는 방법** : 타업무용 용지로 인감증명서 발급 후 발급 당일 지나 발급취소를 하지 못한 경우 **타용지사용란에 음수값을** 입력하고 비교란에 사유를 입력한다.

인감증명발급대상-인감증명발급대상 (RSROC208000W)

인감증명발급대상 | 인감증명발급내역조회 | 인감용지사용결산대상 |

발급일자 2010-07-30 ~ 2010-07-30 **21조회** 최종집계일자 2010-07-30

행정기관별용지사용

전일 잔고	구입	용 지 사 용 현 황					금일 잔고
		발급형태	발급통수	환역폐수	폐손사유	폐손폐수	
	인감용지	정상발급	0	0	프린터폐손	0	
		부동산권연오류				-2	
		발급취소	1		타용지사용	0	
					기타	0	
4916		계	1	0	계	-2	4918

X비고

담당자별용지사용

구분	용 지 사 용 현 황		
	발급형태	발급통수	환역폐수
용지사용	정상발급	0	0
	발급취소	1	
계		1	0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자. 832O.인감증명발급대상 및 833O.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

Q&A) 인감발급내역 조회방법

- ◆ 832O.인감증명발급대상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발급기관** 기준으로, 833O.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과 834O.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내국인외는 인감증명서 **발급 당시 거주지 행정기관** 기준으로 조회 가능하다. 내국인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832O 과 833O 에서, 재외국민,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는 832O 과 834O 에서 조회 가능하다.

- 832O.인감증명발급대상 업무와 833O.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의 차이
 - 832O.인감증명발급대상 : 선택한 기관에서 발급한 내역을 조회함
 - 833O.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 834O.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내국인외 : 거주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인감을 발급하면 거주기관에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이 저장되며 그 내역을 조회 가능. 선택한 기관에서 자료제공한 내역을 조회함

Q&A) 특정인(내국인)의 일정기간 동안 모든 인감발급내역조회

2015년에 A동(1~3월), B동(4~6월), C동(7~12월)에 살았던 민원인이 2015년에 인감 발급한 모든 내역을 제공받길 원하는 경우 아래 2가지를 각각 검색하여 제공한다.

※ 어느 동에서나 조회 가능하다.

1. 8320 (1) A동, 2015년 1~3월로 검색
⇒ 1~3월 동안 A동에 살면서, A동에서 발급한 내역 검색
- (2) B동, 2015년 4~6월로 검색
⇒ 4~6월 동안 B동에 살면서, B동에서 발급한 내역 검색
- (3) C동, 2015년 7~12월로 검색
⇒ 7~12월 동안 C동에 살면서, C동에서 발급한 내역 검색
2. 8330 (4) A동, 2015년 1~3월로 검색
⇒ 1~3월 동안 A동에 살면서, A동에서 자료 제공(타동에서 발급)한 내역 검색
- (5) B동, 2015년 4~6월로 검색
⇒ 4~6월 동안 B동에 살면서, B동에서 자료 제공(타동에서 발급)한 내역 검색
- (6) C동, 2015년 7~12월로 검색
⇒ 7~12월 동안 C동에 살면서, C동에서 자료 제공(타동에서 발급)한 내역 검색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자. 8350.인감대장현황

처리일자를 넣고 조회버튼을 누르면 최종집계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날 부터 하루하루 집계함

인감권면대장-8350 인감대장현황?SQQC216000W

처리일자 2015-02-23 **조회** 최종집계일자 2015-02-23

*인감대장현황 조회는 최소 현일에 한번은 하시기 바랍니다.(월말 또는 월초)
*보호신청은 오늘 현재 보유한 대장을 집계하는 업무입니다.(업무대강은 '보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구분	내국인	재외국민(주민)	재외국민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	소계
금일변동사항	0	0	0	0	0	0
누계	7,788	8	13	6	8	7,823

말소

구분	내국인	재외국민(주민)	재외국민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	소계
금일변동사항	1	0	0	0	0	1
누계	1,232	1	1	0	0	1,234

현재 전산 인감대장을 카운트하여 현재일자로 새로 집계함

새로집계 보호신청현황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㉑. 8390.인감대상명부

출력범위

대상자구분: **내국인**

내국인, 재외국민주민등록자명부만 조회 가능

**출력은 대사시간 중에만 가능함
대사시간 외에 별도의 사유로 필요시 시군구를 통해 행정자치부 주민과로 공문접수를 해야 함**

인감대상명부 관리

검색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타. 8410.인감증명대리발급사실통보

인감관리정보-인감증명대리발급사실통보 (RSROC21100KW)

출력여부 [전체] 발급일자 [2012-04-02] ~ [2012-04-10] 조회 검색건수 : 2

선택	출력 (여부)	발급일자	대상자구분	지번주소	성명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발급종류	부본산출도움	기타
<input type="checkbox"/>	V	2012-04-02	내국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	문 보현	791005-1	2	0	1
<input type="checkbox"/>	V	2012-04-02	내국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	문 보현	791005-1	0	0	0

프린트설정 대장출력 출력 중요 도움말

보내는 사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청정보실

888-0000

받는 사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청정보실 구청정보실 204 (20)

도달처 번호
[가]아[태]이[이]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서

귀하의 인감증명서가 다음과 같이 대리 발급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발급 일자	취급처 (문명) 성명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부본산출도움	비고
2012-04-02	정보실	문보현	791005-1	문보현	1부 2부	

2012-04-0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청정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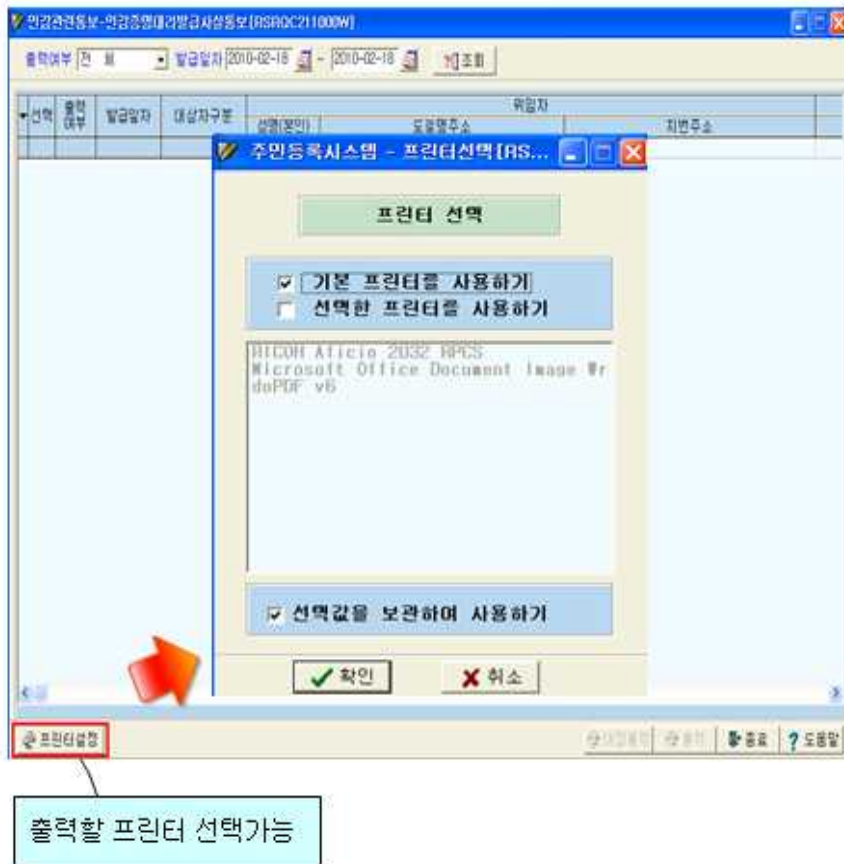
주 의 사 항

1.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통보서는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신청한 자를 통보하는 888출력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며, 본인에게 통보해 주는 데에 의해 사생활 보호가 보장됩니다.
2. 인감증명서 새로 발급에 앞서서 귀하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후, 통보된 인감증명서 수령처로 발송됩니다.
3. "본인의 인감증명" 확인 후, 발급신청을 신청하는 인감증명신청처를 확인한 후, 인감증명서 수령처로 발송된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십시오. 수령처를 확인하지 않으면 인감증명서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4. 인감증명서 수령처에서 발급신청한 인감증명서 수령처를 확인하여 수령처를 수령하십시오. 인감증명서 수령처에서 "사실통보"하여 수령처를 확인하여 수령처를 수령하십시오.
5. 인감증명서 수령처에서 발급신청한 인감증명서 수령처를 확인하여 수령처를 수령하십시오. 인감증명서 수령처에서 발급신청한 인감증명서 수령처를 확인하여 수령처를 수령하십시오.
6.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위하여, 본인이 발급신청한 인감증명서 수령처를 확인하여 수령처를 수령하십시오. 인감증명서 수령처에서 발급신청한 인감증명서 수령처를 확인하여 수령처를 수령하십시오.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타. 8410.인감증명대리발급사실통보

- ◆ 대리발급사실통보출력 프린터 지정기능
 - 대리발급사실통보서 출력 시 프린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파. 8420.인감보호(해지)신청사항통보

- 타행정기관의 인감보호(해지)신청서를 접수받아 아래화면에서 통보하면 통보와 동시에 인감대장에 즉시 반영됨 (※ 주의: 2008.01~2009.1월 사이의 통보는 인감대장에 즉시 반영되지 않았음.)

인감관련통보-8420.인감보호(해지)신청사항통보[RSRQC223000W]

대상자구분: [선택] 연결기관: [입력]

주민등록번호: [입력] 성명: [입력] 전화: [입력] [조회] [재입력]

주민번호: [입력] 성명: [입력] 등록구분: [입력]

도로명주소: [입력]

지번주소: [입력]

공동주택: [입력] 인감상태: [입력]

인감보호신청: [입력] 보호해지신청: [입력] 인감종류: [입력]

법정소재지: [입력] 주민등록번호: [입력] 성명: [입력] 증명인과의관계: [입력]

법정소재지: [입력]

법정소재지: [입력]

법정소재지: [입력]

신청사항

신청구분: [선택] 신청사항: [입력] 참고사항: [입력]

신청일자: [입력]

신청구분: [선택] 주민등록번호: [입력] 성명: [입력]

[주의] 최종보호신청 사항을 다시 기재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받음
- 인감보호해지신청을 본인이나 할 수 없어 담당공무원이 방문 확인 후 등록한 경우 내역에 방문확인한동과 담당 이름이 자동 등록됨
예) "보호해지신청: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담당자(홍길동) 방문확인"

인감보호(해지)통보 [확인] [도움말]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아. 8480.인감대장이송

인감관련정보-인감대장이송 [ASROC226000W]

이송구분 송신 검색범위 2009-10-14 - 2009-10-14 구분 처리일자 등기번호입력여부 전 부 ? 조회

번호	처리일자	전출입일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해수	이송일자	이송일자	등기No.	비고	인감대상자

① 전출지에서만 입력할 수 있음
 ② 출력 시 인감업무 사용자확인을 해야 함
 ③ 이송일자, 등기번호, 비고등을 입력하여 저장하면 전입지에도 동시에 저장됨

이송일자 등기번호 비고 전출입대표자 저장

인감관련정보 0건 주민번호보안 종료 도움말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아. 8480.인감대장이송

◆ 인감대장이송 등기번호 누락 시 알림메시지

인감관련통보-인감대장이송 (PS80C226000W)

이송구분 [송신] 검색범위 [009-12-19] - [2010-01-11] 구분 [처리일자] 등기번호입력여부 [미입력] [조회]

번호	처리일자	전송입일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매수	이송자	이송일자	등기No.	비고	인감대상자
1	2009-12-31	2009-12-31	권 배옥	640516-	1	김종환	--			권 배옥
2	2010-01-11	2010-01-11	최 승훈	840703-	1	전은옥	--			최 승훈
3	2010-01-11	2010-01-11	김 성구	650920-	4	전은옥	--			김 성구 김 ...
4	2010-01-11	2010-01-11	안 일순	550320-	1	전은옥	--			안 일순
5	2010-01-11	2010-01-11	정 철권	620710-	1	전은옥	--			정 철권
6	2010-01-11	2010-01-11	정 정숙	580521-	3	전은옥	--			정 정숙 조 ?..
7	2010-01-11	2010-01-11	배 소영	660606-	1	전은옥	--			배 소영
8	2010-01-11	2010-01-11	최미	920910-	1	최우영	--			김 현민
9										김민정

정보 [CMMXID004]

2009년12월19일부터 2010년01월11일 사이에 등기번호가 미입력된 내역이 존재합니다. 미입력된 내역을 조회합니다.

확인

현재날짜 기준으로
7일부터~30일전 사이에
등기번호가 미입력된 내역이
있으면 메시지가 나오게 됨

이송일자 [-----] 등기번호 [-----] 비고 [-----] [저장]

전송인대표자 [-----] [비로그인]

인감대장목록 송 [-----] 건 [-----] 주민번호보안 [-----] 종료 ? 도움말

[별첨1] 출입국자료 확인방법

- 인국인 재입국 허가사항 조회

인감관리-외국인인감관리 [ASAGC203000W]

직업구분 신규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6 374 ? 등록확인

제1쪽 제2쪽 제3쪽 4. 서면신고

인감번호 0000000007
외국인등록번호

인 감 대 장

(외국인용) 증명처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성명(한자) YANG WEIHONG () 주요출입국/신분변동보기 성별 나

출입국성명 YANG WEIHONG 기타성명 국적 중국

입국일자 2007-01-03 달기 체류자격 21 상세 체류기한 2010-03-28 체류종 직업

생년월일 여권발급일 2002-08-06 유효기한 2007-08-05 출입국확인일 2009-03-10

구분	만료일	허가일	허가번호	신고사유
단수	2005-03-10	2005-01-31	1A8805003606	
단수	2008-06-30	2008-05-11	1A8808044167	

국 내 체류지 변경사항

신고일 2009-03-10 신고사유 01-체류지변경 출입국자료보기

도로명주소 동 호 () ? 변경등록<->도로(길)명

지번주소

공동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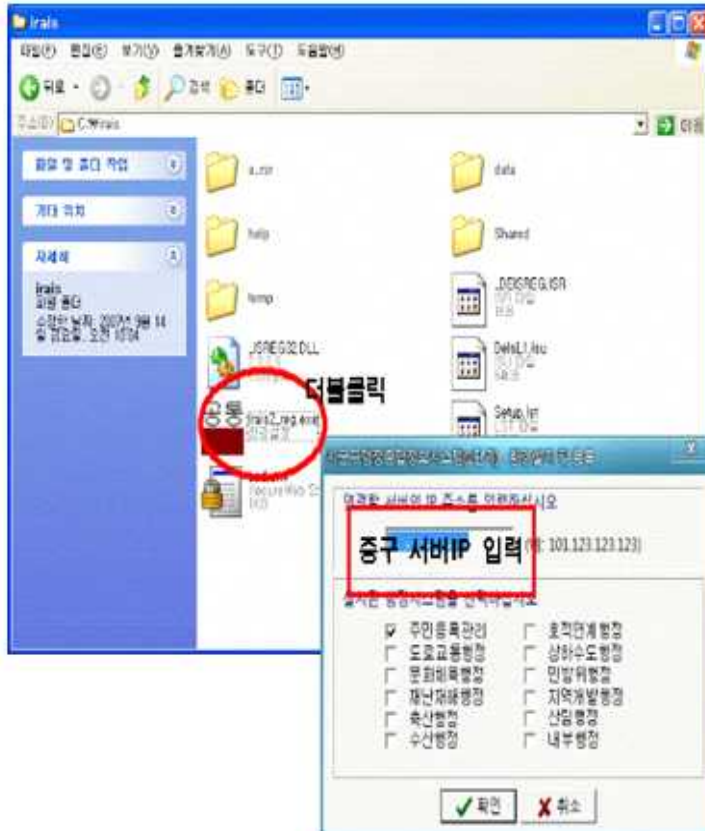
등록, 수정, 삭제, 재입력, ? 도움말

취소 저장, ? 도움말

[별첨2] 장애 시 인감발급 요령

1. 인감담당자 PC의 환경설정 변경

- 바탕화면의 내컴퓨터 > 로컬디스크(c:) > irais 폴더로 이동하여 Irais2_reg.exe 를 실행(더블클릭)하여
협조시군구의 IP를 입력하고 주민등록관리에 체크 후 확인 버튼 클릭
(아래 그림은 서울 중구를 협조시군구로 가정하여 입력된 화면임)



[별첨2] 장애 시 인감발급 요령

2. 장애인감발급 업무 실행

- 가. 인감담당자는 시군구 전산담당자에게 장애 시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문인한 후 시군구 전산담당자가 알려주는 아이디로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로그인
- 나. 증명인이 내국인이면 8510.장애인감발급 업무를 증명인이 재외국민,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이면 8520.장애인감발급-내국인외 를 실행하고 증명인이 재외국민주민등록자이면 8550.장애인감발급-재외국민주민등록자를 실행한다.

인감	시군구	관련업무	SMS	본인서명사실확인	시스템기본설정	장보기	공지
81.인감관리		▶					
82.인감증명발급		▶					
83.인감관련대장		▶					
84.인감관련통보		▶					
85.장애인감업무		▶		8510.장애인감발급			
86.센터인감관리		▶		8520.장애인감발급-내국인외			
				8550.장애인감발급-재외국민주민등록자			
				8530.장애발급내역복구			
				8540.수기인감증명발급내역입력			

드로 시군구

[별첨2] 장애 시 인감발급 요령

3. 발급지기관 정보 입력

가. 발급기관장명에 읍면동 명칭을 입력 후 엔터키를 입력

나. 행정등주소검색창에서 행정등을 선택

다. 발급기관 전화번호(000-0000-0000 형식으로 입력)와

발급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

[별첨2] 장애 시 인감발급 요령

4. 인감작업자 확인

가. 발급대상자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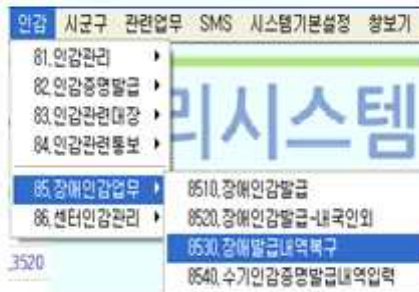
나.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정상 인감발급 시에 사용하던
인감작업자용 비밀번호를 입력

다. 대상자가 조회되면 조회내용을 확인 후 출력 버튼을 눌러서 출력

[별첨2] 장애 시 인감발급 요령

5. 장애복구 후 장애발급내역 복구

가. 8530.장애발급내역복구 업무 실행(장애복구 완료 후 실행)



나. 조회버튼을 눌러서 발급내역 확인 후 복구 버튼 클릭





IX. 참고자료(현행법령)

1. 인감증명법
2. 인감증명법 시행령

IX

참고자료(현행법령)

1. 인감증명법

[시행 2016.7.7.] [법률 제13727호, 2016.1.6.,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주민과) 02-2100-3841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2조(사무의 관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인감 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0.3.12.]

제3조(인감 신고 등)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6.1.6.>

②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경우: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2.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⑤ 제1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4조(인감대장) ①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갖추어 두고 신고인감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② 삭제 <1991.1.14.>

③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감의 재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1. 인감대장이 분실·멸실·훼손 또는 마멸된 경우
2. 그 밖에 인감대장의 기록 내용 등을 관독할 수 없는 경우
3. 인감대장의 서식(書式)을 변경한 경우

④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과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인감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0.3.12.>

⑤ 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2.>

[전문개정 1977.12.31.]

[제목개정 2010.3.12.]

제5조(인감의 제한)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6조(인장 규격의 제한) 제3조에 따라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징집·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목개정 2016.1.6.]

제8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2.]

제9조(사망 등의 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①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1.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망이 분명한 때
2.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실종선고가 있는 것을 안 때

② 제1항의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인감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인감이 말소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청에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으로 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2.]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

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6.]

제12조의2(인감증명서의 발급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사람이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0.3.12.]

[제목개정 2016.1.6.]

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1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증명청은 제3조, 제8조, 제9조,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0.]

제14조(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14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①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이하 "인감보호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감의 말소 신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 신청
 4.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
 5.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
- ②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6.]

[중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4로 이동 <2016.1.6.>]

제14조의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①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6.]

제14조의4(권한의 위임) 증명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제14조의2에서 이동 <2016.1.6.>]

제1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6.>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0.3.12.]

2.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2016.7.7.] [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주민과) 02-2100-3841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

제2조 삭제 <2005.1.15.>

제3조(신고·신청의 정의) ① 「인감증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성명에 따라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중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2.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3. 국내거소신고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자를 한 외국국적동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한자(漢字) 성명에 따라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1.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2. 한자 성명이 기재된 외국 여권

3. 그 밖에 본인의 한자 성명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6.7.5.]

제4조(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등록기준지 변경 등의 통보) ①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최종주소는 각각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소를 상실하고 국외로 출국하기 직전의 사실상의 거주지로 한다. 다만, 1968년 8월 28일 이후에 출국한 자의 경우에는 출국당시의 주민등록지로 한다. <개정 2015.1.20.>

②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변경한 때에는 가족관계 등록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및 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5.1.15., 2007.12.31., 2013.4.22., 2015.1.20., 2016.7.5.>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제목개정 2015.1.20.]

제4조의2(증명청의 변경) ①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그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
2. 재외국민이 영주귀국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을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

②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그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출국한 경우: 출국일 다음날
2. 「주민등록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국신고(같은 항 후단에 따라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출국한 경우: 출국일 다음날(「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재외국민등록통보서 접수일)
3.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지이주통보서 접수일

[본조신설 2015.1.20.]

제5조(인감대장 등의 서식)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청이 비치하는 인감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인감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의 인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증명청은 인감대장외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대장의 주소이동사항란에 그 일자를 기재하고 "국외이주신고"라고 표기한다. <개정 2005.1.15., 2013.4.22., 2014.12.31.>

④증명청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의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에 첨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3.4.22., 2014.12.31.>

⑤ 증명청은 재외국민이 영주귀국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감대장에 첨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전문개정 2002.12.31.]

제5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 ①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화일(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②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인감화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인감화일은 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증명청은 인감화일을 작성·변경 또는 폐기하는 때에는 이를 화일목록에 등재하여야 하며, 그 보관·폐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05.1.15., 2011.12.21.>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인감화일의 입력·출력·편집·검색 그 밖의 인감업무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2.12.31.]

제5조의3(인감대장의 이송) ①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관련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 또는 말소자의 인감대장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07.12.31., 2013.4.22., 2015.1.20.>

②인감을 신고한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사항을 통보받은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기준지 변경사항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감대장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을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5.1.20., 2016.1.12.>

③ 「출입국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를 받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으로부터 체류지변경사실을 통보받은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밀봉하여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6.1.12.>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자의 국내거소이전통보를 받은 전거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감대장을 밀봉하여 신거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6.1.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감대장 및 관련공부를 이송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2에 따른 위임으로 같은 시·군·자치구의 관내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⑥ 신증명청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대장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본조신설 2002.12.31.]

제6조(인장의 규격) 인감의 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2.12.31.>

[전문개정 1999.3.12.]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술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07.12.31., 2015.1.20., 2016.7.5.>

1. 등록기준지(외국인을 제외한다)
2. 주소·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지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고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5. 여권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혼자 방문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6.7.5.>

③ 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2016.1.12., 2016.7.5.>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대한민국 여권
5.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여권번호를 여권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4.22., 2015.1.20., 2016.7.5.>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마친 증명청은 신고인이 보는 앞에서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인감란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구술신고"라고 적고, 신고인에게 관계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신고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이하 "무인(拇印)"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하고, 신고인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4.22., 2016.7.5.>

⑥ 증명청은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5., 2013.4.22., 2016.1.12., 2016.7.5.>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법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고 및 신청을 하려는 자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아 후견등기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7.5.>

[전문개정 2002.12.31.]

제7조의2

[제17조의2로 이동 <2016.7.5.>]

제8조(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서면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감신고서에 인장을 찍은 백지(이하 "인감지"라 한다)와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미성년자가 인감을 서면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인감(변경)신고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6.7.5.>

④ 피한정후견인이 인감을 서면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인감(변경)신고서에 한정후견인의 동의[한정후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또는 한정후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한정후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한정후견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7.5.>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확인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재외공관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확인일부터 6개월)로 한다. <신설 2015.1.20., 2016.7.5.>

⑥증명청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인감지를 첨부하여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한 후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시한 후 "서면신고"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9.29., 2015.1.20., 2016.7.5.>

[전문개정 2002.12.31.]

제9조(미주민등록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여부 확인) ①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신고를 받은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5.1.20.>

②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현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5.1.20.>

[전문개정 2002.12.31.]

[제목개정 2015.1.20.]

제10조(신고수리의 거부)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4.16., 1997.4.12., 2002.12.31., 2005.1.15., 2007.12.31., 2016.7.5.>

1. 인장이 동판·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때
2.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성명으로 신고한 때
3. 인장이 제6조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인감을 신고한 때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 5의2.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인감을 신고한 때
- 5의3.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 없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신고한 때
6. 신고된 인감이 있을 때
7. 인장의 마멸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인감화일에 수록하기에 부적합한 때
8. 인감신고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제11조(사망 등의 신고) ① 삭제 <2005.1.15.>

②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소관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5.1.15., 2015.1.20.>

제12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증명청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할 때에는 미리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재외공관의 확인서, 국내거소신고증 반납확인서, 등록기준지 조회 또는 관계공무원의 사실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말소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 및 그 사유와 "직권말소"라고 붉은 글씨로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 인감을 신고한 자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감의 말소 및 부활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청(구술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인감의 말소 및 부활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7.5.>

1.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청
 2.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3.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다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혼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인하여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 2서식에 의한 인감말소·부활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6.1.12.>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말소·부활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인감말소·부활신청서의 인감 및 법정대리인의 인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과 인감임이 확인된 때에는 인감대장 비고란에 인감말소·부활일자 및 그 사유와 "말소신고"·"부활신고"로 표기한 후 신청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9.29., 2005.1.15.>
 - ⑤증명청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의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되거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이 재등록된 때에는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말소·부활일자 및 그 사유와 "직권말소"·"직권부활"이라고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3.4.22.>
- [전문개정 2002.12.31.]

-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16.1.12., 2016.7.5.>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6.7.5.>
1.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법정대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한정후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또는 한정후견인이 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고, 한정후견인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받으려는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인감을 신고한 자가 피한정후견인이고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부동산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기재하려는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6.1.12.>

④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5.>

1. 주민등록증등(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본인, 제1항에 따른 대리인, 제2항에 따른 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임을 확인한다.
2.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3.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발급하는 인감증명서가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일 때에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용도를 확인한 후 직접 인감증명서에 용도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4.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인,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⑤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신청인은 인감신고인의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등을 확인한 후 인감대장의 신고인감을 복사하여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첨부·간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9., 2005.1.15., 2016.1.12.>

⑥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본인의 신청을 받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의 통보에 동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감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지 아니하고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5.1.15., 2013.4.22., 2016.1.12.>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

[전문개정 2002.12.31.]

[제목개정 2016.1.12.]

제14조(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자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하여 그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1.12.>

1. 발급기관
2. 발급일자
3. 주민등록번호
4. 발급번호

[본조신설 2005.1.15.]

[제목개정 2016.1.12.]

제15조(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다. <개정 2002.12.31., 2016.1.12., 2016.7.5.>

1. 법 제11조에 따라 인감이 말소된 때
2.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
3.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4.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
 5.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
 6.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사항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 없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
 8.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9.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0.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서와 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11.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인감보호신청란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때
- [제목개정 2016.1.12.]

제16조(인감변경신고)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

②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개명(改名)하거나 영주귀국 등으로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신고된 인감의 성명과 달라지게 되는 등 신고된 인감이 제3조에서 정한 성명과 달라진 경우에는 법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기 전에 법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전문개정 2002.12.31.]

제17조(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0., 2016.1.12.>

1. 인감관리대장,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 영구
2. 인감증명서발급대장: 30년
3. 각종 신고서, 확인서 및 동의서, 인감신고사항 통보서, 위임장 그 밖의 인감관련대장: 10년

[전문개정 2002.12.31.]

제17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감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 인감보호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한 후 인감대장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인감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5.1.15., 2013.4.22., 2015.1.20., 2016.1.12., 2016.7.5.>

②인감을 신고한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수감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인감

보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 인감보호신청서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 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보호신청서를 제출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2005.1.15., 2007.12.31., 2015.1.20., 2016.1.12., 2016.7.5.>

③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감보호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따라 소관증명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소관증명청은 관리하고 있는 인감대장에 인감보호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2005.1.15., 2007.12.31., 2013.4.22., 2015.1.20., 2016.1.12., 2016.7.5.>

④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인감보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인감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한정후견인이 인감신고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7.5.>

⑤제1항 단서에 따라 인감보호 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인감보호신청란에 요청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한 후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9.29., 2016.1.12., 2016.7.5.>

⑥인감보호의 해지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9.29., 2016.1.12., 2016.7.5.>

⑦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감보호 신청을 한 후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인감보호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7.5.>

1. 인감보호의 해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원한 시설을 관할하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신청을 받은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방문 여부 및 방문 예정 일시 등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전화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방문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을 방문한 관계 공무원은 주민등록증등이나 무인으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별지 제15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인감보호 해지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2.12.31.]

[제목개정 2016.7.5.]

[제7조의2에서 이동 <2016.7.5.>]

제18조(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5.>

1.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 경우: 대리인(인감증명서발급내역에 관한 열람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 성년후견인
3.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 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이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인감을 신고한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자

② 인감을 신고한 본인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열람한 서류의 사본(전산자료 출력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이라 한다)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5.>

③ 제2항에 따른 열람등의 신청을 받은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와 주민등록증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열람대장에 기재하고,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하게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한 서류의 사본과 함께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6.7.5.>

④ 제1항제5호의 자 중 진행 중인 재판,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세무조사, 감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람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을 요청하는 자는 근거 법률 및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통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요청 내용에 따라 직접 열람하게 하거나 문서로 통보한다. <개정 2016.7.5.>

[전문개정 2016.1.12.]

[제목개정 2016.7.5.]

제18조의2(권한의 위임) ① 증명청은 법 제14조의4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진 자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사무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인감사무에 관한 권한을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20., 2016.1.12., 2016.7.5.>

② 삭제 <2016.1.12.>

[본조신설 2005.1.15.]

제19조(수수료)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5., 2016.1.12.>

1. 인감증명서 발급 : 통당 600원

2. 인감변경신고 : 회당 600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12.31., 2009.6.26., 2012.4.17., 2012.12.21., 2013.4.22., 2014.11.19., 2016.6.2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가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에 첨부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5. 관계 법령에서 인감증명정보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6.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등과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한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들이 신청하는 경우

1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법 제5조에 따라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인감을 변경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개명신고하고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로 한정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12.31.]

제20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

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31.]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번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7.5.>

1. 법 제3조에 따른 인감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인감의 말소 및 부활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의3에 따른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5.1.20.]

제21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인장의 규격: 2015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신고수리의 거부 사유: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12.>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사항 통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사항>

성 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종전 등록기준지	
현재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변경 년 월 일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5.1.20.>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주민등록 사실 통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사실을 통보합니다.

인감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여권번호		인감신고일	
	등록기준지			
	최종주소지			
<p>※ 유의사항</p> <p>1.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인감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등록기준지나 최종주소지 관할 증명청에 주민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인감대장 보유기관은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으로 신속히 인감대장을 이송합니다.</p> <p>2. 등록기준지 관할 증명청은 인감신고인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을 정리합니다.</p> <p>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기 등록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생년월일을 적습니다.</p>				

끝.

발신명의 **작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7. 5.>

(제1쪽)

주민등록번호		인 감 대 장													
<table border="1">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성명 (한자)	()	휴대폰 번호 (발급사실통보용)	- -												
주소이동사항	순서	주소	전입												
	1		. . 인												
	2		. . 인												
	3		. . 인												
	4		. . 인												
	5		. . 인												
	6		. . 인												
	7		. . 인												
	8		. . 인												
	9		. . 인												
	10		. . 인												
<p>※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대장은 인감신고자의 생년월일순으로 관리합니다. 주소이동사항의 주소란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 및 주소변경사항과 직권조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전입란에는 그 전입(변경)일자를 기재한 후 인감담당자가 날인합니다. 인감의 특징란에는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변경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기재하여 관리하고,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인감의 보호신청란에는 신고인감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특별히 요청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검정색 펜으로 기재하여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268mm×380mm(백상지 200g/㎡)

인 감 신 고 란				
인 감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인감의 특징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해지 신청				
발급사실통보 동의란	()대리발급시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대리발급시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대리발급시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대리발급시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비고·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인 감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년 월 일 (본인, 서면)
인감의 특징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해지 신청				
발급사실통보 동의란	()대리발급시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대리발급시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대리발급시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대리발급시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비고·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제3쪽)

증명청경유란						
순서	인감관리대장번호	증명청직인	순서	인감관리대장번호	증명청직인	
1		읍 면 동 제 호	6		읍 면 동 제 호	
2		읍 면 동 제 호	7		읍 면 동 제 호	
3		읍 면 동 제 호	8		읍 면 동 제 호	
4		읍 면 동 제 호	9		읍 면 동 제 호	
5		읍 면 동 제 호	10		읍 면 동 제 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12.>

(제1쪽)

인 감 대 장

(재외국민용)

성명 (한글·한자)	()	여권번호	성별	남·여
		(전)국내거소 신고번호		
휴대폰 번호 (발급사실통보용)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년 월 일 신고			
	년 월 일 신고			
국내 최종 주소지	년 월 일 신고			
	년 월 일 출국			

※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의 주소(행정상관리주소를 포함한다) 이동사항

주소 이동 사항	주소	전입	
			. .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268mm × 380mm(백상지 200g/㎡)

(제2쪽)

인 감 신 고 사 항							
인 감	인 감 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본인, 서면)	(본인, 서면)	(본인, 서면)	(본인, 서면)	(본인, 서면)	
	인 감 의 특 징						
	인 감 의 보 호 신 청						
	인 감 보 호 해 제 신 청						
발 급 사 실 통 보 동 의 란	()대리발급시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대리발급시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대리발급시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대리발급시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대리발급시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비 고 · 담 당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증명청경유란					
순서	인감관리대장번호	증명청직인	순서	인감관리대장번호	증명청직인
1	시·구 (동) 읍·면 제 호		6	시·구 (동) 읍·면 제 호	
2	시·구 (동) 읍·면 제 호		7	시·구 (동) 읍·면 제 호	
3	시·구 (동) 읍·면 제 호		8	시·구 (동) 읍·면 제 호	
4	시·구 (동) 읍·면 제 호		9	시·구 (동) 읍·면 제 호	
5	시·구 (동) 읍·면 제 호		10	시·구 (동) 읍·면 제 호	

■ 인감증명법 시행령[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12.>

(제1쪽)

인 감 대 장

(외국인용)

성 명				국 가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1		
					2		
					3		
	휴대폰번호 (발급시실통보용)	- -		여권	여권발급일	1	
						2	
						3	
	체류자격	1			유효기간	1	
		2				2	
		3				3	
	체류기간	1				1	
		2				2	
		3				3	

체류지 변경 사항	1		. .	인
	2		. .	인
	3		. .	인
	4		. .	인
	5		. .	인
	6		. .	인
	7		. .	인
	8		. .	인
	9		. .	인
	10		. .	인

268mm×380mm(백상지 200g/㎡)

인 감 신 고 사 항						
인 감	인 감 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본인, 서면)	(본인, 서면)	(본인, 서면)	(본인, 서면)	(본인, 서면)
	인감의 특징					
	인감의 보호신청					
	인감보 호해제신청					
	발급사 실통보 동의란	()대리발급시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대리발급시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대리발급시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대리발급시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대리발급시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비고·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제3쪽)

증명청경유란					
순서	인감관리대장번호	증명청직인	순서	인감관리대장번호	증명청직인
1	시·구 (동) 읍·면 제 호		6	시·구 (동) 읍·면 제 호	
2	시·구 (동) 읍·면 제 호		7	시·구 (동) 읍·면 제 호	
3	시·구 (동) 읍·면 제 호		8	시·구 (동) 읍·면 제 호	
4	시·구 (동) 읍·면 제 호		9	시·구 (동) 읍·면 제 호	
5	시·구 (동) 읍·면 제 호		10	시·구 (동) 읍·면 제 호	

■ 인감증명법 시행령[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12.>

(제1쪽)

인 감 대 장

(국내거소신고자용)

성 명				국 가		
국내거소 신고증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1	
	휴대폰 번호 (발급사실통보용)	- -			2	
					3	
	체류자격	1		여권	여권발급일	1
		2				2
		3				3
	체류기간	1			유효기간	1
		2				2
		3				3

거소지 변경 사항	1		. .	인
	2		. .	인
	3		. .	인
	4		. .	인
	5		. .	인
	6		. .	인
	7		. .	인
	8		. .	인
	9		. .	인
	10		. .	인

268mm×380mm(백상지 200g/m²)

(제2쪽)

인 감 신 고 사 항							
인 감	인 감 략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본인, 서면)	(본인, 서면)	(본인, 서면)	(본인, 서면)	(본인, 서면)	
	인 감 의 특 징						
	인 감 의 보 호 신 청						
	인 감 보 호 해 제 신 청						
발급 사실 통보 의 략	()대리발급시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대리발급시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대리발급시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대리발급시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대리발급시 ()본인발급시 (서명 또는 인)		
비 고 · 담 당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증명청경유란					
순서	인감관리대장번호	증명청직인	순서	인감관리대장번호	증명청직인
1	시·구 (동) 읍·면 제 호		6	시·구 (동) 읍·면 제 호	
2	시·구 (동) 읍·면 제 호		7	시·구 (동) 읍·면 제 호	
3	시·구 (동) 읍·면 제 호		8	시·구 (동) 읍·면 제 호	
4	시·구 (동) 읍·면 제 호		9	시·구 (동) 읍·면 제 호	
5	시·구 (동) 읍·면 제 호		10	시·구 (동) 읍·면 제 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12.>

인 감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신 고 인		송부기관	이송기관	비 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월 일	연 월 일	
			담 당 자	담 당 자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비고란에는 전입, 전출, 신규, 말소, 등록기준지 변경 등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7. 5.>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인감 신고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국적(등록기준지)
	주소		신고 인감
	서면신고 사유	보증 용	인감지 붙임
	증명자료(첨부)		
보증인	성명	인감 ①	
	주민등록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주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 후견인 등의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인감 ①
	생년월일		
	주소		

위 신고인의 인감 [] 서면신고(변경) 사실을 확인합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등의

년 월 일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수감기관(교도관)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제3조·제7조·제13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과 연서하여 서면신고합니다.

수수료	신고	없음
년 월 일	변경	600원

인감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시 · 구 · 읍 · 면 · 동 장 또는 출장소 장 귀 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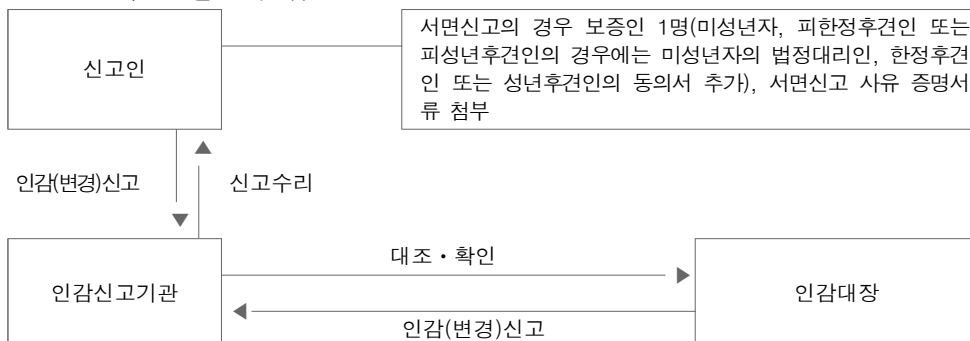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인감을 처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증명청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인감신고 또는 인감변경신고를 할 때 사용합니다.
2. 보증인은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이어야 하며, 신고인의 진의(眞意)를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날인한 인감은 반드시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인감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증인 인감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서면신고를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인감신고의 경우는 신고 인감의 보존용란에 인감을 찍고, "인감지 1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도장을 동봉한 때에는 인감지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관계 공무원은 인감대장의 인감란에 인감지를 첨부한 후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서 직인(簡印)하여야 합니다.
6.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국적란에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7. 서면신고 사유란에는 신고인이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사유 확인일로부터 3개월(재외공관의 확인은 확인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8.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인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괄호 안에 함께 적습니다.
9. 서면신고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에 대하여 해당사항란에 [√] 표시를 합니다.
10.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6. 7. 5.>

■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Seal Act [Form an enclosure No. 9 2]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Change) of Personal Seal (for written registration)

※ Fill out this form and check where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n the back of the form. (Front)

Application No.	Date	Processing Time	Immediate	
Applican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Nationality(The address on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Address		Personal Seal to Register	
	Reason for Written Registration		For Preservation	Attach seal impression on paper.
	Supporting Documents (Attachment)			
Guarantor	Name		Personal Seal	
	Resident Registration No. (Date of Birth)			
	Relationship to Applicant			
	Address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Name	Relationship to Applicant	Personal Seal	
	Date of Birth			
	Address			

I certify the registration (or change) of the personal seal.
 the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 limited guardian • adult guardian.

Date _____ (YYYY/MM/DD)
 Diplomatic Mission (Consul) (Signature or Seal)
 Prison (Prison Officer) (Signature or Seal)

I hereby apply for a written registration of my personal seal by submitting this form jointly signed with my guarantor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according to Articles 3, 7, and 13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and Clauses 2, 3 and 4 of Article 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Date _____ (YYYY/MM/DD)

Fee	
Register	NONE
Change	600 won

Applicant: _____ (Signature or Seal)
 Representative: _____ (Signature or Seal)
 Resident Registration No.: _____
 Address: _____

For the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Local Government of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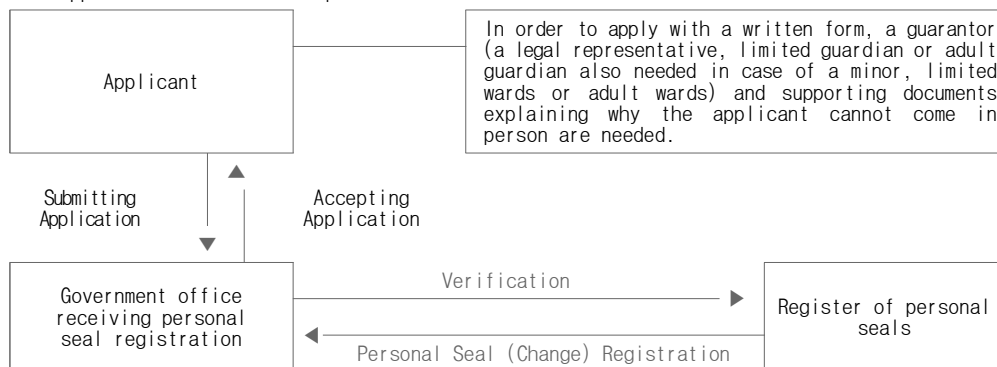
210mm×297mm[white paper(80g/m²)or middle quality paper(80g/m²)]

Notes and Instructions

1. If an applicant registering a personal seal for the first time or wishing to change the personal seal is unable to visit a government office in person, he or she may use this form to register or report the change of a personal seal in writing without visiting a government office.
2. The guarantor must be an adult with a registered personal seal and must certify and guarantee the applicant's intention. The personal seal affixed by the guarantor must be a registered seal, and the government office may request the guarantor to submit his/her personal seal if it is difficult for a data processing organization to identify the seal.
3. A legal representative visiting the government office must be a different person from the guarantor and must bring his/her own ID.
4. In order to register a personal seal, affix the personal seal to be registered in the "For Preservation" box, and attach a clear impression of the seal on a piece of paper. The seal impression on paper may be waived if the seal stamp is submitted along with the form.
5.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must attach the seal impression on paper to the register of personal seals and stamp an official seal where the edge of the attached paper meets the register.
6. If the applicant is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nd does not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the address on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in the "Nationality" section.
7. In the "Reason for Written Registration" section, enter the reason why the applicant is unable to visit the government office and attach the supporting documents at the time of the submission. If supporting documents are submitted, they are valid for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confirmation of the reaso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confirmation when certified by a diplomatic mission).
8.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you are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nd do not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your passport number; if you are a foreigner, enter 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and if you are a registered domestic resident, enter your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If you have you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the number on a separate line underneath in a parenthesis, in the space provided.
9. Check where appropriate to indicate written registration of the personal seal or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 limited guardian • adult guardian.
10. All persons authorized to apply on behalf o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must receive a confirmation from one of the following organizations as applicable (not applied to an overseas Korean national who resides in Korea)
 - a. Overseas Korean national,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 b. Prisoner: Prison (Prison Officer).

Procedure

This application form will be processed as follows.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1.12.>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사항 통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신고 사실을 통보하오니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감 신 고 인	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인감신고일		
참고사항		

끝 .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1.20.>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신고사항 통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사항을 통보하오니 인감대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감 신 고 자 인	성명		영문명	
	성별	남·여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국내거소신고일	
	국적			
	현재류지			
인감신고일				
참고사항				
<p>※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보를 접수한 증명청은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인감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국내거소신고서를 접수 처리하여야 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작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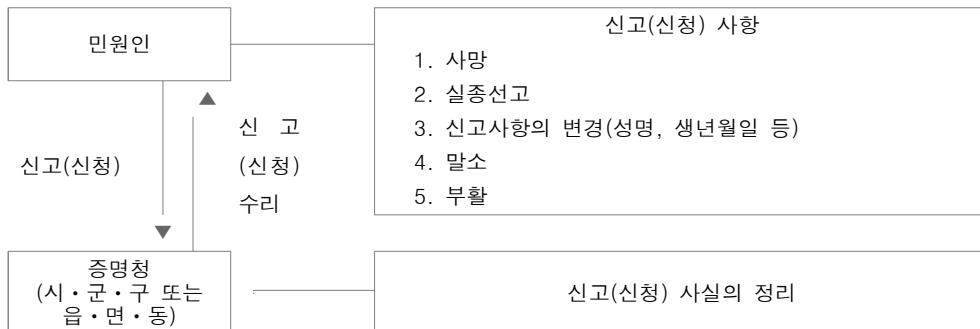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신고할 때에는 상속인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소관 증명청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의2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사용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인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인감(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한 후 제출합니다.
※ 인감 변경신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처리 절차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16. 7. 5.>

■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Seal Act [Form an enclosure No. 12 2]

Application to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of the Deceased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of the Missing
 Change Information of Registered Personal Seal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Re-register a Former Personal Seal

* Fill out this form and check where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n the back of the form. (Front)

Application No.	Date	Processing Time	Immediate
-----------------	------	-----------------	-----------

Applicant	Name		Personal Seal
	Resident Registration No.		
	Nationality		
	Address		

Description of Application

Reason for Written Registration

Supporting Documents (Attachment)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Name		Relationship	Personal Seal
	Date of Birth			
	Address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s true and accurate.

Date _____ (YYYY/MM/DD)

Diplomatic Mission (Consul) (Signature or Seal)
 Prison (Prison Officer) (Signature or Seal)

I hereby submit a registration (application) of a personal seal (to undo the registration of a personal seal of the deceased/missing, to change information of a registered personal seal, to undo the registration of a personal seal, or to re-register a former personal seal) according to Articles 8, 9, and 11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and Articles 11 and 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Fee
NONE

Date _____ (YYYY/MM/DD)

Applicant: (Signature or Seal)

Address:
 (Resident Registration No.: _____)

Representative: (Signature or Seal)

Address:
 (Resident Registration No.: _____)
 Relationship:

For the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Local Government of _____

210mm×297mm[white pape(80g/m²) or middle quality paper(8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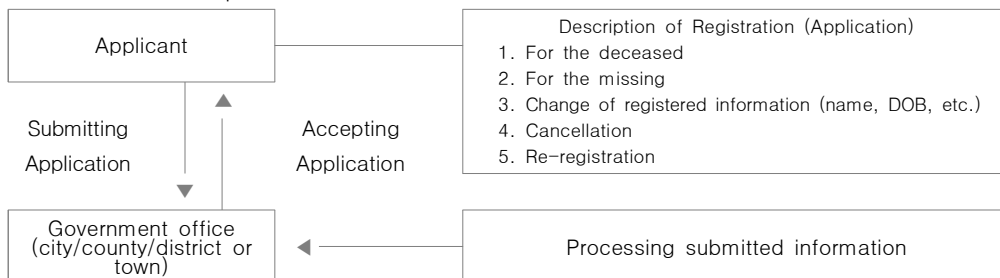
(Back)

Notes and Instructions

1. All legal representatives visiting a government office must bring a form of identification.
2. An application to undo the registration of a personal seal of the deceased or the missing must be submitted by an heir of the deceased or the missing; if, however, the heir is unable to visit a government office in the relevant jurisdiction, he/she may authorize another person (using the Power of Attorney in Form No. 13 – the annex fo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to submit the application.
3.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you are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nd do not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your passport number; if you are a foreigner, enter 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and if you are a registered domestic resident, enter your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4. Check where appropriate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of the deceased/missing, change information of a registered personal seal, undo the registration of a personal seal, or re-register a former personal seal) when submitting the application for a personal seal.
 - ※ If you wish to register a change of a personal seal, use Form No. 9 in the annex fo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5. All legal representatives registering (applying) on behalf o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must receive confirmation from one of the following organizations as applicable (not applied to an overseas Korean national who resides in Korea):
 - a. Overseas Korean national,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 b. Prisoner: Prison (Prison Officer).

Procedure

This form will be processed as follows.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 7. 5.>

(앞쪽)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국 적		주 소			
	신분 종류		용 도		발급통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본인은 ()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관 계		발급통수		인 감	

(성명:) 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의 위임(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수감기관(교도관)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확인	부동산 종류	
	부동산 소재지	

위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의 동의서에는 위임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입니다.
2. 인감증명서를 2부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부가 발급됩니다.
3. 위임장의 용도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예시: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등)을 적고,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등과 같은 내용으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주민등록 말소자(국외이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 제외)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을 할 수 없으며,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대리인 및 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는 제외합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재외국민의 부동산 권리 이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8.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예: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16. 7. 5.>

■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Seal Act [Form an enclosure No. 13 2]

(Front)

- Power of Attorney/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for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 Written Confirmation by a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Prison (Prison Officer)
- Written Confirmation by the District Tax Office (Head of the Tax Office)

* Fill out this form and check where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n the back of the form. The "Nationality" section is only for written confirmation by a diplomatic mission (consul). Anyone who applies for a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that belongs to a deceased person may be denounced to the authorities.

* Those who apply for a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may request for text message notification of whether their certificate has been issued.

[Power of Attorney for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Authorizer	Name	(Signature or Seal)	Resident Registration No.		
	Nationality	<input type="checkbox"/> Address		No. of Copies	
	Type of Identification Card	Purpose of Issuance			
Authorized Person (Applican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input type="checkbox"/> Address		Relationship		

I authorize the above-named person to be issued with a certificate of my personal seal.

Date _____ (YYYY/MM/DD)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Relationship	No. of Copies	Personal Seal	㉑	

I agree on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the personal seal of this person (Name: _____).

Date _____ (YYYY/MM/DD)

I certify that the authorization above is true and accurate.

Date _____ (YYYY/MM/DD)

Diplomatic Mission (Consul) (Signature or Seal)
 Prison (Prison Officer) (Signature of Seal)

Confirmation of the Head of Tax Office	Type of Real Estate	
	Location of Real Estate	

I confirm the information above.

Date _____ (YYYY/MM/DD)

Head of Tax Office (Signature or Seal)

210mm×297mm[white paper(80g/m²)]

(Back)

Notes and Instructions

1. For the "Power of Attorney" or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enter the date on which the issuance is authorized.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te of authorization or consent.
2. If you wish to receive two or more copies of the certificate, specify the number of copies needed in the "No. of Copies" section. If left blank, one copy will be issued.
3. In the "Purpose of Issuance" section, enter why a certificate of the personal seal is needed (e.g. for real estate sales, for collateral security, for car sales, etc.), and print your name in the "signature" section.
 - ※ In the "Purpose of Issuance" section, do not put a statement such as "I give this person full authority to sell my real estate".
4. If you are authorized to be issued with a certificate of a personal seal for a minor, limited wards or adult wards, you must fill out both "Power of Attorney" and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5. A person whose resident registration has been cancelled(exclusive of emigration) or who does not have a registered address cannot be authorized to be issued a certificate of the personal seal. The authorized person must show his/her ID if requested for the purpose of checking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submitted from the following list of an acceptable ID: resident registration card, driver's license, passport, registration card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lfare card) welfare cards without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on them are excluded].
6.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you are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nd do not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your passport number; if you are a registered domestic resident, enter your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and if you are a foreigner, enter 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7. I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authorizes a person to be issued with a certificate of the personal seal, he/she must receive a confirmation from one of the following organizations as applicable (not applied to an overseas Korean national who resides in Korea) In addition, i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wishes to be issued with a certificate of his/her personal seal for the purpose of a transfer of real estate property rights, he/she must enter the type and location of the real estate concerned and receive a confirmation from the head of the tax office in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real estate belongs.
 - a. Overseas Korean national,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 b. Prisoner: Prison (Prison Officer).
8. Those who counterfeited the signature or seal of someone else or use it in a fraudulent manner (e.g. applying for or being issued with a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of someone else or a deceased person by false entry of information) are subject to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31 through 240 of the criminal law.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16. 7. 5.>

■ 印鉴证明法 施行令 [第13号的三附件表格]

(前页)

- 印鉴证明委托书或法定代理人·限定监护人·成年监护人同意书
- 驻外公馆(领事馆)及囚禁机构(教导所) 确认书
- 税务署(税务署长) 确认书

※ 阅读后面注意事情后请亲笔填写下表, 国籍栏位仅限需驻外使馆确认时填写。

若委托人已故, 从死亡时刻开始代理人不得申请签发印鉴证明, 违反时可被搜查机构起诉。

※ 申请者申请签发印鉴证明时, 同时申请印鉴证明签发事实通知服务的话, 印鉴证明一旦签发, 立即收到相关短信。

[印鉴证明委托书]

委托人	姓名 (汉字)	(署名 或 盖章)	居民登录号码		
	国籍		住址		
	身份证种类		委托用途	签发数量	
受托人 (申请者)	姓名	居民登录号码			
	住址			关系	

本人委托上述受托人代为签发印鉴证明书。

年 月 日

[法定代理人·限定监护人·成年监护人 同意]

法定代理人 限定监护人 成年监护人	姓名		居民登录号码		
	住址				
	关系		签发数量	印鉴	印

本人同意签发(姓名:)的印鉴证明书。

年 月 日

确认上述委托事实。

年 月 日

驻外公馆(领事馆)

(署名 或 盖章)

囚禁机构(教导所)

(署名 或 盖章)

税务署长确认	房地产种类	
	房地产所在地	

确认上述内容。

年 月 日

税务署长 (印)

注意事项及填写方法

1. 委托书或法定代理人·限定监护人·成年监护人同意书上须写明委托日期。委托书的有效期限为自委托或同意日起六个月。
2. 印鉴证明书的签发数量超过两份以上时，须在委托书或同意书上写明所需数量，未填写时只签发一份。
3. 在委托权限栏上，须写明提交印鉴证明书的用途(如，房地产买卖、固定抵押设定、汽车买卖等)，并署名。
※ 在委托权限栏上不能笼统填写"全权委托房地产买卖相关事宜"等内容。
4. 若受托未成年人·被限定监护人·被成年监护人在监护人申请印鉴证明时，须填写委托书和法定代理人·限定监护人·成年监护人的同意书。
5. 居民登录被注销者(除了移居国外)或居住地不明者不能受托申请证明书。为确认委托书中的内容属实，必要时委托人应出示身份证，受托人或委托人身份证可从居民登录证、驾驶证、护照、残疾人登录证[福利卡]，未标记居民登录号码、地址的残疾人登录证和福利卡均无效]中择一出示。
6. 在填写居民登录号码栏时，旅外国民应写入护照号码、韩国居所申告者应写入国内居所申告号码、外国人写入外国人登录号码。
7. 旅外国民、海外居住(停留)者、囚犯委托他人为自己申请印鉴证明书，需获得有关机构的确认。这种情况下，旅外国民转移房地产权利时需先填写房地产种类和地址，并获得管辖证明厅所在地或房地产所在地管辖税务署长的确认。
甲. 旅外国民、海外居住(停留)者：驻外公馆(领事馆)
乙. 服役者：囚禁机构(教导所)
8. 伪造或非法使用他人印章或签名的人(例如：虚假填写他人或死人的委托书后申请、获得印鉴证明书)
将根据《刑法》第231条至第240条规定受到处罚。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 7. 5.>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	-	-
신청인: (생년월일:)	담당자: (전화:)	

※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 있음

주민등록번호	인감증명서			본인	대리인
성명 (한자)	()			인감	
국적					
주소					
용 도 용	[] 부동산 매수자, [] 자동차 매수자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법인·사업장 소재지)				
도 인 감 용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발급신청자)				(서명)
비고	<p>1. 인감증명서 발급사실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즉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p> <p>2.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란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에 ○표시됩니다.</p> <p>3.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그 아래에 ()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p> <p>4.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주소이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합니다.</p> <p>5. 부동산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외의 경우에는 "빈칸"으로 표시됩니다.</p> <p>6. 용도의 일반용란은 '은행계출용', '○○은행의 대출용으로만 사용' 등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여 직접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p> <p>7. 매수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되, 주소는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p> <p>8.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는 비고란에 합니다. 비고란은 개명한 사람인 경우 개명 전 성명 등 민원인 요청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p> <p>9.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은 전자민원창구(www.minwon.go.kr)를 통하여 「발급일,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10.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미리 신고해야 하는 불편없이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한 편리한 제도입니다.</p>				
발급번호	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직인					

발급기관 고유코드: 주소지 증명청: ○○○

210mm×297mm[특수용지(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1.12.>

인 감 증 명 서 발 급 대 장

발급 번호	발급 연월일	인감신고인		데리인		발급 통수	용 도 (해당란에 √)	무인(摺印)	특이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일반용 <input type="checkbox"/> 부동산매도용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매도용 <input type="checkbox"/> 일반용 <input type="checkbox"/> 부동산매도용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매도용 <input type="checkbox"/> 일반용 <input type="checkbox"/> 부동산매도용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매도용 <input type="checkbox"/> 일반용 <input type="checkbox"/> 부동산매도용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매도용 <input type="checkbox"/> 일반용 <input type="checkbox"/> 부동산매도용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매도용 <input type="checkbox"/> 일반용 <input type="checkbox"/> 부동산매도용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매도용		

297mm×210mm(백상지 80g/m²)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16.1.12.>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 -)		
	휴대전화번호		
신청 서비스	대리발급시	[]휴대전화 문자전송(SMS)	[]우편
	본인발급시	[]휴대전화 문자전송(SMS)	* 우편으로는 통보하지 않음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규 []변경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군·구·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유의사항

1.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시·군·구·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의 신규, 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인이 신청서에 지정해 놓은 연락처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나 일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이후 휴대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통보가 중단됩니다.
5. 휴대전화 문자전송 서비스(SMS)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 행정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의 사정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이 신청서에 적은 개인정보는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7. 인감을 신고할 때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의 통보에 동의하여 인감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이 통보됩니다.
8. 인감증명서 발급 내용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3서식] <신설 2016. 7. 5.>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국적
	주소		우무인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 견인 동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인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생년월일		
	주소		

재외공관(영사관) · 수감기관(교도관) · 관계공무원 확인

위 신청인의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한정후견인 · 성년후견인 동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수감기관(교도관) (서명 또는 인)

읍면동 관계공무원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감보호 또는 인감보호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군·구·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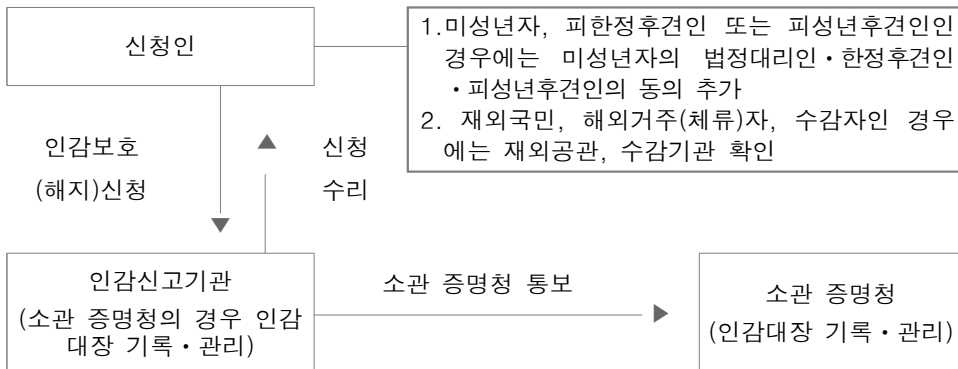
1.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수감자의 인감보호(보호해지)를 신청하기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은 본인의 인감을 보호(보호해지)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하는 내용을 아래 예시와 같이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란에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기재 예시]

- ① 본인 외 발급 금지
 - ②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③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④ 주소지 시·군·구(읍·면·동)에서만 발급하고 그 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는 발급 금지
 - ⑤ 그 밖에 인감보호나 인감의 보호해지에 필요한 내용
4. 엄지손가락지문을 날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지문을 날인하며, 지문은 선명하고 깨끗하게 날인하여야 합니다.
 5.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또는 수감기관 해당 사항란에 [√]표시를 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6. 인감의 보호신청이나 보호해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한 후 제출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란에 [√]표시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7. 읍면동 관계공무원 확인란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4서식] <신설 2016. 7. 5.>

■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Seal Act [Form an enclosure No. 15 4]

[] Applic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 Application f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 Fill out this form and check where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n the back of the form. (Front)

Application No.	Date	Processing Time	Immediate
Applican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Nationality
	Address		Right Thumb print
	Description for Application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Limited guardian or Adult guardian	Name	Relationship to Applicant	Personal Seal
	Date of Birth		
	Address		
Confirmation of Diplomatic Mission (Consul), Prison (Prison Officer), Town Government(Civil Servant)			

[] the applic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seal.

I certify [] the application f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seal of the applicant.

[] the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limited guardian·adult guardian.

Date _____ (YYYY/MM/DD)

[] Diplomatic Mission (Consul) (Signature or Seal)

[] Prison (Prison Officer) (Signature or Seal)

[] Town Government(Civil Servant) (Signature or Seal)

※ Civil Servant only writes when declarant cannot visit the Town Government because of serious case

I apply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or f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according to Article 17-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Date _____ (YYYY/MM/DD)

Applicant: (Signature or Seal)

Representative: (Signature or Seal)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For the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Local Government of _____

210mm×297mm[white paper (80g/m²) or middle quality paper(80g/m²)]

Notes and Instru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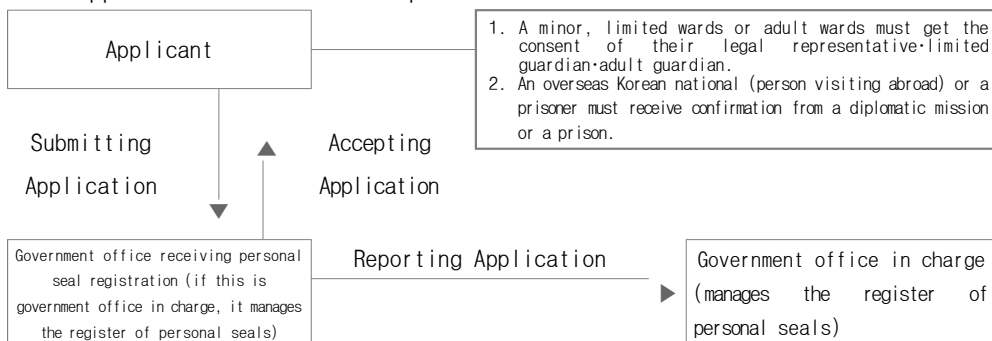
1. All representatives visiting a government office and applying for the protection (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a personal seal on behalf of an applicant who is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must bring a form of identification such as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2.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you are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nd do not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your passport number; if you are a foreigner, enter 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and if you are a registered domestic resident, enter your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3. Applying for the protection (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a personal seal allows you to protect (or cancel the protection of) your personal seal by ensuring that only you or a person authorized by you can be issued the certificate of your personal seal. Describe what you are applying for in the "Description for Application" section, referring to the following examples.

[Examples]

 - ① Do not issue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to anyone but myself.
 - ② Do not issue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to anyone except myself and my spouse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③ Do not issue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to anyone except myself, my spouse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my mother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④ The certificate of my personal seal shall only be issued at (the city/county/district/town/local government relevant to the address); do not issue at other locations of government office.
 - ⑤ Other description that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4. If you are not able to affix your thumbprint, affix any other fingerprint instead; the print must be neatly and clearly affixed.
5. I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designates a representative to apply on his/her behalf, the applicant must receive a confirmation from one of the following organizations as applicable.
 - a. Overseas Korean national,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 b. Prisoner: Prison (Prison Officer).
6. Check where appropriate to indicate whether you are applying for the protection 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a personal seal. If the applicant is a minor, limited wards or adult wards, also check the legal representative·limited guardian·adult guardian section.
7. Check where appropriate to indicate whether the organization is a diplomatic mission or a prison.

Procedure

This application form will be processed as follows.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5서식] <신설 2016. 7. 5.>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인감보호(보호해지)신청사항 통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감보호(보호해지)신청사항을 통보하오니 인감대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감 신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사항		
참고사항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6서식] <신설 2016. 7. 5.>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인감보호해지 신청자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신청사항 인감담당공무원의 직접 방문 확인

확인사항
 1.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함
 * 원칙적으로 말이나 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행동으로 제3자가 알 수 있는 정도는 의사소통이 되는 것으로 인정함
 2. 병원 등에 입원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함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17조의2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직접 방문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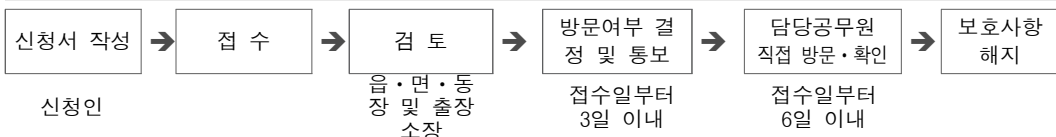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입원한 시설의 관할 구역 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인감 신고인을 방문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방문 여부 및 방문 예정 일시 등을 통보합니다.
3. 공무원이 방문하기로 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6일 이내에 방문하여야 하며, 방문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사무편람 ||

발행일 2017년 2월

판 권
소 유

발행처 행정자치부 주민과

사무편람작업 참여 및 협조

행정자치부 주민과 과장	김군호
행정자치부 주민과 서명팀장	김민정
행정자치부 주민과 사무관	탁상우
행정자치부 주민과 주무관	신성숙
행정자치부 주민과 주무관	최성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무관	박정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무관	유민순
(주)인사이드 정보 부장	박성숙
